

1. 이 책자는 당원의 調査研究計劃에 의한 特殊課題研究報告書임.
2.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고 있는 것은 아님.

韓半島 平和定着과 國際的保障體制에 관한 研究

研究責任：金 明 基

(明知大學校教授)

刊行責任：金 南 植

(調査研究室 事務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要 約

I. 問題의 提起

周邊列強에 의한 “分斷의 合法化”의 推移, 第30次 國際聯合總會에서 駐韓美軍의 撤收를 要求하는 共產側決議案을 採擇한 國際聯合 加盟國의 壓力, 南北韓에 의한 反外勢的 民族主義에 立脚한 統一論에 胎動 등으로 因해 南北 頂上會談이 開催될 경우 北韓이 끈질기게 主張해 온 駐韓美軍撤收提議를 不可避하게 받아들여야할 狀況에 直面하게 될 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에 對備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그의 國際的 保障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本研究는 두가지 假定을 大前提로 하여 出發한 것이다. 그 하나의 假定은 “駐韓美軍의 撤收”이고, 다른 하나의 假定은 “先平和後統一”의 價値設定이다.

이하 (i) 韓半島의 平和定着方案과 (ii) 韓半島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案으로 區分하여 論하기로 한다. 그러나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案은 同時에 그것이 平和定着方案이며, 또 平和定着方案은 國際的 保障을 前提로 만 意味를 갖는 것이므로, 이 兩者의 區分은 便宜上의 相對的 區分이며, 論理上의 絕對 區分은 아니다.

II. 韓半島의 平和定着方案

1. 南北韓交叉承認

南北韓交叉承認은 (i) 美國·日本과 中共·蘇聯이 各기 北韓과 大韓民國을 國家로 承認하여 正常的인 外交關係를 設定하므로서 韓半島에서의 對決을 和解로 이끌고 南北 間의 緊張을 緩和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는 方案이다.

(ii) 南北韓交叉承認의 主體는 美國・日本과 中共・蘇聯이다. 그러나 日本은 韓國의 分斷主體도 아니고 休戰協定の 當事者도 아니고 또 1954 年の Geneva 政治會議의 當事者도 아니므로 日本이 交叉承認의 主體로 되는 法的 根據는 없다.

(iii) 承認의 方法은 먼저 中共이 大韓民國을 承認하고 日本이 北韓을 承認한 다음, 美國과 蘇聯이 北韓과 大韓民國을 각각 承認하는 方案이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方案으로 본다.

2.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은 (i) 南北韓이 國際聯合과의 關係에서 相互對等한 地位를 確保하여 從前까지 各己 相對方을 不法的 存在로 排拆하는 對決關係를 和解와 平和共存의 關係로 誘導케 나갈 수 있으므로 이는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좋은 方案이 된다.

(ii)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기 위해서는 “一括加入”의 形式을 取해야 하며, 一括加入을 위해서는 南北韓의 共同加入申請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西方側의 主張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同時加入을 위해서는 北韓이 加入申請에 同意해야 한다.

(iii) 南北韓이 同時에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되어도 當然히 南北韓相互間에 國家承認의 效力이 發生하는 것은 아니나, 國際聯合으로 부터 南北韓은 國家承認을 받은 것으로 되어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이 破壞되게 된다.

3. 平和條約의 締結

平和條約의 締結은 (i) 南北韓 間의 戰時的 敵對關係를 終結하고 平時

의 友好關係를 設定하는 것이므로 이는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하는 制度的·法的 方案이다.

(ii) 平和條約의 形式은 “段階講和型”을 擇할 수 있으며, 1973 年の “越南平和條約”과 같은 “共同保障型”이 1979 年の “Egypt · Israel 平和條約”과 같은 “單獨保證型”보다 實效性和 合理性이 있는 方案으로 본다.

(iii) 國際法上 平和條約의 當事者와 休戰協定의 當事者는 一致됨을 要치 않는 것이 國際慣行이므로 韓國平和條約의 當事者는 南北韓이어야 한다. 平和條約의 保障當事國의 構成方案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4強案” 보다는 1954 年の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國案”이 法的 根據에 立脚한 것이 되고 또 南北韓이 4強의 從屬化를 防止할 수 있는 合理的인 方案으로 본다.

4.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締結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締結은 (i) 平和條約을 締結한 후일지라도 南北韓이 각기 그의 統一政策을 提議함에 있어서 自己의 正統性을 固執하므로 因하여 야기되는 相互 對決과 不信을 解消하고 和合의 氛圍氣를 造成하여 戰爭의 再發을 防止할 수 있는 平和定着의 좋은 方案이 된다.

(ii)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은 그 內容을 平和條約에 吸收하여 平和條約의 形式으로 締結할 수 있으나 自主統一을 達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은 南北韓 두 當事者 間에 締結되어야 하므로 平和條約의 當事者처럼 關係多數國家의 參與를 許容할 수 없으므로 兩條約은 別途로 締結되어야 한다.

(iii)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內容은 “南西獨基本條約의 類型”에 따라서 定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政府가 提議한 內容에 多少의 修正을 加해야 한다.

Ⅲ. 韓半島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案

1.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

非武裝地帶를 設置하고 이를 國際的으로 監視하는 것은 (i) 北韓의 武力的 攻擊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있고 또한 南北韓의 偶發的 武力衝突을 豫防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國際的으로 保障할 수 있는 方案이다.

(ii) 非武裝地帶는 現休戰協定에 의한 非武裝地帶를 그대로 利用하되 그 幅은 現 4 km에서 南北 각각 10 km로 擴張하는 20 km 方案을 考慮해 보아야 한다.

(iii)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는 ① 國際聯合平和維持軍에 의한 方案, ② 中立國 또는 其他 國家의 軍隊에 의한 方案, ③ 國際赤十字委員會에 의한 方案등이 있으나, 國際聯合平和維持軍에 의한 方案이 韓半島가 4強의 角逐場이 되는 것을 豫防하고, 國際聯合에 의한 中立的·實效的 監視를 할 수 있는 合理的 方案으로 본다. 國際聯合平和維持軍의 構成方法은 1960年의 “Congo 과건 國際聯合軍型”을 따라 아세아 中小國으로 構成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으로 본다.

2. 相互不可侵의 國際的 保障

南北韓이 相互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이를 國際的으로 保障하는 것은 (i) 南北韓 間에 相互侵略을 違法化하는 것으로 이는 侵略을 抑制하는 機

能을 하게 되며, 또 이에 대한 國際的 保障은 韓半島의 平和를 國際的으로 定着시키는 方案이 된다.

(ii) 國際的 保障方法으로 ① 保障國이 不可侵條約을 保障하는 Locarno 式의 “保障條約型”과 ② 侵略의 相對方의 潛在的 支援國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는 “交叉不可侵條約型”이 있으나, 前者가 最善의 方案이고 後者가 次善의 補強方案으로 본다.

(iii) 不可侵條約을 平和條約과 別途로 締結하지 않고 不可侵條約의 內容을 平和條約에 吸收시켜 平和條約으로 締結하는 것이 平和條約의 保障 當事國과 不可侵條約의 保障當事國을 一致시키는 合理的인 方案으로 본다.

3.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

南北韓이 軍備를 制限하고 이를 國際的으로 保障하는 것은 (i) 南北韓 間에 勃發할 수 있는 戰爭의 危險을 減少시키고 危機感을 解消하여 民族和合의 雰圍氣를 振作시켜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하는 方案이 된다.

(ii) 軍備의 制限은 南北韓 間의 條約의 締結形式으로 確約하여야 하며, 그의 保障當事國은 平和條約의 當事韓과 一致시켜 1954 年の Geneva 의 政治會談의 當事國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方案으로 본다.

(iii) 軍備의 制限方式은 “量的 軍縮型”과 “質的 軍縮型”을 모두 採擇해야 할 것이다.

4. 非核地帶設定의 國際的 保障

韓半島를 非核地帶로 設定하고 이를 國際的으로 保障하는 것은 核攻撃에 의한 恐怖와 危機意識을 排除하여 南北韓의 軍事負擔을 輕減시켜 주고 緊張을 緩和하여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는 方案이 된다. 非核地帶의

國際的 保障方法은 上記 軍備制限의 경우와 같다.

5.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設置

國際聯合總會의 補助機關으로서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設置는 (i) 國際聯合總會가 中心이 되어 韓半島問題를 解結하기 爲한 綜合的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施行하고 또 同 委員會가 中立的 調停者로서 南北韓의 對立을 緩和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는 方案이 된다.

(ii) 同 特別委員會의 構成方案은 ① 從前의 “國際聯合 韓國臨時委員會”의 構成國 代表로 하는 方案, ② 1954年의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國의 代表로 하는 方案, ③ ①②에 해당되지 않고 또 새로운 平和維持軍을 派遣하지 않는 國家의 代表로 하는 方案 등이 考慮될 수 있으나, ③의 方案이 中立性和 現實性을 保障하는 合理的인 方案으로 본다.

IV.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과 統一政策과의 關係

1. 大韓民國의 併合型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喪失

南北韓共同國際聯合加入·南北韓交叉承認 기타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法은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을 承認한 1948年 12月 12日의 國際聯合總會의 決議 第195號(III)에 反한다. 따라서 同 決議를 根據로 北韓이 大韓民國에 吸收되는 形式의 “併合型統一” 嚴格한 法的 意味로는 “失地의 回復”을 主張하는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는 破壞되고 만다. 이 點 새로운 研究를 要한다.

2. 統一追求의 後退와 自主統一의 障礙

上述한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諸國際的 保障方案은 “事實上的 分斷”을 法律上的 分斷으로 承認하는 이른 바, “分斷의 合法化” 方案이 된다. 따라서 이들 諸國際的 保障方案은 平和定着을 爲해 法律上的 分斷을 自招하는 것이므로, 統一의 視點에서 볼 때 前進이 아니라 後退임이 分明하다. 그러나 그것은 百步 前進을 위한 一步後退이어야 한다. 또한 上述한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案은 南北韓 두 當事者의 오늘의 法的 關係를 整理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強이나 16個參戰國과 蘇聯 또는 기타의 새로운 中立國 등의 關與를 自認하여 내일의 統一을 向한 法律關係를 한층더 繁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平和定着이라는 當面 課題에 急急한 나머지 外勢를 導入하는 것으로 이는 내일의 統一을 위해서는 障礙要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平和定着이 統一의 環境을 造成해 나갈 수 있다는 點을 是認해야 할 것이다. 여기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을 相容 調和시킬 수 있는 民族의 슬기와 叡智가 要求된다.

目 次

| | |
|-----------------------------|----|
| 要 約 | 1 |
| I. 序 論 | 13 |
| II. 韓半島의 平和定着方案 | 18 |
| 1. 南北韓交叉承認 | 18 |
| 가. 序 說 | 18 |
| 나. 南北韓交叉承認의 意義와 性格 | 19 |
| 다. 南北韓交叉承認의 主體 | 22 |
| 라. 南北韓交叉承認과 南北相互間의 承認 | 25 |
| 마. 南北韓交叉承認의 方案 | 26 |
| 2.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 | 28 |
| 가. 序 說 | 28 |
| 나. 國際聯合에의 加入의 意義와 要件 | 30 |
| 다. 國際聯合에의 加入 努力 | 32 |
| 라.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과 國家承認 | 36 |
| 마.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 方案 | 41 |
| 3. 平和條約의 締結 | 44 |
| 가. 序 說 | 44 |
| 나. 平和條約의 意義와 特色 | 46 |
| 다. 平和條約의 當事者 | 47 |
| 라. 平和條約의 形式과 內容 | 57 |
| 마. 平和條約의 締結 方案 | 60 |

| | |
|---------------------------------|-----|
| 4.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 | 62 |
| 가. 序 說 | 62 |
| 나.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과 平和條約과의 關係 | 63 |
| 다.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內容 | 64 |
| 라.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 方案 | 69 |
| Ⅲ. 韓半島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案 | 71 |
| 1.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 | 71 |
| 가. 序 說 | 71 |
| 나. 非武裝地帶의 先例 | 72 |
| 다. 國際監視團의 構成方法 | 77 |
| 라.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方案 | 78 |
| 2. 相互不可侵의 國際的 保障 | 91 |
| 가. 序 說 | 91 |
| 나. 不可侵條約의 意義와 特色 | 93 |
| 다. 不可侵條約의 先例 | 94 |
| 라. 不可侵條約의 保障方法 | 104 |
| 마. 不可侵條約의 國際的 保障 方案 | 108 |
| 3.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 | 111 |
| 가. 序 說 | 111 |
| 나. 軍備制限 意義와 形態 | 113 |
| 다.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 方案 | 116 |
| 4. 非核地帶設定의 國際的 保障 | 118 |
| 가. 序 說 | 118 |

| | |
|-----------------------------------|-----|
| 나. 非核地帶設定의 國際的 保障方案 | 120 |
| 5.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設置 | 120 |
| 가. 序 說 | 120 |
| 나. 特別委員會의 先例 | 121 |
| 다.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設置 方案 | 122 |
| IV.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과 統一政策과의 關係 | 124 |
| 1. 大韓民國의 併合型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 喪失 | 124 |
| 가. 併合型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 | 124 |
| 나. 併合型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 喪失 | 126 |
| 2. 統一追求의 後退와 自主統一의 障礙 | 128 |
| 가. 統一追求의 後退 | 128 |
| 나. 自主統一의 障礙 | 129 |
| V. 結 論 | 131 |

I. 序 論

1910年 “韓日合邦條約”에 의해 日本의 不法的 統治下에 轉落되었던¹⁾ 韓國은 1945年 聯合國의 勝利로 日本으로 부터 分離되었다. 그러나 그 分離의 法的 整理過程을 거치기도 전에, 韓半島는 1945年の 聯合軍司令部의 “一般命令 第1號”(General Order No. 1) a項에 의해 38線을 境界로 兩斷되었고, 이어 1953年 “休戰協定”(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第1項에 의한 軍事分界線에 의해 分斷은 더욱 固着化되고 말았다. “一般命令 第1號” a項도 “休戰協定” 第1項도 外勢에 의해 他律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결코 우리의 自主的 意思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다.²⁾

他意的으로 分斷된 채 南北韓은 相互 相對方을 不法的인 集團으로 敵

註 1) 1910年の “韓日合邦條約”은 1965年の “韓日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第2條의 規定에 의해 “이미 無效”임이 確認되었으므로, 36年 間의 日本의 韓國統治는 不法統治로 된다.

2) “一般命令 第1號”는 美國과 蘇聯의 合意下에 이루어진 것이며 [J.F.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Korea: A Policy and Direction*(Washington D.C.: U.S.G.P.O., 1972), pp.9-10; D.Acheson, *The Korean War*(New York: Norton, 1971), p.1.] “休戰協定”도 蘇聯의 提議와 美國·中共·國際聯合의 受諾으로 이루어진 것이다.(R.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Asia*(London: Oxford Univ Press, 1970), pp.263-273; W.H.Vatcher, *Panmunjom*(Westport; Greenwood, 1958), p.21.)

對視하면서 1950年代와 1960年代로 보내 왔다. 1970年代 부터 美·蘇 兩極의 冷戰體制의 犧牲物로 放棄되어 오던 分斷韓國은 밀려오는 和解와 多極化의 물결이 가져오는 韓半島 安保體制的 構造的 變化의 要求를 받게 되었다. 分斷祖國의 統一이라는 우리의 主觀的 熱望보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列強의 利害調節이라는 觀點에서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관한 새로운 方案을 모색해야 할 때가 到來한 것이다. 이러한 狀況의 變化는 다음 두 가지 側面에서 感知할 수 있다.

첫째로 周邊列強과의 關係에서 볼때, 韓半島의 南北分斷이 外勢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같이 韓半島의 統一 또한 外勢의 連鎖를 벗어나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의 自主的 統一의 意志도 外勢에 의한 制約을 받음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도 周邊強大國의 복잡한 利害關係에 기속되어 있다. 이른바 “現狀의 合法化”(legitimation of the status quo)라는 이름으로 周邊強大國에 의해 論議되고 있는 平和定着의 새로운 方案으로 南北韓交叉承認·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平和條約締結 등은 必然的으로 駐韓美軍의 撤收를 要求하게 될 것이며, 1975年 第30次 國際聯合總會에서 國際聯合軍司令部의 無條件解體,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替, 駐韓美軍의 撤收 등을 要求하는 共產側 決議案을³⁾ 採擇한 國際聯合加盟國의 壓力을 考慮할 때, 또다시 國際聯合總會에서 駐韓美軍撤收의 要求를 해 을 可能性은 排除되지 않으며, 美國의 Asia 戰略은 機動豫備隊를 編成保有하여 前進占據駐宅을 減少 내지 撤收하여 調整國家로서의 役割 만을 담당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⁴⁾

註 3) GA/Res, 3390B(XXX), November 18, 1975.

4) G.F.Kennan, "After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Review*, Vol.6, No.4, 1972, pp.73-74.

둘째로 南北韓 間的 關係에서 볼때, 南北韓은 體制競爭을 하면서도 民族主義에 立脚한 正統性을 提示해 왔으며, 美蘇의 兩極體制의 崩壞와 和解 雰圍氣는 民族主義的 統一의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⁵⁾ 中共의 對韓接觸은 北韓에게, 日本과 美國의 對北接近은 大韓民國에게 각각 民族主義的 覺醒을 促求하고 있다. 이러한 民族主義의 浮刻은 한편 北韓에 대해 北韓이 끈질기게 提議해 오던 平和協定의 締結과 駐韓美軍의 撤收를 더욱 緊要하게 主張해 올 수 있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다른 한편 大韓民國에 대해 駐韓美軍撤收를 容認할 수 있는 것으로 考慮해 보도록 與件의 變化를 주고 있다. 이제 駐韓美軍撤收는 南北韓 間的 暫定協定締結의 基盤을 漸進적으로 造成하고 南北韓의 自主的·反外勢的 意味있는 安定을 保障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⁶⁾

그러므로 이러한 國內外的 與件의 變化에 따라 駐韓美軍이 撤收되게 될 경우, 이에 對備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이의 國際的 保障策의 樹立이 國家的·民族的 至上課題로 提起되게 되었다.

本研究는 다음의 두가지 假定을 大前提로 하여 出發하기로 한다. (i) 第1의 假定은 駐韓美軍의 撤收이고, (ii) 第2의 假定은 先平和·後統一의 價値設定이다.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이라는 두 個의 國家的·民族的 課題는 選擇的·擇一的으로 要求되는 것이 아니라, 競合的·包括的으로 要求되는 것이다. 平和만을 國家的 價値로 提示할 수 없고, 統一만을 民族的 價値로 想定할 수도 없다. 平和가 目的이고 統一이 手段일 수 없고,

註 5) F.B.Weinstin and Fuji Kamiya, *The Security of Korea : U.S. and Japanese Perspectives on the 1980s* (Boulder : Westview, 1980), pp.176-177.

6) *Ibid.*, p.83.

統一이 理念的 價値이고 平和가 實踐的 方法일 수도 없다.⁷⁾ 그러나 實踐 過程에서 平和와 統一의 優先順位를 부여해야 한다면 主觀에 따라 각기 相異한 決定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 “先平和·後統一”의 順位가 眞理라는 것을 일단 假定하기로 한다.⁸⁾

本研究는 駐韓美軍撤收 후에 이에 대한 韓半島의 安全과 平和의 代案을 提示해 보려 試圖된 것이다. (i) 먼저 韓半島의 平和定着 方案으로 南北韓交叉承認·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平和條約締結·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締結 등을 提示하고, (ii) 다음에 定着된 平和의 國際的 保障方案으로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 不可侵條約의 國際的 保障,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 非核地帶設定의 國際的 保障,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設置 등을 提案해 보기로 한다. 여기 (i)에 提示된 平和定着方案과 (ii)에 提議된 平和의 國際的 保障方案의 區別은 便宜上의 區別에 불과하다. 따라서 (i)(ii) 모두가 平和定着方案일 수 있고, 또 (i)(ii) 모두가 平和의 國際的保障方法에 吸收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i)(ii)의 區別은 絕對的·論理的 區別이 아니라, 相對的·便宜的 區別에 불과한 것이다.

(iii) 끝으로 위에 提示한 平和定着과 그의 國際的 保障方案이 大韓民國의 統一政策과 어떤 關係를 갖고 있는가에 관해 考察해 보기로 한다.

오늘의 南北韓 間의 國際法上 法的 關係는 지극히 微妙하게 engk러져

註 7)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은 “韓半島의 경우 平和는 그 自體가 目的이며 단순히 統一을 위한 手段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孫在植, “國際關係에서 본 韓半島統一問題”, 統一論叢, 第4卷 第1號, 1984, p.94).

8) “東西獨基本條約”은 그 前文 序頭에서 “平和의 維持(Erhaltung der Friedens)를 基本理念으로 提示하고 있다.

있다.⁹⁾ 그러므로 本研究는 새로운 平和定着을 위한 安保體制를 構想함에 있어서, 부득이 外勢에 依存하게 되는 方案을 提議하게 되는 경우에도 可能한 限 將次의 自主統一을 指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點과¹⁰⁾ 今日的 複雜한 當事者關係를 可能한 限 最大限 整理하여 國際法上 南北韓의 當事者를 明白히 定立해야 한다는 點을 基調로 考慮했음을 밝혀 둔다.

註 9) 그것은 韓國動亂을 法的으로 整理한 “休戰協定”의 當事者로서 大韓民國이 脫落되어 있고, 中共이 北側의 共同當事者로 되고, 또 南側은 國際聯合軍司令官이 署名한 데서 基因한 것이다.

10) 自主統一의 國際法上 制限에 관해서는 金明基, “南北會談의 休戰協定上 制約”, 國際問題, 第13卷 第7號, 1982, pp.72ff. 參照.

II. 韓半島의 平和定着 方案

1. 南北韓交叉承認

가. 序 說

1960年代 후반부터 1970年代 초에 美國과 蘇聯을 각각 頂點으로 하는 兩極體制는 美國·蘇聯·中共·日本을 重心으로 하는 4極體制로 變換되었으며, 兩極體制를 支配해 온 冷戰理論과 對決理論은 이제 和解理論과 平和共存理論으로 代替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列強은 兩極的 冷戰의 產物인 不斷國問題를 多極的 平和共存의 새로운 視角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본래 分斷國問題는 列強의 利害關係가 複雜하게 얽혀 있는 問題이므로 國際的 勢力體制의 構造的 變化는 分斷國問題의 國際的 取扱의 變化를 要求하게 되었다. 이에 強大國은 그들 間의 關係를 規律하는 相互認定과 緊張緩和 및 平和共存의 原理를 分斷國에도 適用되어야 된다고 構想하게 되었다. 만일 새로운 和解理論과 平和共存理論이 分斷國의 分斷體 間에 適用되지 않는다면 分斷體 間의 緊張이 戰爭의 形態로 發展되게 되며 그 結果 強大國은 그 戰爭에 不可避하게 介入되게 되어 결국 強大國 間의 和解와 平和共存이 깨지고 만다고 列強은 判斷하기에 이르렀다.¹¹⁾

이러한 論理的 背景에서 分斷國의 平和定着은 重大한 國際問題로 擡頭되게 되었으며, 分斷韓半島에 대한 平和定着方案의 하나로 指示된 것이 이른바 “南北韓交叉承認”이다. 이는 分明히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對決을 和解로 이끌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는 좋은 着想으

註 11) F.B.Weinstin and Fuji Kamiya, *op. cit.*, pp.207ff.

로 생각된다¹²⁾. 그러나 이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外勢에 의한 平和 定着方案”이며 次後의 우리의 “自主的 統一의 問題”는 일단 留保한 것 이라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쨌든 南北韓交叉承認은 다음과 같이 韓半島의 平和定着의 한 方案이 된다.

(1) 4強이 南北韓을 交叉承認하므로써 南北韓은 4強과의 關係에서 각기 對等한 地位를 차지하게 되므로, 相互共存의 분위기를 造成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2) 大韓民國과 中共·蘇聯, 北韓과 美國·日本 간의 國交正常化는 大韓民國에 대한 中共·蘇聯의 威脅 北韓에 대한 美國·日本의 威脅을 解消하여 南北韓 간의 緊張을 緩和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3) 大韓民國은 駐韓 中共·蘇聯 大使를 통해, 北韓은 駐北 美國·日本 大使를 통해 각각 南北韓 間의 問題를 解決해 나갈 수 있으므로 南北韓의 對決을 和解로 誘導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나. 南北韓交叉承認의 意義와 性格

南北韓交叉承認이란 H.A. Kissinger에 의하면 北韓과 그 同盟國이 大韓民國을 承認하고, 大韓民國과 그 同盟國이 北韓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¹³⁾ 神谷不二에 의하면 美國과 日本이 北韓을 승인하고 蘇聯과 中共이 大韓

註 12) N.N.White, *U.S. Policy toward Korea : Analysis, Alternatives, and Recommendations* (Boulder : Westview, 1979), pp.95-103.

R.A. Scalapino, “Asia”,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80s*, ed. P. Duignan and A. Rabushka (Stanford : Hoover Institution, 1980), p.683.

金學俊, “韓半島 平和의 國際的 條件”, 統一政策, 第5卷 第3號, 1979, p.9.

國土統一院, 統一對話 (서울 : 南北對話事務局, 1982), pp.86-87.

13)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LXXIII, No. 1894, p.552.

民國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¹⁴⁾. M. Abramowitz 와¹⁵⁾ R.A. Scalapino 의¹⁶⁾ 개념은 大韓民國·美國·日本에 의한 北韓承認과, 北韓·蘇聯·中共에 의한 大韓民國承認을 뜻한다. 이와같이 交叉承認의 主體에 관해 論者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다.

그러면 南北韓交叉承認은 “國家의 承認”(recognition of state)인가? “政府의 承認”(recognition of government)인가? 아니면 “交戰團體의 承認”(recognition of belligerency)인가?

南北韓交叉承認을 하기 이전의 오늘의 狀態에서 交叉承認의 主體로 논의되고 이른바 4強과 南北韓과의 關係는, 美國과의 關係에서 그리고 日本과의 關係에서 大韓民國은 國家지만, 國家로서 承認을 받지 못한 北韓은 交戰團體에 불과하다¹⁷⁾

만일 南北韓交叉承認에서 承認이 “國家의 承認”이라면 韓半島에 交叉承認 이전에 存在했던 美國과 日本이 既承認한 大韓民國이라는 國家가 또는 中共과 蘇聯이 既承認한 北韓이라는 國家가 그대로 存續하면서, 美國과 日本이 北韓을 승인할 경우는 大韓民國으로 부터 분리되는 北韓이, 그리고 中共과 蘇聯이 大韓民國을 승인할 경우는 大韓民國이라는 새로운 國家가 新生國으로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新生國인 北韓이 그의 本國인 大韓民國으로 부터 分離獨立되는 것이다¹⁸⁾. 따라서 韓國은 大

註 14) F.B.Weinstein and Fuji Kamiya, *op. cit.*, pp.197-98.

15) M.Abramowitz, “Moving the Glacier: The two Koreas and the Powers”, *Adelphi Papers*, No.80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1), p.1.

16) R.A.Scalapino, *op. cit.*, pp.683-684

17) 金明基, 國際法上 南北韓의 法的地位 (서울: 華學社, 1980), p.102.

18) 交叉承認에 의해 既存의 大韓民國 또는 北韓이라는 國家가 그 同一性を 喪失하게 된다면 “分裂”로 된다. 그러나 既存 大韓民國과 北韓이 同一성을 喪失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分離”로 된다.

韓民國과北韓을 승인하는美國·日本·中共·蘇聯과의關係에서大韓民國과北韓이라는2개의國家로형성되게된다. 그리고承認을한美國·日本·中共·蘇聯과의關係에서大韓民國의領土는南韓領域에,北韓의領土는北韓領域에각각限定되게되며,從前과같이각각韓半島全領域으로인정되지않는다.

만일南北韓交叉承認을“政府의承認”으로보면韓半島에는美國과既承認한大韓民國이라는국가와中共과蘇聯이既承認한北韓이라는國家가각각존재하며,美國과日本이北韓을승인하면北韓領域에는北韓政權의存在가승인되게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承認은韓半島全領域으로構成된既存大韓民國의存在를肯定하면서北韓政權을승인하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意味의承認은“中央的事實上政府의承認”이아니라“地方的事實上政府의承認”이므로결국이는政府의承認이아니라交戰團體의承認이된다.

만일交叉承認을“交戰團體의承認”으로보면美國과日本과의關係에서韓半島에는韓半島全領域으로구성된大韓民國이라는1개의國家가存在하며,北韓領域에는不法的存在인北韓이라는交戰團體가존재하게된다. 또中共과蘇聯과의關係에서보면이와반대의結果가成立될수있다.南北韓交叉承認을이렇게交戰團體의承認으로보면交叉承認이전의現南北韓의既存承認體制에아무런變更이없는것이며, 오직지금까지“默示的”交戰團體의承認을¹⁹⁾“明示的”交戰團體의承認으로確認할뿐國際法上效果에있어서어떠한變化도가져오는것이

註19)南北韓은相互相對方을交戰團體로明示적으로承認한바없으나,默示적으로承認한것이다. J.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Rinehart, 1954), p.230; J.L. Kunz, “Legality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June 25 and 27, 1950” *A.J.I.L.*, Vol.45, 1951, p.139).

못된다.

따라서 南北韓交叉承認에서의 承認은 “國家의 承認”만을 意味하며, “政府의 承認”이나 “交戰團體의 承認”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 南北韓交叉承認의 主體

南北韓交叉承認의 對象은 물론 南北韓이다. 그러면 南北韓交叉承認에서 承認의 主體는 어느 國家인가?

W. P. Rogers 는 承認의 主體를 “西方諸國家”와 “社會主義國家”로 豫定하고 있으며²⁰⁾, H.A. Kissinger 는 承認의 主體를 “北韓과 그 同盟國” 그리고 “大韓民國과 그 同盟國”으로 豫定하고 있다²¹⁾. F.B. Weinstein 은 “Moscow와 Peking” 그리고 “Tokyo와 Washington” 즉 蘇聯과 中共, 그리고 日本과 美國으로 承認의 主體를 보고 있으며²²⁾, A.S. Whiting 도 F.B. Weinstein 과 같이 蘇聯과 中共 그리고 美國과 日本을 承認의 主體로 보고 있다²³⁾. 神谷不二는 交叉承認의 主體를 北韓에 대해 “美國과 日本” 南韓에 대해 “蘇聯과 中共”으로 보고 있다²⁴⁾. M. Abramowitz 와²⁵⁾ R.A. Scalapino 는²⁶⁾ “大韓民國·美國·日本”과 “北韓·蘇聯·中共”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承認의 主體로 美國·日本과 中共·蘇聯을 豫定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것 같다.

註 20)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LXIX, No. 1781, August 13, 1973, pp.254-256.

21) *Supra* note 13.

22) F.B. Weinstein and Fuji Kamiya, *op. cit.*, p.231.

23) *Ibid.*, p.20.

24) *Ibid.*, pp.197-198.

25) M.Abramowitz, *op. cit.*, pp.20-21.

26) R.A.Scalapino, *op. cit.*, pp.683-684.

여기서 南北韓交叉承認에서 韓國問題의 政治的 當事者가 누구냐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53年 7月 27日의 “休戰協定”은 一方을 “國際聯合”으로 하고 他方을 “北韓과 中共”으로 하여 締結되었으며, 大韓民國은 同 休戰協定の 直接的인 當事者는 아니다²⁷⁾. 休戰協定 第60項은 “...停戰協定이 調印되고 效力을 발생한 후 3個月內에 각기 代表를 派遣하여 雙方의 한층 더 高位의 政治會談을 召集하고...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 등 問題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共產側의 非妥協的인 態度로 政治會談의 開催는 지연되었으며, 이에 國際聯合 總會에서 政治會談의 開催方法에 관한 問題가 토의되게 되어 1953年 8月 28日 國際聯合 總會는 韓國休戰協定の 締結을 승인하고 同 協定 第4條 第60項에 의거한 政治會談의 開催를 환영하는 內容의 決議를 採擇하고, 政治會談의 當事者로 國際聯合側을 위해 大韓民國과 16個 參戰國이 共產側을 위해 北韓과 中共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蘇聯이 참가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決議했다.²⁸⁾

1954年 1月 25日 부터 Berlin 에서 개최된 獨逸 및 Austria 問題에 관해 토의하기 위한 美國·英國·佛蘭西·蘇聯의 “4大國 外相會議”에서 2月 18日에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政治會談을 4月 26日 부터 Geneva 에서 개최할 것과 政治會談의 當事者를 美國·英國·佛蘭西·蘇聯·中共·大韓民國·北韓 기타 參戰國으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²⁹⁾.

이에 따라 1954年 4月 26日 부터 6月 15日까지 Geneva 에서 “Geneva 政治會談”이 개최되었으며, 國際聯合側에서는 大韓民國과 參戰 16개

註 27) 金明基, 休戰會談實務代表會議錄分析(II), 국통정 79-12-1570 (서울: 國土統一院, 1979), pp.19-26.

28) GA/Res. 711 (vii)

29) 金明基, “韓國軍事停戰協定 第60項에 관한 研究”, 大韓國際法學會論叢, 第25卷, 第1·2合併號, 1980, pp.69-71.

국 중 南阿聯邦을 제외한 15 개국이, 共產側에서는 北韓・中共 및 蘇聯이 참가했다³⁰⁾.

交叉承認의 主體로 논의되고 있는 美國・日本・中國・蘇聯 중 美國・中國・蘇聯 3 국은 1953 年 8 月 28 日의 “國際聯合總會의 決議” 및 1954 年 1 月 25 日의 “Berlin 外相會議”에서 韓國問題의 政治的 當事者로 지정된 國家이며, 또 1954 年 4 月 26 日의 “Geneva 會談”에서도 韓國問題의 政治的 當事者로 실제로 참가한 國家이다. 그러나 日本은 上記 어 느것에 의해서도 韓國問題의 政治的 當事者로 지정된 바 없다.

그러므로 交叉承認의 主體를 1953 年 7 月의 休戰協定, 1953 年 8 月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 1954 年 1 月의 “Berlin 外相會談”, 1954 年 4 月의 “Geneva 會談”으로 연결되는 法脈속에서 찾는다면 日本은 南北韓交叉承認의 主體에서 제외되게 된다. 만일 日本이 交叉承認의 主體로 되면 交叉承認은 上記 “休戰協定”, “國際聯合總會의 決議”, “Geneva 政治會談”으로 연결되는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交叉承認을 이렇게 볼 경우 日本이 交叉承認의 當事者에 포함되느냐의 問題는 “政治的인 問題”이며 전혀 “法的인 問題”가 아닌 것으로 된다.

“韓國問題”를 “韓半島의 平和定着問題”로 볼 때 그것은 休戰의 整理問題로 보아 上述한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者가 政治問題의 當事者로 된다. 그러나 “韓國問題”를 “韓半島의 統一問題”로 볼 때 그 當事者는 大韓民國과 北韓이지만, 만일 分斷의 主役이었던 當事者도 고려한다면 美國과 蘇聯도 當事者로 定해 볼 수 있다. 오늘의 現實的인 韓國問題는 “韓半島의 平和定着問題”와 “韓半島의 統一問題”가 混和되어

註 30) M.D. Donelan and M.J. Grieve, *International Disputes* (London: Europa, 1973), p.61.

있는 것이라면 결국 韓國問題인 交叉承認問題의 當事者는 上記 兩 問題의 當事者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라. 南北韓交叉承認과 南北韓相互間의 承認

美國과 日本이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고 中共과 蘇聯이 大韓民國을 國家로 承認한다. 해도, 그것이 당연히 大韓民國이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고, 또 北韓이 大韓民國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으로 되는 效果가 發生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大韓民國이 北韓을 北韓이 大韓民國을 各各 承認해야 할 法的 義務가 發生하는 것도 아니다. 承認의 效力은 承認을 한 國家와 承認을 받는 國家 間에만 미치고, 또 承認은 國家主權의 行사이며 承認 여부의 決定은 主權國家의 自由裁量에 속하는 事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周邊強大國에 의한 南北韓交叉承認은 결국 南北韓 相互間의 承認을 事實上 강요하는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N.N.White는 交叉承認에 의해 마지막 단계에서 南北韓은 결국 相互 國家로 承認하게 될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다³¹⁾.

우리 憲法 第3條는 “大國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만일 交叉承認이 實現되고 南北韓이 相互 國家承認을 하게 될 段階에 이르러 大韓民國이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은 憲法 第3條에 違反하는 것이 된다. 만일 大韓民國이 北韓과 外交關係를 設定

註 31) N.Mugerw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n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d.Sørensen (London : Macmillan, 1968), p.227.

J.G.Whitaker, *Politics and Power : A Text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 Harper, 1964), p.259.

J.F.Williams, “Some Thoughts on the Doctrine of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H.L.R.*, Vol.47, 1933-1934, p.780.

32) N.N.White, “Search for Peace : The Four Powers an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Ⅳ, No.1, 1974, pp.45-46.

하는 條約을 締結하면 이는 “國內法上” 憲法違反行爲로 그 效力은 無效이며 이를 이른바 “超憲法的 統治行爲”로 보아 有效하다고 보기 어렵다³³⁾.

問題는 國內法上 無效를 理由로 “國際法上” 無效를 主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國內法을 理由로 國際條約의 無效를 主張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하고 根本적으로 중요한 違反인 경우에는 그 無效를 主張할 수 있다³⁴⁾. 물론 우리 政府가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2邊的 條約을 締結하고 이를 翻意하여 國內法을 理由로 그의 無效를 主張하는 일은 豫測하기 어려운 것이나, 國會에서 이의 無效를 主張할 경우를 豫想해 보아야 하므로 交叉承認에 앞서 우리는 憲法 第3條의 改正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마. 南北韓交叉承認의 方案

交叉承認의 主體를 일단 美國·日本·中國·蘇聯으로 豫定할 경우 다음과 같은 承認方案이 있을 수 있다.

(1) 美國과 日本이 먼저 北韓을 승인하고, 蘇聯과 中共이 뒤이어 南韓을 승인하는 方案

(2) 蘇聯과 中共이 먼저 南韓을 승인하고, 美國과 日本이 뒤이어 北韓을 승인하는 方案

(3) 日本과 中共이 먼저 北韓과 南韓을 승인하고, 美國과 蘇聯이 뒤이어 北韓을 승인하는 方案

註 33) 條約의 締結은 統治行爲라고 볼 수 있으나, 締結된 條約의 內容은 合憲的인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條約의 國內的 效力을 “法律的”인 것으로 보는 것이 通說이기 때문이다.

34) 1969 年の “條約法에 관한 協約”(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第46條 第1項

(4) 美國과 蘇聯이 먼저 北韓과 南韓을 승인하고, 日本과 中共이 뒤
이어 北韓과 南韓을 승인하는 方法

(5) 美國과 中共이 먼저 北韓과 南韓을 승인하고, 日本과 蘇聯이 뒤
이어 北韓과 南韓을 승인하는 方案

(6) 日本과 蘇聯이 먼저 北韓과 南韓을 승인하고, 美國과 中共이 뒤
이어 北韓과 南韓을 승인하는 方案

(7) 美國・日本・中共・蘇聯이 동시 승인하는 方案.

交叉承認의 主體를 南北韓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는 다음과
같은 承認方法이 있을 수 있다.

(1) 南北韓이 먼저 相互承認을 하고, 뒤이어 위의 4強이 承認을 하
는 方案

(2) 위의 4強이 먼저 승인하고, 뒤이어 南北韓이 相互承認을 하는
方案

(3) 南北韓과 4強이 동시에 승인하는 方案

上記한 어느 方案에 의한 것인가는 交叉承認의 主張者에 따라 다르고,
또는 그 方法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기도 한다. W.P. Rogers³⁵⁾, N.N.
White³⁶⁾, R.A. Scalapino³⁷⁾, F.B. Weinstein³⁸⁾, A.S. Whiting³⁹⁾, 神谷不二⁴⁰⁾
등은 4強이 먼저 南北韓을 承認하고 뒤이어 南北韓이 相互 承認하는
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註 35) The Department of State, *op. cit.*, pp.254-256.

36) N.N. White, *op. cit.*, pp.45-46.

37) R.A. Scalapino, *op. cit.*, pp. 683-684

38) F.13. Weinstein, *op. cit.*, p.231.

39) *Ibid.*, p.250.

40) *Ibid.*, pp.197-198.

그러나 H.A. Kissinger 는⁴¹⁾ 南北韓과 4 強의 同時承認의 方法을 제시했다.

承認의 國際法上 效果의 面에서 볼 때 上記 어느 方案도 差異가 없는 것이다. 결국 南北韓과 4 強의 政治的 妥協에 의해 위의 여러 方法 중 어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다.

1973 年 2 月 8 日 日本首相은 먼저 中共이 大韓民國을 승인하고 日本이 北韓을 승인하는 形式의 交叉承認은 좋은 方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⁴²⁾.

2.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

가. 序 說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은 韓半島의 對決과 緊張狀態를 解消하고 平和를 定着할 수 있는 좋은 方法의 하나이다. 이는 兩極體制를 支配해 온 冷戰理論과 對決理論이 多極體制를 規律하는 和解理論과 平和共存理論으로 代替되게 됨에 따라 南北韓交叉承認提議와 같이 分斷韓國의 平和定着을 위해 提議되어 왔다⁴³⁾ “現狀의 合法化”(Legitimation of the status quo) 라는⁴⁴⁾ 이름으로 周邊強大國에 의해 韓半島의 平和定着 方案으로 提議되어 왔다는 點에서 南北韓交叉承認과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은 共通의 背景을 갖고 있다.

註 41) The Department of State, *op. cit.*, p.550.

42) 韓國日報, 1984 年 3 月 25 日, p.1.

43) N.N.White, *op. cit.*, pp.45-46.

W.Watt, *The United States and Asia : Changing Attitudes and Policies*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82), p.82.

44) M. Abramowitz, *op. cit.*, pp.20-21.

N.N.White, *op. cit.*, p.96.

Nathan N. White 는 韓半島는 獨逸式 解決方法으로 南北韓이 서로 相對方을 合法的인 國家로 受諾하고 相互間的 關係를 正常化해야 한다고 主張하고,⁴⁵⁾ 그 具體的인 實踐過程을 4個의 段階로 나누고 說明하면서 그 4個의 段階 중 第2의 段階가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이라고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最初 段階에서 4強은 처음에는 第3世界에서 뒤에는 主要國家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西歐와 東歐에서 가능한 限 많은 國家에 南北韓 두 政府를 代表하는 大使館의 樹立에 便宜를 제공하도록 全적으로 노력한다.

다음 段階는 두 韓國을 國際聯合과 적절한 國際機構에 加入시키는 것이다.⁴⁶⁾

이어서 N. N. White 는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에 의한 “現狀의 合法化” 는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할 뿐만 아니라 國家의 福祉를 向上시킨다고 論하면서 現狀의 合法化 方案은 韓國의 永久平和의 起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緊張緩和의 必須的 前提要件이며, 國防을 위한 浪費를 감소시키고 韓半島의 各半部の 現代화와 産業化的 課業을 수행하고 南北韓 國民의 福祉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다.⁴⁷⁾

이와 같이 國際聯合에의 南北韓同時加入은 다음과 같이 韓半島의 對決을 解消하고 緊張을 緩和하여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47a)}

註 45) *Ibid.*

46) N. N. White, *op. cit.*, *supra* note 32, pp.45-46.

47) N. N. White, *op. cit.*, *supra* note 32, p.96.

47a) 國土統一院, *op. cit.*, *supra* note 12, pp.84-85.

(i) 南北韓이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되므로서 國際聯合과의 關係에서 南北韓은 相互 同等한 地位를 獲得하여 南北韓의 對決關係를 和解와 共存의 雰圍氣로 誘導해 나갈 수 있다.

(ii) 南北韓이 각기 國際聯合의 正式 加盟國이 되므로서 從前의 오브저버로서의 對外的 活動의 制限을 排除하고, 表決權의 行使로 對國際聯合 外交의 有利한 條件을 形成해 나갈 수 있고, 國際聯合 내에서 民族和合의 길을 摸索해 나갈 수 있다.

(iii) 南北韓은 國際聯合憲章의 當事者가 되므로서 武力行使禁止의 原則을 規定한 憲章 第2條 第4項의 法的 拘束을 받게 되므로 南北韓이 相互 武力行使를 삼가하여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iv)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의 問題를 國際聯合化하므로서 國際聯合에 의해 平和의 定着과 統一을 保障받을 수 있다.

나. 國際聯合에의 加入의 意義와 要件

(1) 意 義

國際聯合은 第2次大戰時의 聯合國이었던 51個國의 原加盟國(original members)으로 創設된 世界的 平和機構이다. 이에 原加盟國 이외의 國家 즉 第2次大戰當時의 敵國·中立國 및 大戰 後의 新生國 등이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되는 것을 加入이라 한다. 그것은 國際聯合憲章의 當事者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國際聯合의 構成國이 되는 것이다.

國際聯合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 및 經濟·社會·文化 기타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國際協力이라는 二大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一般的인 世界平和機構이다. 때문에 모든 國家를 이에 참가케 함으로써 世界的인 平和機構로서의 목적을 達成할 수 있게 하고 繼續 發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國家에게 그 加入이 開放되어 있다.^{47b)}

(2) 要件

國際聯合憲章은 加入의 要件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國際聯合에 있어서의 加盟國의 地位는 이 憲章에 揭載한 義務를 受諾하고 또 이 機構에 의한 義務를 履行할 能力과 意思가 있다고 認定되는 다른 모든 平和愛好國에 대하여 開放되어 있다.

② 上記의 國家가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되는 承認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의한 總會의 決定에 의한다(憲章 第4條)⁴⁸⁾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決議가 성립하려면 常任理事國을 포함한 9 개국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즉, 이 勸告決議는 實質的 사항으로서 5 대국의 拒否權의 行使가 적용된다(憲章 第27條 第3項). 問題는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同意를 얻는데 있다. 南北韓이 지금까지 個別的 또는 共同的으로 國際聯合에 加入하지 못한 것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인 蘇聯과 美國의 拒否權의 行使에 의한 것이었다. 國際聯合에의 加入에 관한 安全保障理事會의 常任理事國의 拒否權 行使를 回避하여 國際聯合에의 加入의 문을 열어 놓는 便法의 하나로 이른바 “package deal”의 方案이 利用되고 있다.⁴⁹⁾

1947 年에 Italia • Finland • Hungary • Rumania • Bulgaria 의 5 개국이 加

註 47b) L.M. Goodrich,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rowell, 1959), pp.83-85.

48) 憲章 第4條의 解釋에 관해서는 H.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Praeger, 1950), pp.57ff. 參照.

入申請을 하였을 때, 蘇聯代表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이 5개국의 同時加入을 주장하고, 西方側이 支持하는 Italia의 加入은 다른 4개국의 同時加入을 條件으로 하여서만 同意하겠다고 주장하였다.⁵⁰⁾

이리하여 總會는 “國際聯合加盟國은 憲章 第4條 第1項에 明示되어 있지 않는 條件에 따라 新國家의 加入에 同意할 法的 權限이 있느냐, 특히 한 國家의 加入을 다른 國家의 同時加入이라는 條件下에 同意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意見을 國際司法裁判所에 問議한 바, 이에 대하여 1948年 5月 28日 裁判所는 否定的 意見을 提示해 왔다.⁵¹⁾

그러나 위의 國際司法裁判所의 勸告的 意見을 無視하고 1955年 12月 14日 蘇聯이 提議한 “16個國 一括加入案”이 安全保障理事會에서 通過된 바 있다.⁵²⁾ 이와같이 지금까지의 國際聯合의 慣行에 의하면 上記 國際司法裁判所의 勸告的 意見은 尊重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기 위해서 “package deal”의 方法을 活用할 수 있는 것이다.

다. 國際聯合에의 加入 努力

(1) 1949年 1月 19日의 加入申請

世界平和와 人類의 福祉를 象徵하는 國際聯合의 重要성과 특히 大韓民

註 49) R.Higgin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Politic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London: Oxford Univ. Press, 1963), p.14.

S.Rosenne, “On the Non-Use of the Advisory Compet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I.L.*, Vol.39, 1963, p.41.

50) G.G.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I.L.*, Vol.29, 1952, pp.22-26.

51) *Ibid.*

52) S/2468

國과 國際聯合과의 不可分の 關係에 비추어 大韓民國政府는 第3次 國際聯合總會가 大韓民國政府를 唯一合法政府로 承認하는 決議를 採擇한 直後인 1949年 1月 19日 當時 高昌一 外務部長官署理의 名義로 大韓民國이 國際聯合憲章 및 그에 따르는 諸般義務를 遵守하겠다는 要旨의 宣言文과 함께 大韓民國의 國際聯合加入申請書를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提出했다.⁵³⁾

同 加入申請은 新加盟國加入委員會를 거쳐 1949年 2月 15日과 16日에 安全保障理事會의 表決에 붙여진 바, 贊成 9, 反對 2로 이는 否決되고 말았다. 결국 蘇聯의 拒否權行使로 同 加入案은 通過되지 못하여 우리의 첫번째 國際聯合加入 試圖는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北韓도 1949年 2月 9日 國際聯合加入을 申請하였으나,⁵⁴⁾ 大韓民國이 韓國에서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承認한 1948年 12月 12日의 總會決議에 依據하여 同 申請은 新加盟國加入委員會에 回付되었으나 審議조차 되지 아니하였다.⁵⁵⁾

(2) 1951年 12月 22日의 再加入申請

1951年 12月 22日 國務總理는 다시 國際聯合 事務總長 앞으로 大韓民國의 國際聯合加入을 要請하는 公翰을 보냈다.⁵⁶⁾

그러나 그 當時 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蘇聯의 拒否權行使로 國際聯合加入問題가 全般的으로 停頓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1955年 12月 國際聯合에서 소위 18個國 一括加入案이 論議되었을 때 비로소 韓國加入

註 53) S/1238

54) S/1247

55) S/1256

56) S/2452

문제도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同年 12月 8日 安全保障理事會에서는 “統一問題가 存在하지 않는 18個國 全部”의 國際聯合加入을 勸告하자는 Brazil과 New Zealand의 決議案과⁵⁷⁾ 관련하여 中國과 美國이 國際聯合과의 特殊關係를 考慮하여 韓國의 加入을 勸告하자는 修正案을⁵⁸⁾ 提出하였다. 同年 12月 13日 第407次會議에서 表決에 붙인 結果 同案은 贊成 9, 反對 1이라는 壓倒的 多數의 支持를 獲得하였으나 역시 蘇聯의 拒否權行使로 우리의 加入 努力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⁵⁹⁾

1957年 9月 6日 大韓民國의 加入勸告를 提議하는 8個國共同決議案이 安全保障理事會에 다시 上程되어 9月 9日 第790次會議에서 表決에 붙인 結果, 11個理事國 중 10個理事國의 贊成票를 얻었으나 蘇聯의 繼續的인 拒否權行使로 또다시 大韓民國의 加入은 좌절되고 말았다.

1958年의 第13次 總會時에도 大韓民國의 國際聯合加入問題가 12月 9日 第843次 安全保障理事會에서 다시 論議되었다. 이 자리에서 美國·中國 및 英國代表는 大韓民國의 加入을 再勸告하는 決議案을 滿場一致로 支持해 줄 것을 要請하였고, 表決의 結果는 贊成 9, 反對 1, 棄權 1이었으나 역시 蘇聯의 反對로 否決되고 말았다. 이때 蘇聯代表는 北韓이 同時加入할 수 있도록 決議案을 修正하자고 提議하였으나⁶⁰⁾ 이는 즉시 否決되었다. 이에도 不拘하고 蘇聯은 2年동안 똑같은 提議를 되풀이하였으나 西方側의 拒否로 北韓의 加入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몇 차례에 걸친 우리의 國際聯合加入申請이 蘇聯의 繼續的인 拒否權行

註 57) S/3502

58) S/3506

59) S/3884

60) S/4132

使로 좌절되자 政府는 한동안 國際聯合加入努力을 中斷하였다.

(3) 1961年 4月 21日의 再加入申請

1961年 4月 21日 鄭一亨 外務部長官은 國際聯合 事務總長 앞으로 大韓民國의 加入申請을 好意的으로 考慮하여 主도록 安全保障理事會와 總會에 다시 提出하여 줄 것을 要請하였다⁶¹⁾ 그러나 安全保障理事會는 이 申請에 關係 討議하지 않았다⁶²⁾

(4) 1975年 7月 29日의 再加入申請

1975年 7月 29日 金東祚 外務部長官이 國際聯合 事務總長 앞으로 새로운 加入申請書를 提出하게 되었다⁶³⁾ 그러나 이는 1975年 8月 6日에 開催된 第1834次 安全保障理事會에서 史上 처음으로 議事日程에 포함되기 위한 投票에서 採擇되지 못하였다⁶⁴⁾ 大韓民國의 加入을 反對하는 代表들은 分斷國의 어느 一方만의 加入은 再統一에 障礙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國際聯合에 加入하려면 東西獨의 경우에서 보듯이 雙方間에 事前的 合意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要컨대, 大韓民國의 單獨加入만을 支持해오던 西方同盟國의 態度는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共同加入을 支持하는 方向으로 變換되었다.

(5) 1975年 9月 21日의 再加入申請

1975年 9月 21日 金東祚 外務部長官은 또다시 國際聯合 事務總長 앞으로 大韓民國의 加入申請書를 보냈다⁶⁵⁾ 그러나 이는 9月 26日 安

註 61) S/4806

62)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61), p.169.

63) S/11783

64) S/PV1834

65) S/11828

全保障理事會에서 贊成 7, 反對 7, 棄權 1로 否決되고 말았다.⁶⁶⁾

라. 南北韓 同時 國際聯合加入과 國家承認

(1) 南北韓共同加入과 既存加盟國에 의한 承認

國際法上 承認의 效果는 承認國과 被承認國과의 關係에서만 發生한다. 國際聯合에의 加入은 國際聯合加盟國 全體에 의한 國家承認으로 되는가? 換言하면, 南北韓이 共同으로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되면 南韓과 北韓의 國際聯合 加入을 反對한 國家와의 關係에서 南韓과 北韓은 各己 國際法上 國家로 되는가? 이 問題가 바로 “集團的 承認”(collective recognition)의 問題이다.

1945年 San Francisco 會議에서 Norway 代表는 集團的 承認制度和 集團的 承認撤回制度를 建議한 바 있으나 이는 憲章上에 採擇되지 못하고 말았다.⁶⁷⁾ 1948年 5月 Palestine 問題를 安全保障理事會에서 審査하는 期間에 Syria 代表가 Israel 政府에 대한 美國의 承認에 關係 質問할 때, 5月 18日 美國代表 Austin은 “主權國家는 國家承認과 政府承認을 할 수 있고, 또 國際聯合憲章에 署名한 어떤 加盟國에 의해서도 이는 拋棄될 수 없는 確固한 權限과 權利를 갖는다”고⁶⁸⁾ 力說했다. 또, 1950年 3月 8日 事務總長 T. Lie는 新生國의 加入과 承認에 關係한 覺書에서 國際聯合에 의한 集團的 承認을 否定하고 加入과 承認은 別個의 것이라

註 66) S/PV1842

67) D.P.O'Connell, *International Law*, Vol.1, 2nd ed.(London:Stevens, 1970), p.157.

68) W.W.Bishop,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Boston:Little Brown, 1955), p.227.

고 表明했다.⁶⁹⁾

G. v. Glahn은 “國際機構에의 加入은 그 機構의 加盟國에 의한 集團的 承認을 意味하지 않는다.”고⁷⁰⁾ 하면서 國際聯合에의 加入은 集團的 承認의 效果가 發生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한 國家의 國際聯合에의 加入은 國際聯合의 다른 加盟國이 新 加盟國에게 그들의 法院에 提訴하고 外交使節을 交換하거나, 기타 國際聯合 밖에서 承認을 한 國家처럼 新加入을 取扱해야 하는 것을 許諾해야 하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⁷¹⁾

C. d. Visscher는 “國家의 承認은 承認을 하는 國家의 個別的 行爲로서 政治的 判斷의 問題로 남아 있고, 國際聯合에의 加入은 集團的 行爲로서 憲章에 의해 規律된다.”고⁷²⁾ 論及하고 있다. 따라서 國際聯合에 의한 集團的 承認의 原則이 確立되기 위해서는 憲章의 改正, 또는 모든 加盟國에 의한 特殊條約의 締結이 要求된다.⁷³⁾

요컨대, 國際聯合의 集團的 措處 (collective action)인 加入에 불구하고 個別國家는 그의 國家政策에 의하여 承認을 拒否할 수 있다. 國際聯合

註 69) D. P. O'Connell, *op. cit.*, *supra* note 67, p.158.

70) G. V. Glahn, *Law Among Nation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76) p.93.

71) *Ibid.*

72) C. D. Visscher, *Theory and Re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re. ed. trans. P. E. Corbet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8), p.237.

73) G. J. Mangone,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llinois: Dorsey Press, 1963), p.55.

에서 加入에 反對한 加盟國은 당연히 新加入國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이 아니며, 또 加入에 贊同한 加盟國도 新加入國을 國家로 承認한 것으로 推定되지 않는다. 國家의 國際聯合에의 “加入”만이 集團的 行爲로 決定되며 “國家承認”은 集團的 行爲로 決定될 수 없다.⁷⁴⁾ 그러나 H. Kelsen,⁷⁵⁾ H. Lauterpacht,⁷⁶⁾ C. Jessup,⁷⁷⁾ T. C. Chen,⁷⁸⁾ M. W. Graham,⁷⁹⁾ S. Rosenne⁸⁰⁾ 등의 有力한 反對의 見解가 없지 않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南北韓이 共同으로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될 때 國際聯合 外部에서 南北韓을 各各 國家로 承認하지 않은 既存加盟國이 당연히 南北韓을 各各 國家로 承認한 것으로 되는 法的 效果가 歸屬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相互承認하지 않은 두 國家는 國際會議에 共同으로 參席할 수 있고 또 多邊的 條約의 共同署名國이 될 수 있다.”⁸¹⁾ 이는 D. P. O Connell이 指適한 바와 같이 確實히 “非論理的”(illogical)이나 지금까지의 慣例이다.⁸²⁾

註 74) Q. Wright, “Some Thought about Recognition”, *A. J. I. L.*, Vol. 44, 1950, pp. 556-557.

75) H. Kelsen, *op. cit.*, *supra* note 48, p. 79.

76) 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1, 8th. ed. (London: Longmans, 1955), p. 147.

77) P. C. Jessup, *Modern Law of Nations* (New York: Macmillan, 1952), p. 15.

78) T. C. Chen, *The International Law of Recognition* (New York: Praeger, 1951), p. 222.

79) M. W. Graham, “Some Thoughts on Recognition of New Governments and Regimes”, *A. J. I. L.*, Vol. 44, 1950, p. 356.

80) S. Rosenne, “Recognition of States by the United Nations”, *B. Y. I. L.*, Vol. 26, 1949, pp. 445-447.

81) 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Stevens, 1967), p. 71.

(2) 南北韓共同加入과 國際聯合에 의한 承認

憲章 第4條 第1項에는 “平和愛護國”(peace loving states)으로 規定되어 있으므로, 國際聯合에 加入이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決議와 總會의 決議에 의해 決定될 경우 加盟國은 國際聯合에 의해 國家로 承認된 것이다.⁸³⁾ 國際聯合은 加盟國과 獨立된 法人格者로서 그의 機能行使를 위해 필요한 國家承認의 機能을 갖고,⁸⁴⁾ 國際聯合의 모든 機關은 憲章이 賦與한 權能에 따라 國家를 承認할 權限을 갖는다.⁸⁵⁾ 따라서 國際聯合에의 加入은 “國際聯合 自體”에 의한 國家承認으로 된다.

요컨대,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되면 南北韓은 各己 國際聯合으로부터 國家로 承認을 받은 것으로 된다.

(3) 南北韓共同加入과 南北韓相互間의 承認

南北韓이 共同으로 國際聯合에 加入하면 南北韓은 相互 國家로 承認한 것으로 되는가? 外交使節의 派遣·接受, 兩當事者의 關係를 規律하는 包括的·二邊的 條約의 締結, 國旗의 承認 등은 一般的으로 默示的 承認으로 認定된다.⁸⁶⁾ 國際聯合에의 加入은 國際聯合憲章이라는 條約에의 加入을 意味하나, 이는 “多邊的 條約”이고 國家의 承認으로 推定되는 “二邊的 條約”이 아니므로 加入이 곧 默示的 承認으로 認定될 수는 없다.

G. Schwarzenberger 가 論及한 바와 같이 “共同當事者”(coparties)나 “共同構成員”(comembers)이 되는 것은 그 共同目的 이외에 相互默示

註 82) D.P.O'Connell, *op. cit.*, *supra* note 67, p.155.

83) S.Rosenne, *op. cit.*, *supra* note 80, p.447.

84) A.V.W.Thomas and A.J.Thomas, *Non-Intervention*(Dullas: Southern Methodist Press, 1956), p.261.

85) *Ibid.*

86) H.Lauterpacht, *op. cit.*, *supra* note 76, p.148.

的 承認을 하는 것으로 되느냐는 當事者의 意圖에 딸린 問題이다⁸⁷⁾ 實
로 承認은 本質적으로 “意圖”의 問題에 屬한다⁸⁸⁾ A. V.W. Thomas 는 憲
章이 國際聯合의 加盟國은 他國을 承認할 義務가 있다는 것을 規定하고
있지 않다고⁸⁹⁾ 論述하면서, 默示的 承認은 그러한 承認을 하는 明白한 意
圖의 證據로부터 抽出될 수 있다고 한다⁹⁰⁾ T. Lie 도 國際聯合의 慣行에
의하면 이에 加入은 國家의 承認을 意味하지 않았다고 指摘하면서 國際
聯合의 慣行도 그러함을 確認했다⁹¹⁾ W. V. O' Brien 도 國際聯合에의 加入
은 國家의 承認으로 認定되지 않는다고⁹²⁾ 한다. 國際機構의 “共同”
構成員이 된다는 것도 默示的 承認을 意味하지 않는다⁹³⁾ 또 國際聯合에
의 加入은 自動적으로 다른 加盟國을 承認해야 할 義務를 負擔하는 것
도 아니다⁹⁴⁾ A. V.W. Thomas 는 한걸음 더 나가 加盟國 相互間의 不承認
은 “干涉行爲”(act of intervention)가 되지 않는다고⁹⁵⁾ 한다. Israel
과 Arab 은 모두 國際聯合의 加盟國이나 이들은 相互 國家承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⁹⁶⁾ 加盟國 相互間에 承認의 義務가 없음을 實證하는 것

註 87) G. Schwarzenberger, *op. cit.*, *supra* note 81, p.71.

88) J.G. Whitaker, *op. cit.*, *supra* note 31, p.259.

89) A.V.W. Thomas and A.J. Thomas, *op. cit.*, *supra* note 84, p.263.

90) *Ibid.*

91) W.W. Bishop, *op. cit.*, *supra* note 68, p.227

92) W.V. O'Brien, *The New Nat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Diplomacy*
(London: Stevens, 1964), p.113.

93) M.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George Allen, 1970), p.86.

94) C.d. Visscher, *op. cit.*, *supra* note 72, p.238.

95) A.V.W. Thomas and A.J. Thomas, *op. cit.*, *supra* note 84, p.263.

96) D.P. O'Connell, *op. cit.*, *supra* note 69, p.263.

이다.⁹⁷⁾ W.L.Gould 는 國際聯合이 加盟國으로 하여금 그들의 裁判所에서 新加盟國을 國家로 取扱하도록 要求할 것을 期待할 수 없다고 論하면서,⁹⁸⁾ 그 論據로 加盟國의 裁判所는 國際聯合의 裁判所도 世界國家의 從屬的인 政治單位의 裁判所도 아니라는 點을 提示한다. 이러한 W.L.Gould 의 설명도 加盟國은 다른 加盟國을 承認할 義務가 없다는 論旨이다.

이와 같이 南北韓의 共同加入은 既存加盟國에 의한 默示的 國家承認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며, 또 南北韓相互間에 默示的 國家承認을 하는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

마.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 方案

(1) 加入方法

南北韓의 “共同” 國際聯合加入과 “同時” 國際聯合加入은 一般的으로 同一한 意味로 使用되고 있으나 嚴格히는 兩者는 區別되는 概念이다. 前者는 單獨加入에 對立되는 概念으로, 두 當事者가 모두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意味하나, 두 當事者의 加入時期는 반드시 同時임을 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一當事者가 먼저 單獨으로 加入하고 그 뒤에 他 當事者가 또 單獨으로 加入하여도 他當事者가 加入한 이후로는 두 當事者가 모두 共同加入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後者는 두 當事者가 모두 國際聯合에의 加入資格이 있음을 前提로 하고 두 當事者가 順次的으로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이 아니라 한 個의 決議案에 의해 同時에 加入하는 것을 뜻한다.

註 97) *Ibid.*

98) W.L.Gould,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New York : Harper, 1957), p.234.

그러므로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南北韓의 加入은 時差를 둔 共同加入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同時加入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여 共同으로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되는 方案은 (i) 大韓民國이 먼저 加入하고 그 뒤에 北韓이 加入하는 方案, (ii) 北韓이 먼저 加入하고 그 뒤에 大韓民國이 加入하는 方案, (iii) 大韓民國과 北韓이 同時에 加入하는 方案이 있다.

지금까지 大韓民國의 加入에 관해서는 蘇聯이, 北韓의 加入에 관해서는 美國이, 各各 安全保障理事會에서 拒否權을 行使해 왔으므로 上記 (i)(ii)의 單獨加入方案은 東西和解의 限界를 넘는 것으로 美國과 蘇聯의 國家利益의 相衡과 關係되므로 그 實現性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며, (iii)의 南北韓 一括加入의 同時加入方案만이 蘇聯과 美國의 拒否權을 脫避하여 南北韓을 國際聯合에 加入시킬 수 있는 妥協적이고 現實적인 方案이다.

더우기 1970 年代에 들어서면서 一般的으로 反西方的 態度를 取하던 第3世界國家들의 國際聯合에의 加入 增加와 東西和解라는 새로운 國際的 與件을 考慮해 볼 때 (iii)의 方案만이 實現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2) 合意方法

大韓民國政府는 1972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 7個原則을 宣言하였다. 同 宣言 中 南北韓共同國際聯合加入을 提議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國際聯合의 多數會員國들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 加入전이라도 大韓民國代表가 參席하는 國際聯合 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

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⁹⁹⁾

北韓은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통해 表示한 南北韓共同國際聯合加入 提議에 대해 이른바 “평화통일 5대강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提議를 拒否했다.

통일된 하나의 조선이 아니라 분열된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민족적 행위이며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범리적 문건은 그들이 은밀히 추진해 오던 두개 조선노선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완전히 정책화 하였다!¹⁰⁰⁾

1975 年の 大韓民國의 加入申請에 反對하는 代表들은 分斷國의 어느 한 쪽만이 單獨으로 加入하면 이는 再統一에 支障을 줄 것이기 때문에 東西獨의 경우처럼 雙方 사이에 事前에 合意가 있어야 한다는 立場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課題는 南北韓이 國際聯合에의 同時加入에 관한 北韓의 同意를 얻는 일이다. 北韓의 同意를 얻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北韓을 充實하게 代辯하여 온 蘇聯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大韓民國의 加入을 위한 西方側 提案에 대한 修正案의 形式으로, 南北韓同時加入을 主張해 왔다. 그러므로 北韓의 同意를 얻기 위해 (i) 直接的으로 北韓과 交渉하는 方案 이외에, (ii) 間接的으로 周邊國家 특히 蘇聯의 힘을 빌려 北韓의 同意를 誘導하도록 하는 方案을 考

註 99) 同 外交政策宣言 第5項

100) 國土統一院, 統一對話(서울: 南北調節委員會, 1982), p.90.

慮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i)(ii) 方案은 擇一的인 것이 아니라 相互補充的인 것이다. 우리는 北韓과 同時加入할 수 있도록 우리의 外交力量을 發揮해야 할 것이다.

3. 平和條約의 締結

가. 序 說

韓國動亂은 “內亂이냐? 戰爭이냐?” “集團的 自衛權의 行使이냐? 集團的 強制措置이냐?”에 關係 많은 論議가 있다. 그러나 韓國動亂의 法的 性格을 어떻게 보든 韓國動亂을 1953 年의 休戰協定의 締結로 敵對行爲가 中止되어 있는 오늘의 狀態를 否認할 수 없다. 休戰은 敵對行爲의 中止일 뿐 一時的인 平和의 回復이나 戰爭의 終了가 아니라는 것은 傳統國際法에 의해 確立된 原則이다.¹⁰¹⁾ 그러므로 韓半島의 오늘의 狀態는 戰爭狀態이며 平和條約이 締結되기 전까지는 平和狀態는 回復되지 않는다.¹⁰²⁾

그러나 南北韓 간의 오늘의 法的 狀態가 休戰狀態이냐에 대한 答은 그리 簡單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北韓은 休戰協定에 署名했으나 大

註 101) H.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Holt, 1967), pp.92-93.

G.Schwarzenberger, *The Law of Armed Conflict* (London: Stevens, 1968), p.726.

U.S.Department of the Army, *The Law of Land Warfare* (Washington D.C.: U.S.G.P.O., 1956), para. 479, p.172.

Great Britain, The War Office, *The Manual of Military Law, Part III, The Law of War on Land* (London: H.M.S.O., 1958), para. 428, p.127.

102) H.Kelsen, *op. cit.*, *supra* note 101, pp.92-93, note 84.

韓民國은 休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韓民國은 國際聯合軍司令官이 休戰協定을 締結하기 전인 1950年 7月 15日에 作戰指揮權을 國際聯合軍司令官에게 移讓하였으므로, 大韓民國은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을 통해 休戰協定과 連結되어 그 法的 效力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南北韓 間의 法的 狀態는 休戰狀態 즉 戰爭狀態에 있는 것이다!¹⁰³⁾ 그러므로 南北韓 間의 오늘의 戰爭狀態를 終結하여 敵對關係를 整理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制度的·法的 方法인 平和條約의 締結이 要求된다!¹⁰⁴⁾

이와 같이 平和條約의 締結은 다음과 같이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設定하는 것이므로 이는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i) 期間의 定함이 없는 休戰의 경우 相對方에 通告할 것을 條件으로 交戰者는 언제든지 敵對行爲를 開始하는 것이 合法的인 것으로 認定되어 있으므로,¹⁰⁵⁾ 北韓이 우리에게 通告할 것을 條件으로 南侵해 오는 것이 戰爭法上 合法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休戰狀態를 終結 짓는 平和條約의 締結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ii) 韓半島의 安全保障側面에서의 오늘의 休戰協定の 缺陷事項을 平和條約으로 補充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註 103) *Ibid.*

金明基, “大統領狙擊事件과 戰爭犯罪人の 引渡”, 南北共同聲明과 國際法(서울:法文社, 1975), pp.79-80.

104) 第30次 國際聯合總會의 西方側決議 第2項(GA/Res, 3390 A(XXX) of Nov. 18, 1975).

Kissinger 의 提議(*New York Times*, Sep. 23, 1975).

金學俊, *op. cit.*, *supra* note 12, p.9.

105) 1907年의 “陸戰法規와 慣例에 관한 協約” 第36條.

(iii) 韓國動亂의 關係諸國이 平和條約 締結에 어떤 形式으로든 關與할 수 있게 하므로써 그들의 疎外感과 不滿을 解消하여 韓半島에서의 周邊列強의 對決을 和解로 轉換하여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나. 平和條約의 意義와 特色

(1) 平和條約의 意義

平和條約 또는 講和條約은 戰爭終了를 위한 交戰當事者 間의 明示的 合意로서 戰爭終了의 가장 만족한 형식이다. 이는 당사자가 합의의 형식으로 紛爭을 終了시키고 戰爭 中 惹起된 當事者 間에 존재하는 모든 差異點을 精確한 用語로 정리할 기회가 提供되기 때문이다.¹⁰⁶⁾

戰爭의 終了를 目的으로 하는 條約인 한 그 名稱이 무엇이든 平和條約이다. 1921年 5月 20日 獨逸과 中國間에 締結된 平和條約의 名稱을 “平和狀態의 回復에 관한 協定”이며, 1950年 10月 19日 蘇聯과 日本間에 締結된 平和條約의 名稱을 “日蘇共同聲言”이며, 1973年 3月 20日의 “越南 平和條約”은 “越南에 관한 國際會義議定書”라는 名稱으로 되어 있다.

(2) 平和條約의 特色

平和條約의 締結權者는 國家元首이며 休戰條約 특히 部分的 休戰條約의 締結權者인 軍司令官은 平和條約을 締結할 權限이 없다.

平和條約은 一般的으로 批准을 要하며,¹⁰⁷⁾ 그 效力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批准書의 交換時가 아니라 署名時에 溯及해서 發生하는 것이 一

註 106) M. Greenspan, *The Modern Law of Land Warfare* (Berkeley: California Univ. Press, 1959), p.588.

107) *Ibid.*, p.590.

般條約과 다른 特色의 하나이다.¹⁰⁸⁾

署名되었으나 批准되지 않은 平和條約은 平和條約으로서의 效力이 없으나, 休戰條約으로서의 效力을 갖는다.¹⁰⁹⁾ 그러므로 平和條約의 署名 전에 休戰條約이 締結되어 있는 경우에는 批准되지 않은 休戰條約은 앞의 休戰條約을 改正한 것으로 된다.

다. 平和條約의 當事者

(1) 一般國際法上 休戰協定の 當事者와 平和條約의 當事者

(가) 休戰協定の 當事者

1) 休戰協定の 當事者 一般休戰協定の 當事者는 交戰當事者이다.

그러나 休戰協定の 締結權者는 休戰의 種類에 따라 다르다. 休戰은 “一般的 休戰”(general armistice), “部分的 休戰”(partial armistice) 및 “停戰”(suspensions of arms)으로 區分된다.

“一般的 休戰”은 交戰當事者 間의 戰鬪地域 全部에 걸쳐 敵對行爲를 全面的으로 停止하는 休戰이다. 이는 當該 戰爭全體에 關聯된 政治的 重要性을 갖는 것으로서, 交戰當事者의 政府나 總軍司令官 間의 合意에 의해 이루어 진다.¹¹⁰⁾ 一般的 休戰은 事實上 戰爭의 終了와 同一한 效力이 있으며 通常 講和條約의 前提가 된다.

“部分的 休戰” 또는 “局地的 休戰”은 一般的 休戰과 같이 全軍의 全戰爭區域에 걸쳐 敵對行爲를 中止하는 것이 아니라, 一部軍에 限하여

註 108) C. Phillipson, *Termination of War and Treaties of Peace* (London: 1916), pp.188-190.

109) *Ibid.*, p.190.

110) U.S. Department of the Army, *op. cit.*, *supra* note 101, para.483.

또는 一定한 地域에 限하여 一時的으로 敵對行爲를 停止하는 休戰이다. 예컨대 空軍에 의한 敵對行爲의 停止, 또는 一部 戰線에서의 敵對行爲의 中止 등은 部分的 休戰이다. 一般的 休戰과 같이 政治的 重要性和 政治的 效果를 갖는다. 部分的 休戰協定은 交戰當事者의 總軍司令官에 의하여 締結된다!¹¹¹⁾

“停戰”은 交戰當事者의 軍隊 間의 合意에 의한 短期間의 部分的 一時的 敵對行爲의 中止이다. 部分的 休戰과의 差異點은 停戰에는 政治的 目的이 없고 一時的·局地的 作戰을 停止하는 意味밖에 없다는 點이다. 交戰當事者의 軍指揮官은 停戰協定을 締結할 權限을 갖는다!¹¹²⁾

이와 같이 休戰協定の 締結當事者는 交戰當事者이나 그 締結權者는 休戰의 種類에 따라 다르다.

2) 重要 休戰協定の 當事者

今世紀에 締結된 重要的 一般的 休戰協定の 締結當事者와 그 署名者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18 年의 聯合軍·獨逸間의 休戰協定

1918 年 11 月 11 日에 締結된 第1次 大戰의 休戰協定인 “聯合軍·獨逸 間의 休戰協定”은 聯合軍總司令官 Foch 元帥와 Wemyss 海軍大將을 一方으로 하고, 獨逸代表를 他方으로 하여 署名되었다!¹¹³⁾

나) 1940 年의 獨·佛 間의 休戰協定

1940 年 6 月 25 日의 “獨·佛協定”은 獨逸軍最高司令官의 委任을 받

註 111) *Ibid.*, para. 484.

112) *Ibid.*, para. 485.

113) 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II, 7th ed. (London: Longmans, 1952), p. 549, note 2.

은 Wilhelm Keitel 將軍과 佛蘭西政府의 全權代表 Charles L.C Huntzinger 將軍 間에 署名되었다!¹¹⁴⁾

다) 1943 年の Italy 休戰協定

1943 年 9 月 3 日에 締結된 “Italy 休戰協定”은 Italy 首相 Pietro Badoglio 와 Italy 最高司令部의 Guiseppe Castellano 准將을 一方으로 하고, 聯合軍司令官 Dwight D. Eisenhower 美陸軍大將과 參謀長 Walter B. Smith 美陸軍少將을 他方으로 하여 署名되었다!¹¹⁵⁾

라) 1944 年の Rumania 休戰 協定

1944 年 9 月 12 日에 Moscow 에서 締結된 “Rumania 休戰協定”은 美國·蘇聯·英國政府當局의 代表 Malinovski 와 Rumania 政府當局과 最高司令部當局的 代表 Lucretiu Patrasanu, G.L.A.D. J. Damaceanu, B. Stirbey, G. H. Popp 間에 署名되었다!¹¹⁶⁾

마) 1944 年の Finland 休戰協定

1944 年 9 月 19 日에 Moscow 에서 締結된 “Finland 休戰協定”은 蘇聯·美國 政府의 代表 A. Zhdanov 와 Finland 政府의 代表 C. Enckell, K. Walden, E. Heinsichs, O. Enckell 에 의해 署名되었다!¹¹⁷⁾

바) 1945 年の Hungary 休戰協定

1945 年 1 月 20 日에 Moscow 에서 締結된 “Hungary 休戰協定”은 蘇

註 114) U.S. Department of the State, *Document on German Foreign Policy, 1918-1945*(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6), p.671.

115) M.O. Hudson, *International Legislation*, Vol. X, 1942-1945 (New York: Oceana, 1972), p.52.

116) *Ibid.*, p.142.

117) *Ibid.*, p.147.

聯·英國·美國政府를 代表한 K. Voroshilov 와 Hungary 暫定政府를 代表한 Gyongyosi Janos, Voros, Balogh Istvan 間에 署名되었다!¹¹⁸⁾

사) 1945 年의 日本의 降伏文書

1945 年 9 月 2 日에 東京에서 行해진 “日本의 降伏文書”는 日本帝國과 日本政府를 代表한 Manoru Shigemitsu 와 日本帝國司令部를 代表한 Yoshijiro Umezu 와 聯合軍最高司令官 Douglas MacArthur 將軍 間에 署名되었다!¹¹⁹⁾

아) 1973 年의 越南休戰協定

1973 年 1 月 27 日 Paris 에서 締結된 越南 休戰協定인 “越南戰爭終結 및 平和回復에 관한 協定”은 美國政府를 代表한 國務長官 W. P. Rogers, 越南共和國政府를 代表한 外務部長官 Nguyen Duy Trinh, 南越南 臨時革命政府를 代表한 外務部長官 Nguyen Tri Binn 에 의해 署名되었다!¹²⁰⁾

자) 1978 年의 中東平和構造協定

1978 年 9 月 17 日에 Camp David 에서 締結된 一種의 豫備平和條約에 해당되는 中東平和構造協定인 “Camp David 協定”(Camp David Agreements)은 Egypt 의 Arab 共和國政府를 代表한 A. Sadat 大統領과 Israel 政府를 代表한 M. Begin 首相 間에 署名되고, 美大統領 J. Carter 가 證人으로 署名했다!¹²¹⁾

이와 같이 休戰協定の 當事者는 交戰當事者이나 交戰當事者가 聯合軍을

註 118) *Ibid.*, p.280.

119) *Ibid.*, p.663.

120) J. A. S. Grenville, *The Major International Treaties 1914-1973* (London: Methuen, 1974), p.445.

121)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18, No.2, 1979, p.366.

編成할 경우 또는 交戰當事者 一方이 數個國일 경우는 休戰協定の 當事者와 그 締結權者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나) 平和條約의 當事者

1) 平和條約의 當事者 一般

平和條約이 締結되기 前에 締結되는 休戰協定の 當事者와 平和條約의 當事者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 것이 慣行이다. 特히 聯合軍을 編成하여 作戰하는 경우는 休戰協定の 當事者와 平和條約의 當事者는 各己 個別的으로 定해지며, 兩者의 當事者가 一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一般的이다.

2) 重要 平和條約의 當事者

가) 第1次大戰

第1次大戰의 休戰協定과 平和條約의 締結過程 및 그 當事者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8年 10月 30日에 Turkey와의 休戰協定이 署名되었고, 1918年 11月 3日 Austria·Hungary의 休戰協定이 締結되었다. 1918年 10月 3日에서 6日까지 獨逸政府는 Swiss 外交系統을 통해 一般的 休戰과 平和回復의 交渉을 要求하는 通報를 發했고, 이에 美國과의 交渉이 이루어져 1918年 11月 11日 聯合軍司令官 Foch 元帥와 獨逸代表 間에 休戰協定이 署名되었다!¹²²⁾

1919年 1月 Paris에서 戰勝國의 代表만으로 이루어진 平和會談이 있었고 獨逸代表는 5월에 Paris에 와서 平和會談에서 作成된 平和條約案을 受領했다. 獨逸은 이에 약간의 修正을 加했고, 戰勝國은 이 修正을

註 122) H.Lauterpacht, *op. cit.*, *supra* note 113, p.549.

默認했으며, 同 修正案은 1919年 6月 28日에 聯合國과 獨逸 間에 署名되었고, 1920年 1月 10日 署名國에 의해 批准되었다.¹²³⁾

Austria와의 平和條約은 1920年 7月 16日에 效力을 發生했고, Bulgaria와의 平和條約은 1920年 8月 9日에, Hungary와의 平和條約은 1921年 7月 26日에 各各 效力을 發生했으며, Turkey와의 平和條約은 1920年 8月 10日에 署名되었으나 批准되지 않아 效力을 發生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1923年 7月 24日 “Lausanne 條約”에 의해 代替되어 1924年 8月 6日에 效力을 發生했다.¹²⁴⁾ 中國은 山東條約에 反對하여 Versailles에서 署名하지 않았으나, 1921年 9月 20日에 獨逸과 平和條約을 締結했으며, 美國은 1921年 8月 25日에 平和條約을 締結했다.¹²⁵⁾

나) 第2次大戰

第2次大戰의 休戰協定은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個別 當事者間에 締結되었으며, 1947年 2月 10日의 “Italy 平和條約”은 國際聯合의 20개 加盟國과 Italy·Bulgria·Finland·Hungary·Rumania의 署名으로 締結되었으며,¹²⁶⁾ 1951年 3月 8日의 “對日平和條約”은 San Francisco에서 48個 國家와 日本 間에 署名되었다. 그러나 Czechoslovakia, Poland 및 蘇聯은 署名을 拒否했다.¹²⁷⁾

“對獨平和條約”은 1951年 7月 9日에 英國과 佛蘭西에 의해 締結

註 123) *Ibid.*, p.607.

124) *Ibid.*

125) 金明基·金成勳, 國際法學(서울:日新社, 1972), p.525. note 16.

126) W.C.Langsam, *Historic Documents of World War II*(Westport: Greenwood, 1958), p.168.

127) *Ibid.*, pp.175-176.

되었고,¹²⁸⁾ 1951年 10月 19日 美國議會의 合同決議에 의해 獨逸과의 戰爭狀態가 終了되었다.¹²⁹⁾ 그리고 그 후에 1956年 7月 14日에 美國政府와 Bonn 政府 間에 “友好 通商 航海 條約”이 締結되었다.¹³⁰⁾

다) 越南戰爭

越南戰爭의 休戰協定은 1973年 1月 27日에 美國·越南共和國·越南民主共和國·越南臨時革命政權 사이에 締結되었다. 그러나 同 休戰協定 締結 후 1973年 3月 2日 Paris에서 “越南에 관한 國際會議議定書”(The Ac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et-Nam)가 12個國에 의해 共同宣言의 形式으로 締結되었다. 이는 國務長官 W. P. Rogers, 佛蘭西 外務長官 Maurice Schumann, 越南共和國 臨時革命政府 外務部長官 Nguyen Thi Binh, Hungary 人民共和國 外務部長官 Janos Peter, Indonesia 外務部長官 Adam Malik, Poland 人民共和國 外務部長官 Stefan Olszowski, 越南 民主共和 外務部長官 Nguyen Duy Trinh, 大英帝國 外務部長官 Alec Douglas -Home, 越南 外務部長官 Tran Van Lam, 蘇聯 外務部長官 Andret A. Gromuko, Canada 外務部長官 Mitchell Sharp, 中共 外務部長官 Chi Peng-Fei 間에 署名되었다.¹³¹⁾

라) 中東戰爭

1979年 3月 26日 Washington에서 締結된 “Egypt·Israel 平和協定”(Treaty of Peace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State of Israel)은 Egypt의 Arab 共和國政府와 Israel 政府 間에 署名되고

註 128) *Ibid.*, p.180.

129) *Ibid.*

130) *Ibid.*

131)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II, No.2, 1973, p.396.

그 證人으로서 美國大統領 J.Carter 가 署名했다.

이와 같이 平和條約의 當事者는 交戰當事者이나 交戰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數個의 當事者이거나 聯合軍을 編成할 경우는 平和條約의 當事者가 경우에 따라 個別的·時次的으로 定해 진다.¹³²⁾

(2) 韓國休戰協定の 當事者와 平和條約의 當事者

(가) 韓國休戰協定の 當事者

1) 休戰協定の 當事者

休戰協定은 國際聯合司令官과 北韓軍最高司令官 中國人民志願司令官 間에 署名되었으므로, 休戰協定の 一方 當事者는 國際聯合이며, 他方 當事者는 北韓과 中共이다.

國際聯合司令部는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이며, 그 自體 法人格者가 아니므로 休戰協定の 當事者가 아니다. 當事者는 法人格者인 國際聯合 自體이다. 따라서 國際聯合이 存續하는 限 國際聯合司令部가 解體되어도 休戰協定の 效力은 그대로 存續한다.¹³³⁾

그리고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署名에는 大韓民國을 위한 顯名이 없으며, 大韓民國은 休戰에 反對했고 또 國軍은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作戰指揮를 받았으므로 休戰協定の 法的 當事者로 보기 어렵다.

2) 休戰協定の 當事者와 政治問題의 當事者

大韓民國이 休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으므로 休戰協定の 當事者로 보기 어려우나 大韓民國은 南北問題의 當事者이다. 즉 休戰協定の 當事者와 南北問題의 當事者는 同一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南北 間의 軍事問題의

132) *Supra* note 121.

133) 金明基, *op. cit.*, *supra* note 17, pp.95-96.

當事者와 政治問題의 當事者는 同一하지 않기 때문이다.

政治問題의 當事者는 休戰協定을 통한 軍事問題의 當事者와 一致하는 것이다. 1952年 2月 19日 國際聯合側과 共產側의 合意에 의해 政治問題는 休戰協定締結 후 3個月 내에 政治會議에서 論議하기로 했으며, 이는 休戰協定 第60項에 包含되어 있다. 이 第60條의 規定에 의거 1953年 8月 28日 國際聯合 總會는 政治會談의 開催를 勸告하는 決議를 採擇했으며,¹³⁴⁾ 同 決議에는 政治會談의 當事者를 國際聯合軍側을 위해 大韓民國을 包含한 參戰國 중에서 選定할 것과 共產側을 위해 共產側이 願한다면 蘇聯도 參加할 것을 勸告하는 內容이 包含되어 있다. 그리고 1954年 1月 15日 에 開催된 Berlin 外相會議에서 政治問題의 當事者를 美·佛·英·蘇·中共·北韓·大韓民國·기타 參戰國으로 할 것을 合意했던 것이다.¹³⁵⁾

이와 같이 南北韓 間의 政治問題의 當事者는 一方이 國際聯合, 他方이 北韓과 中共인 것이 아니다. 더우기 休戰協定 第60項과 1953年 8月 28日의 國際聯合總會의 決議를 떠나 一般國際法에서 볼 때 政治問題의 南北韓當事者는 大韓民國과 北韓인 것이다.¹³⁶⁾

(나) 韓國平和條約의 當事者

1) 平和條約의 性格

1953年의 休戰協定은 全戰線에 걸친 모든 軍의 敵對行爲의 停止이므로 그것은 所謂 “一般的 休戰”의 한 形態이다. 그러나, 交戰當事者 間에 “軍事問題”만을 解決하기로 合意를 보았기 때문에 一般的인 “一般的 休戰”과 달리 政治的 性格이 排除되고 軍事的 性格만을 갖고 있다.

註 134) GA/Res. 711(VII).

135) M.D.Danelan and M.J.Grieve, *op. cit.*, *supra* note 30, p.61.

136) 金明基, *op. cit.*, *supra* note 125, pp.104-105.

그러나 將次 締結되게 될 平和條約은 “政治問題”를 解決하는 政治的 性格을 갖는 것이다. 어떤 平和條約도 戰爭狀態를 終結하고 平和狀態로 回復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므로 그것은 政治的 條約으로서의 特性을 갖게 된다.¹³⁷⁾ 그러므로 韓半島의 平和를 回復하게 될 平和條約도 政治的 條約의 特性을 가짐은 勿論이다.

2) 平和條約의 當事者

이미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休戰協定の 當事者와 平和條約의 當事者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南北 間의 休戰協定の 當事者인 “國際聯合”과 “北韓·中共”이 韓半島의 平和를 回復하는 平和條約의 當事者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休戰協定은 第 60 項에서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해 “雙方의 關係 各國政府에게” (to the government of the concerned on both sides) “政治會談” (political conference)의 開催를 勸告한다는 規定을 든 것이다.¹³⁸⁾ 그러나 同 第 60 條項은 政治會談의 當事者를 明示하지 않고 다만 “雙方의 關係 各國政府”라고만 表示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軍司令官은 政治問題를 解決할 權限이 없으며,¹³⁹⁾ 軍事問題만을 解決하는 軍司令官에게 政治問題를 解決하는 當事者를 指定할 權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3年 8月 28日의 國際聯合總會의 決議에 의해 政治問題의 當事者의 範圍가 定해졌든 것이다. 그러므로 平和條約의 當事者는 國際聯合의 同 決議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註 137) J. Stone, *op. cit.*, *supra* note 19, pp.640-642.

138) D.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New York : Praeger, 1964), pp.51-52.

139) H. Kelsen, *op. cit.*, *supra* note 101, p.463.

그러므로 北韓이 平和條約의 締結 當事者를 “北韓”과 “美國”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休戰協定の 當事者인 “國際聯合”과 “北韓·中共”과 一致하지 않는 것을 理由로 不當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結局 平和條約의 當事者는 1953年 8月 28日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에 表示된 範圍 내에서 定해져야 하며 그 중 直接 當事者인 大韓民國이 排除될 수 없음은 勿論이다.

라. 平和條約의 形式과 內容

(1) 平和條約의 形式

(가) 條約型·交換公文型·共同聲明型

平和條約은 交戰當事者 雙方이 一個의 文書에 署名하는 條約型의 形式으로 締結되는 것이 一般的이나, 交換公文이나 共同聲明의 形式을 取하는 경우도 있다.

1952年 印度는 戰爭狀態를 終結한다고 日本에 通告하고 이를 受領한 日本은 同年 4月 8日 이를 受諾한다는 同意通告를 發함으로서 日本과 印度 間의 戰爭은 終了되었다. 그 후 兩國 間에 체결된 同年 8月 27日의 平和條約은 上記 交換公文에 의해 終了된 戰爭의 事後處理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講和條約은 雙方交戰當事者의 共同聲明의 形式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1956年 10月 19日 Moscow에서 서명되고 1956年 12月에 批准書의 交換으로 效力을 발생한 “蘇·日 共同宣言”은 그 예이다. 同 共同宣言은 領土問題만을 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同 宣言의 法的 성질에 관한 理論이 많으나 戰爭狀態를 終了하는 講和條約의 한 形式임에는 틀림 없다. 1973年의 “越南 平和條約”은 共同聲明의 形式을

따랐다.^{139a)}

(나) 劃一講和型・段階講和型

平和條約은 그 內容을 一時에 劃一的으로 規定하는 경우가 一般的이다. 그러나 內容을 區分하여 或種의 事項은 段階를 두어 順次的으로 解決하는 경우도 있다. 前者는 劃一講和型 또는 單式講和型이라 하고 後者를 段階講和型 또는 複式講和型이라 한다.

前述한 1956年 10月 19日의 “蘇・日共同宣言”은 모든 사항을 劃一的・最終的으로 解決하지 않고 段階으로 처리하였다. 즉, 同 宣言은 外交使節 및 領事의 交換(第2條), 抑留者의 送還(第5條), 賠償請求權의 처리(第6條) 등에 관해서는 解決을 보았으나 領土問題는 규정하지 않고 추후에 別途 解決토록 되어 있다. 이는 段階講和型의 代表的인 例의 하나이다.^{139b)}

(2) 平和條約의 內容

平和條約의 內容은 一定된 바 없고 當事者의 合意로 定해진다. 平和條約은 通常 “一般條項”(general clause)을 포함하나 그 외에 “特殊條項”(special clause)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前者에게는 (i) 敵對行爲의 終了, (ii) 占領軍의 撤收, (iii) 押留財産의 返還, (iv) 捕虜의 送還, (v) 條約의 復活 등이 포함되고, 後者에는 (i) 損害의 賠償, (ii) 領土의 割讓, (iii) 要塞의 破壞 등이 포함된다.¹⁴⁰⁾

1951年의 “對日平和條約”(Treaty of Peace with Japan)의 內容은 다

註 139a) 金明基・金成勳, *op. cit.*, *supra* note 125, p.523.

139b) *Ibid.*, pp.523-524.

140) J.Stone, *op. cit.*, *supra* note 19, p.640.

음과 같이 構成되어 있다.

- (i) 第1章 平和
- (ii) 第2章 領域
- (iii) 第3章 安全
- (iv) 第4章 政治 및 經濟條項
- (v) 第5章 請求權 및 財産
- (vi) 第6章 紛爭의 解決
- (vii) 第7章 最終條項¹⁴¹⁾

1973 年の “越南平和條約”은 다음사항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 (i) 第1章 越南人民의 基本的 權利
- (ii) 第2章 敵對行爲의 終了와 撤軍
- (iii) 第3章 捕虜 등의 送還
- (iv) 第4章 越南國民의 自決權의 行使
- (v) 第5章 越南 統一과 南北越南 關係
- (vi) 第6章 軍事共同委員會, 國際統制臨時委員會 및 國際會議
- (vii) 第7章 Cambodia 및 Laos
- (viii) 第8章 美國과 南越南共和國 關係¹⁴²⁾

1979 年の “Egypt · Israel 平和條約”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i) 前 文
- (ii) 第1條 戰爭狀態의 終了, 撤軍
- (iii) 第2條 意思의 相互尊重과 不可侵

註 141) J.A.S.Grenville, *op. cit.*, *supra* note 120, pp.283-286.

142)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II, No.2, 1973, pp.396ff.

- (iv) 第 3 條 國際聯合憲章의 適用
- (v) 第 4 條 國際聯合監視軍
- (vi) 第 5 條 Israel 船舶의 Suez 運河通航
- (vii) 第 6 條 國際聯合憲章上的 權利・義務의 尊重
- (viii) 第 7 條 平和條約上的 戰爭의 解決方法
- (ix) 第 8 條 訴請委員會
- (x) 第 9 條 最終規定
- (xi) 附屬書 I Israel 撤軍과 安全約定에 관한 議定書
- (xii) 附屬書 II
- (xiii) 附屬書 III 當事者의 關係에 관한 議定書¹⁴³⁾

韓國平和條約에는 적어도 (i) 戰爭狀態의 終了, (ii) 南北韓간의 境界의 相互尊重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韓半島의 平和를 國際적으로 解決하기 위한 諸規定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平和의 國際的 保障을 위해 어떤 規定을 두어야 할 것인가는 다음의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 方案”에서 論하기로 한다.

마. 平和條約의 締結方案

(1) 平和條約의 當事者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韓國平和條約의 當事者는 1954 年の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者 중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때, 平和條約의 當事者로 다음과 같은 方案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i) 大韓民國을 一方 當事者로 하고, 北韓을 他方 當事者로 하는 方案

註 14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No.2, 1979, pp.366 ff.

(ii) 大韓民國을 一方當事者로 하고 北韓을 他方當事者로 하고, 이를 美國과 中共이 保障하는 方案

(iii) 大韓民國과 美國을 一方當事者로 하고, 北韓과 中共을 他方當事者로 하는 方案

(iv) 大韓民國과 16個參戰國을 一方當事者로 하고, 北韓·中共과 蘇聯을 他方當事者로 하는 方案

(v) 大韓民國을 一方當事者로 하고 北韓을 他方當事者로 하고 이를 16個參戰國과 中共·蘇聯이 保障하는 方案¹⁴⁴⁾

上記 (i)의 方案은 南北韓의 主體意識을 살린 方案이나 休戰協定の 實質的 當事者인 中共과 美國의 同意를 얻기 어려워 現實性이 없을 뿐더러 事後의 保障力이 없다.

(ii)(iii)의 方案은 南北韓의 主體性도 살리고 現實性도 있고 또 美國과 中共에 의한 保障性도 있는 方案으로, “Egypt · Israel 平和條約型”에 가까운 것이나 蘇聯에게 滿足을 주지 못하고 또 蘇聯에 의한 保障도 없다.

(iv)의 方案은 1954年의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者를 모두 포함하여 實現性과 保障性을 구비한 方案이나, 우리의 主體性이 沒却되어 있다.

(v)의 方案은 主體性·現實性·保障性을 모두 구비한 方案으로 “越南平和條約型”에 가까운 것으로 이 方案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더우기 이는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에¹⁴⁵⁾에 의한 1954年의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者를 포함하므로 이는 交渉過程에서는 물론이고 條約의 施行過程에

註 144) 어떤 경우도 日本은 法的 當事者로 參與할 수 없다. 왜냐하면 日本은 韓國動亂때 參戰한 바 없고, 또 1954年의 Geneva 政治會談에도 參與한바 없기 때문이다.(GA/Res. 711(VII) 參照).

145) GA/Res. 711(VII).

있어서도 國際聯合의 支持를 받을 수 있다.

(2) 平和條約의 形式

條約型・交換公文型・共同聲明型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는 平和條約의 當事者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大韓民國을 一方 當事者로 하고 北韓을 他方當事者로 하고 이를 16個參戰國과 中共・蘇聯이 保障하는 方案을 따른다면 條約型和 共同聲明型을 混合한 形式인 “越南型”이 바람직 할 것이다.

劃一講和型・段階講和型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는 平和條約의 交涉의 難易에 딸린 問題이다. 韓國平和條約의 締結交涉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豫想되므로 일단 基本的 事項의 合意를 본 후 段階的으로 附隨 事項의 合意를 보기 위해 段階講和型인 “Egypt・Israel型”을 採擇해야 할 것이다.

(3) 平和條約의 內容

이 點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案에서 考察하기로 한다.

4.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

가. 序 說

南北韓交叉承認・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平和條約締結로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은 일단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루어진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安全裝置가 必要하다. 왜냐하면 平和條約이 締結된 후에도 南北韓은 統一을 위해 各己 自己의 正統性을 主張하여,¹⁴⁶⁾ 大韓民國은 統一韓國도 大韓民國이어야 한다고 固執하고 北

註 146) 金明基, *op. cit.*, *supra* note 17, pp.136-137. F.B. Weinstein, *op. cit.*, *supra* note 5, p.177.

韓도 統一韓國은 北韓(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어야 한다고 主張하여 이로 인한 南北韓의 對決은 相互 不信을 助長하고 相對方을 誹謗하여 결국 韓半島의 平和에 龜裂을 가져오게 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韓半島의 統一이 이루어 질때까지 相互和合의 雰圍氣를 造成하여 平和를 定着하기 위해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을 締結할 必要를 갖게 된다.¹⁴⁷⁾

(i)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으로 雙方은 南北韓 互惠平等의 原則을 規定하여 相對方의 存在를 認定하고 相互 不信을 解消하여 和合의 雰圍氣를 造成하여 戰爭의 再發을 防止할 수 있다.

(ii) 雙方은 相互 交流와 協力을 통하여 思想·理念·制度의 差異를 좁혀 南北韓의 關係를 對決關係에서 和合關係로 轉換시켜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iii) 南北韓은 각기 相對方의 存在를 認定하여 對內外關係에서 相互 敵對關係를 清算하여 모든 問題를 對話를 통해 解決할 수 있게 됨으로서 武力衝突을 豫防하여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寄與할 수 있다.

(iv) 南北韓 雙方은 連絡代表部를 設置하여 公式的인 交渉通路를 통해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 問題에 관해 迅速히 協議·處理할 수 있으므로 南北韓 간의 激突을 事전에 防止하여 確固한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다.

나.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과 平和條約과의 關係

平和條約속에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內容을 包括하여 平和條約을 締

註 147) *Ibid.*, p.194.

N.N.White, *op. cit.*, *supra* note 12, pp.95ff.

國土統一院, 民族和合民主統一論, II (서울: 南北對話事務局, 1983), p.163.

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平和條約도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과 같이 南北韓만을 當事者로 締結할 경우만 可能하다. 왜냐하면 南北韓의 基本關係에 他國이 關與할 수 없으며 또 一方 他國이 關與하여 締結된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은 將次 우리의 自主的인 統一에 障礙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1979年의 “Egypt · Israel 平和條約”과 같이 同 平和條約과 不可分의 一部를 이루는 附屬議定書에 兩國의 基本關係에 관한 規定을 둔 것은 Egypt와 Israel 간에 平和條約이 締結되고 他國은 同 平和條約의 當事者로 되어있지 않았고 또한 Egypt와 Israel 간에는 統一問題가 前提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韓國平和條約은 南北韓만을 當事者로 締結될 수 없고 또 南北韓은 統一問題를 또다시 外勢에 連繫시켜서는 안될 것이므로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은 平和條約과 別途로 締結됨을 要한다.

다.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內容

(1) 提議 7個項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具體的인 內容은 南北韓의 交渉의 結果로 定해질 것이나, 1982年 1月 22日 우리 政府의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提議”에는 다음과 같은 7個項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雙方은 장차 統一國家가 樹立될 때까지는 互惠平等의 原則에 立脚하여 相互關係를 維持해 나간다.

둘째, 雙方은 雙方間 紛爭問題 解決에 있어서 모든 形態의 武力 및 暴力의 使用 또는 威脅을 完全히 止揚하고 모든 問題를 相互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한다.

세째, 雙方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現存하는 相異한 政治秩序와 社會制度를 相互 認定하며 서로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一切 干涉하지 아니한다.

네째, 雙方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現存 休戰體制를 維持하면서 軍備競爭의 止揚과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措置를 協議한다.

다섯째, 雙方은 分斷으로 인한 民族의 苦痛과 不便을 解消하며 民族的 信賴와 和合의 氛圍氣를 造成하기 위해 相互交流와 協力을 通하여 社會的 開放을 推進해 나가기로 한다. 雙方은 離散家族의 人道的 再會問題를 包含해서 南北 間의 自由로운 人的 往來와 多角的인 交流를 保進할 수 있도록 交易·交通·郵便·通信·體育·學術教育·文化·報道·保健·技術·環境保存 등 諸分野에서 協力하며 이를 통하여 民族의 利益을 增進시키는 具體的인 努力을 傾注하기로 한다.

여섯째, 雙方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思想·理念·制度의 差異에 拘碍됨이 없이 全世界 모든 나라들과 각기 締結한 모든 雙務的 및 多者間 國際條約과 協定을 尊重하며 民族의 利益에 관한 問題에 있어서는 서로 協議한다.

일곱째, 雙方은 閣僚級 全權代表를 任命하여 각기 서울과 平壤에 常駐 連絡代表部를 設置한다. 雙方은 相互協議에 의하여 連絡代表部の 任務를 具體的으로 定하며 자기側 管轄領域에 駐在하는 相對便의 連絡代表部の 任務遂行에 支障이 없도록 必要한 便宜와 협조를 提供한다.¹⁴⁸⁾

第1項은 “互惠平等의 原則”을, 第2項은 “武力行使 禁止의 原則”을,

註 148) 國土統一院, 民族和合民主統一論, I (서울: 南北對話事務局, 1982), pp.164-165.

第3項은 內政不干涉의 原則”을, 第4項은 “休戰體制的 維持와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의 原則”을, 第5項은 “社會開放의 原則”을, 第6項은 “既締結한 條約尊重의 原則”을, 各各 宣言한 것이며, 第7項은 “代表部의 設置”에 關係 規定한 것이다.

(2) 東西獨基本條約과의 比較

우리 政府가 提議한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內容과 1972年 12月 21日의 “東西獨基本條約”(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의 內容은 거의 같다. 東西獨基本條約은 前文과 9個條로 構成되어 있으며 前文은 同 條約의 基本趣旨와 精神을 宣言하고 있다. 第1條는 相互平等과 正常的인 善隣關係의 發展을, 第2條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의 尊重을, 第3條는 武力行使禁止의 原則을, 第4條는 一方의 他方不代表의 原則을, 第5條는 유럽의 安全保障과 軍備縮小의 原則을, 第6條는 各者의 領土와 獨立·自主性의 尊重을, 第7條는 社會開放의 原則을, 第8條는 常駐代表部의 設置, 第9條는 既締結한 條約의 相互 尊重을, 各各 規定하고 있다. 7個項으로 構成된 우리의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締結提議”의 內容과 “東西獨基本條約”의 內容은 다음의 몇가지 點에서 그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첫째,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締結提議”에는 “休戰體制的 維持와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의 原則”이 第4項에 포함되어 있으나, “東西獨基本條約”에는 이런 規定이 없다. 東西獨의 關係는 戰爭을 中止한 休戰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東西獨基本條約”에서 休戰體制的 維持에 關係한 規定이 없다. 오늘의 南北關係는 1953年 7月 27日의 “休戰協定”

에 의해 法的으로 整理되어 있으므로 暫定的인 現存狀態의 維持를 위해서는 現休戰體制를 維持할 수 밖에 없다. 이는 暫定的인 것이며 窮極的으로는 平和條約의 締結로 南北韓의 戰爭狀態를 終止시켜야 한다. 現休戰體制를 그대로 維持한다는 것을 “休戰協定”에 規定되어 있는 諸規定을 그대로 存置시킨다는 意味이다. 그중 重要的한 것은 (i) 現敵對行爲를 停止한 規定을 그대로 尊重하며, (ii) 現軍事分界線에 의한 南北分斷을 그대로 尊重하여 38線으로의 南北韓領域의 調整을 要치 않으며, (iii) 現軍事停戰委員會를 그대로 運營한다는 것 등이다.

둘째,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提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東西獨基本條約”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인 尊重한다는 “國際聯合憲章尊重의 原則”이 第2條에 포함되어 있다. 條約은 그 條約이 當事者만을 拘束하며 第3者에게는 그 拘束力이 미치지 않는 것이 原則이므로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기 전까지 國際聯合 憲章이라는 條約은 南北韓을 法的으로 拘束하는 것이 아니므로¹⁴⁹⁾ “東西獨基本條約”과 같이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을 尊重한다는 規定을 둘 必要가 없다고 본다. 勿論 이러한 條項은 南北韓 雙方이 모두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되면 그 後로는 無意味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南北韓 雙方이 모두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될 때까지 이런 條項은 意味를 갖는다. 그러므로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기 전에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을 締結하는 경우에는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에도 國際聯合의 目的과 原則의 尊重

註 149) J.L.Kunz, “Revolutionary Creation of International Law”, *A.J.I.L.*, Vol.41, 1947, p.119.

L.M.Goodrich and E.Hambro,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Boston: World Peace Foundation, 1949), pp.108-109.

條項을 둘 必要가 있다고 본다.¹⁵⁰⁾

세째, “東西獨基本條約”은 第4條에서 兩國의 어느편도 다른편을 國際法으로 代表하거나 다른 편을 위해서 行動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提議”에는 이런 規定이 없다. 이러한 “一方의 他方不代表의 原則”은 國際法으로 두 分斷體의 獨自性을 認定하며 分斷體의 國際法上 國家性을 認定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Hallstein Doctrine”을 拋棄한 것이다.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에도 이런 條項을 設定할 것이냐는 南北韓이 相互 相對方의 國家性을 認定할 것이냐의 問題에 歸着된다. 統一보다는 緊張의 緩和가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을 締結하는 基本的 目標라면 “一方의 他方 不代表의 原則”은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에도 두어야 할 것이다.

네째, “東西獨基本條約” 第6條는 各者의 主權이 領域에 限定된다는 “領域限定의 原則”을 두고 있으나,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에는 이런 規定이 없다. 이는 東獨의 領域은 東獨의 現統治權이 미치는 領域에 限定한다고 한 것으로 이는 領域의 分斷을 肯定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南北韓의 基本立場은 韓半島 全域을 각각 南北韓의 領域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條項은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에는 둘 수 없을 것이나,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締結로 南北韓이 相對方의 國家性을 認定하려 하는 것이라면 이런 條項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南

註 150) 國際聯合憲章은 非加盟國에 대해서 法的 拘束力이 있다는 見解 (H.Kelsen, *op. cit.*, *supra* note 48, pp.106-110; A.Verdros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in *Law and Politics in the World Community*, ed. G.A.Lipsky(L.A.: Univ of California Press, 1953), pp.153-55)에 의하면 이 規定은 無意味한 것으로 된다.

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提議”와 “東西獨基本條約”과의 差異點은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을 締結하게 될 경우 必히 考慮・檢討해야 할 것이다.

라.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方案

(1) 平和條約과의 關係

위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締結은 平和條約과의 關係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方案이 있다.

(i) 平和條約內에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內容을 規定하고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을 別途로 締結하지 않는 方案

(ii) 平和條約과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을 區分하여 兩者를 別途로 締結하는 方案

(i)의 方案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의 問題를 同時에 1個의 條約으로 規定하므로 交渉上の 時間과 努力을 節約하고 번거로움을 避할 수 있고, 平和條約을 韓半島에 關係있는 諸國家 간에 締結하므로써 基本關係協定の 內容도 이들 國家로 부터 保障을 받는다는 利點이 있으나, 基本關係暫定協定은 統一을 前提로 南北韓 간의 關係를 規定하는 것이므로 統一問題에 또다시 外勢를 끌어들이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兩者를 別途로 締結하는 (ii)의 方法이 妥當하다고 본다.

(2)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內容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의 具體的 內容은 “東西獨基本條約”의 內容을 考慮하여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提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修正을 加해야 할 것이다.

(i) 平和條約을 締結한 후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을 締結하면

上記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提議”에 포함되어 있는 第2項 “武力行使 禁止의 原則”은 削除되고, “武力行使 禁止와 不可侵의 原則”을 平和條約에 規定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南北韓 兩 當事者간에 締結될 基本關係暫定協定보다 必然的으로 韓國動亂에 關係있는 諸國家가 南北韓 兩 當事者와 같이 締結하게 될 平和條約으로 “武力行使 禁止와 不可侵의 原則”을 保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ii)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提議” 第4項의 “休戰體制의 維持의 原則”은 平和條約이 締結된 후에는 그 意味가 없으므로 이는 削除되어야 한다.

(iii)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 締結提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東西獨基本條約” 第2條에 規定된 “國際聯合憲章 尊重의 原則”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 理由는 “東西獨基本條約과의 比較”에서 이미 說明하였다. 그러나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意味는 半減되고 만다.

(iv)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の 締結提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東西獨基本條約” 第4項에 規定된 “一方의 他方不代表의 原則”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東西獨基本條約과의 比較”에서 論及하였다.

(v)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 締結提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東西獨基本條約” 第6條에 規定되어 있는 “領域限定의 原則”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 理由는 “東西獨基本條約과의 比較”에서 이미 說明하였다.

Ⅲ. 韓半島의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案

1.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

가. 序 說

韓半島의 休戰體制가 平和條約의 締結로 終了되고 平和體制로 代替되게 된다 할지라도 思想·理念·體制를 달리한 南北 間의 民族和合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美軍이 撤收하게 되면 언제 北韓의 奇襲的인 南侵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平和條約에 의하여 일단 定着된 平和를 維持·保障하기 위해 南北韓 間의 武力衝突을 避할 수 있게 하는 緩衝地帶로서 非武裝地帶를 設定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國際的으로 保障하기 위해 國際的 監視制度를 導入할 것을 考慮해야한다.¹⁵¹⁾

“Brooking 研究所”(The Brooking Institution)는 美軍 撤收後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制度의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提議한 바 있다.

大韓民國에 新武器를 繼續적으로 大量 供給하는 것보다 北韓의 감정을 보다 적게 자극시키면서, 大韓國民의 安全을 保障하는 또 하나의 方案은, 非武裝地帶를 效果的인 國際監視하에 두는 것이다. 이런 措置는 美軍의 全面 撤收後 北韓의 奇襲的 攻擊의 可能性을 封鎖하게 되어, 大韓民國에게 滿足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美軍 撤收를 內容으로 하는 國際的인 協定에 韓國이 난색을 표명하

註 151) R.N.Clough, et al.,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rms Control*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pp.121-122.

文昌柱, “韓半島平和定着과 外交政策調整의 問題”, 統一政策, 第1卷 第3號, 1975, pp.30-31.

金學俊, *op. cit.*, *supra* note 12, pp.15-16.

는 가장 큰 理由는 韓國에 대한 北韓의 奇襲的 攻擊의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¹⁵²⁾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制度의 導入은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

- (i) 非武裝地帶를 國際的監視下에 둠으로서 北韓의 奇襲的인 攻擊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있다.
- (ii) 非武裝地帶가 緩衝地帶의 役割을 함으로서 南北韓의 接境界에서의 偶發的인 武力衝突을 防止할 수 있으므로 우발적 무력충돌로 인한 全 面戰의 擴大可能性을 豫防할 수 있다.
- (iii) 平和條約 締結 後 南北韓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緩和하고 一國에의 隸屬化를 防止할 수 있다.
- (iv) 非武裝地帶를 平和的으로 利用할 수 있게 된다.

나. 非武裝地帶의 先例

많은 平和條約에서 그 平和條約을 締結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戰爭의 挑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非武裝地帶를 設定해 왔다. 그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1856年 3月 30日의 Paris 平和條約과 Aaland 島

Aaland 島는 Bothnia 入口에 位置하여 Finland 와 Sweden 間의 橋梁을 이루고 있는 섬이다. 이 Aaland 島와 Sweden 海岸사이에 航海可能한 깊은 海峽이 位置하고 있으며, 이는 Sweden 의 首都에 密接해 있다.

1856年 3月 30日 Paris 會議의 結果 Aaland 島는 非武裝地帶化되게 되어 英國과 佛蘭西를 一方으로 하고 Russia 를 他方으로 하는 協約이

註 152) *Ibid.*

締結되었다. 同協約 第1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Russia, 英國과 佛蘭西는 Aaland 島가 要塞化될 수 없고, 또 거기에 어떠한 軍事基地나 혹은 海軍基地 (military or Naval base)를 維持하거나 設定할 수 없다는 것을 宣言한다.¹⁵³⁾

同協約은 英國, 佛蘭西, Austria, Prussia, Russia, Sardinia 間に 同日에 署名된 一般平和條約의 附錄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Crimea 戰爭을 終了시킨 7個國 平和條約의 一部로 構成한다.¹⁵⁴⁾

(2) 1923年 11月 24日의 Lausanne 條約과 Mytilene, Chios, Samos 및 Nikaria 島

1923年 7月 24日 聯合軍과 Turkey 軍 間に 締結된 “Lausanne 條約” (Treaty of Lausanne) 第12條는 Aegean 海의 政治的 地位에 關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이를 非武裝化하는 規定을 두었다. 同條約 條13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平和의 維持라는 觀點에서 Greek 政府는 Mytilene, Samos 및 Nikaria 島에 대한 아래의 制限을 遵守할 것을 確約한다.

1. 上記 諸島에 對한 海軍基地와 要塞가 建設될 수 없다.
2. Greek 軍航空機는 Anatolian 海岸의 領土 위를 飛行하는것이 禁止된다. 相互적으로 Turkey 政府는 그의 軍航空機를 上記 諸島의 上空을 飛行하는 것은 禁止한다.¹⁵⁵⁾

註 153) M.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2 (Washington D.C.: U.S.G.P.O., 1963), p.1202.

154) M.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1 (Washington D.C.: U.S.G.P.O., 1963), p.624.

155) M.M. Whiteman, *op. cit.*, *supra* note 154, p.1206.

1947年 2月 10日 Paris에서 署名된 “對伊平和條約”(Peace Treaty With Italy) 第14條는 “이들 諸島는 非武裝地帶로 남겨둔다.”라고 規定하고 있다.¹⁵⁶⁾

(3) 1947年 2月 10日의 對伊平和條約과 伊太利·Yugoslavia 國境地帶
1947年 2月 10日 Paris에서 署名된 “對伊平和條約”(The Treaty of Peace With Italy) 第41條는 伊太利와 Yugoslavia 間의 國境地帶를 非武裝地帶로 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a) Italy Yugoslavia 國境에 따르는 永久的인 Italy의 要塞와 軍事施設과 이들 要塞와 軍事施設의 武器는 破壞되거나 移轉되어야 한다.

(b) 上記 要塞와 軍事施設은 集團的이거나 個別的이거나를 不問하고 砲兵과 步兵의 要素만을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¹⁵⁷⁾

또한 同 平和條約 第42條는 Pantelaria, Pelagian 島 및 Pianosa를 非武裝地帶化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¹⁵⁸⁾

(4) 1947年 2月 10日의 對伊平和條約과 伊太利·佛蘭西 國境地帶
1947年 2月 10日 Paris에서 署名된 “對伊太利平和條約”(The Treaty of Peace With Italy) 第40條는 第1項에서 伊太利와 佛蘭西의 國境地帶의 要塞와 軍事施設의 破壞와 移轉에 關係 規定하고, 同條 第2項에서 伊太利와 佛蘭西 國境地帶에 어떠한 要塞와 軍事施設의 再建設도 禁止한다고 規定하고, 第3項 (a)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註 156) *Ibid.*, p.1207.

157) M.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3 (Washington D.C.: U.S.G.P.O., 1964), pp.66-68.

158) *Ibid.*, pp.33-35.

伊太利, 佛蘭西 國境地帶에 있어서 下記 建設은 禁止된다.

佛蘭西領土나 領海에 대해 射擊possible한 武器를 位置시킬 수 있는 永久的인 要塞, 佛蘭西 領土나 領海에 대해 指揮하거나 直接 射擊이 possible한 永久的인 軍事施設, 上記 要塞나 軍事施設에의 使用만을 目的으로 하는 永久的인 補給과 貯藏施設의 設置¹⁵⁹⁾

伊太利와 佛蘭西의 國境地帶의 範圍에 關係서는 同 平和條約 第2條에 規定하고 있다.

(5) 1947年 2月 10日 對 Bulgaria 平和條約과 Greece • Bulgaria 國境地帶

1947年 2月 10日 Paris에서 署名된 “對 Bulgaria 平和條約”(The Treaty of Peace With Bulgaria) 第12條 第1項은 Greece와 Bulgaria 國境地帶의 非武裝地帶에 關係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北 Greece • Bulgaria 國境에 대해 다음과 같은 建設이 禁止된다.

Greece 領土에 대해 射擊possible한 곳에 永久的 要塞를 位置시키는 것, Greece 領土에서 指揮하거나 直接射擊이 possible한 永久的인 軍事施設, 그리고 上記 要塞와 軍事施設에의 使用만을 目的으로 하는 永久的인 補給과 貯藏施設¹⁶⁰⁾

Greece와 Bulgaria의 國境線은 同 平和條約 第1條 附錄 第1에 地圖로 表示되어 있다.¹⁶¹⁾

註 159) *Ibid.*, p.127.

160) *Ibid.*

161) *Ibid.*

(6) 1973年 1月 27日 越南平和條約과 非武裝地帶

1973年 1月 27日 Paris에서 署名된 “越南平和條約”(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第15條는 다음과 같이 非武裝地帶를 尊重한다는 規定을 두고 있다.

(A) 北緯 17도線上的의 두 區域 간의 軍事分界線은 1954年 Geneva會議의 最終宣言 第6項에 規定된 바와같이 단지 暫定的인 것이며 政治的 또는 領土上的의 境界線은 아니다.

(B) 南北越南은 暫定軍事分界線을 中心으로한 非武裝地帶를 尊重한다.¹⁶²⁾

1954年 7月 20日 佛蘭西·英國·蘇聯·中共·北越南·Cambodia·Laos의 7個國當事者 間에 署名된 “Geneva協定”은 (The Final Declaration of the 1954 Geneva Conference) “Geneva會議 最終宣言” “附屬宣言” 및 “越南에 있어서 戰鬥行爲 停止에 관한 宣言”으로 되어있다. “Geneva會議” 最終宣言 第1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暫定的 軍事分界線을 設定하여 越南人民軍은 同 分界線에서 北으로 佛蘭西聯合軍은 南으로 撤收한 다음 再集結한다.

暫定된 軍事分界線은 附屬地圖에 表示된 바와 같다. 同 分界線의 兩側에 5 km이하의 非武裝地帶를 設置하여 이를 戰鬥再開를 가져올것 같은 事件의 發生을 防止하기 爲하여 緩衝地帶로 한다.¹⁶³⁾

註 162)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II, No.2, 1973, p.398.

163) R.A.Falk, *The Vietnam War and International Law*, Vol.1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8), p.543.

(7) 1979年 3月 26日의 Egypt·Israel의 平和條約과 中間 緩衝地帶
1979年 3月 26日 Washington에서 署名된 “Egypt·Israel 平和條約”
(Treaty of Peace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State of
Israel) 第4條는 Egypt와 Israel領土에 制限兵力地帶(Limited Force
Zones)를 附屬書I에 따라 設定한다고 規定하고, 同 附屬書I 第2條에
A地帶(Zone A), B地帶(Zone B), C地帶(Zone C), D地帶(Zone D)
를 設定하고 있다.

A地帶에는 Egypt 1個 機械化 師團, B地帶에는 Egypt 4個 輕武裝
大隊, C地帶에는 國際聯合軍과 Egypt民間警察, D地帶에는 Israel 4個
步兵大隊와 國際聯合 監視團이 配置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 同 附屬書I
의 附錄 第5條에는 “中間緩衝地帶”(Interim Buffer Zone)를 設置하
고 있다.¹⁶⁴⁾

다. 國際監視團의 構成方法

非武裝地帶를 國際적으로 監視하여 平和를 維持하는 國際監視團을 構成
하는 方法은 (i) 國際聯合平和維持軍에 依하는 方法, (ii) 中立國 또는 其
他國家의 軍隊에 依한 方法과 (iii) 國際赤十字委員會에 依한 方法 등이
있다.

(1) 國際聯合平和維持軍

(가) 國際聯合 平和維持軍의 意義

國際聯合 憲章에 “國際聯合軍”(United Nations Forces) 또는
“國際聯合平和維持軍”(United Nations Peace Keeping Forces)이라는 用

註 164)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No.2, 1979, pp.364,380.

語가 없으며, 물론 그 定義規定도 없다.

本來의 國際聯合軍은 憲章 第 42 條의 規定에 의하여 出動되는 兵力을 말한다.

國際聯合은 平和에 對한 威脅, 破壞 및 侵略行爲에 對한 強制措置로서 陸·海·空軍에 의한 軍事措置를 取할 수 있다(憲章 第 42 條). 그러나 國際聯合 자신이 常備軍을 保有하고 있지 못하므로, 憲章은 安全保障理事會가 加盟國과 締結하는 兵力利用에 관한 特別協定에 의해 兵力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하고(第 43 條), 이 兵力의 指揮는 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인 軍事參謀委員會가 擔當하도록 하고 있다(第 47 條). 이와 같이 特別協定에 의해 提供되고, 軍事參謀委員會에 의해 指揮되는 兵力이 本來의 意味의 國際聯合軍이다.¹⁶⁵⁾

憲章 第 43 條의 規定에 따라 特別協定을 締結한 國家가 아직 하나도 없으며, 5 大強國의 分裂로 第 42 條에 의한 強制措置를 취하는 國際聯合軍의 出動은 事實上 不可能하게 되어 있다. 이에 憲章의 運營上 새로운 國際聯合軍을 出動시키는 方案이 模索되어 國際平和維持軍이라는 概念이 形成되게 되었다.

國際聯合維持軍이란 일정한 紛爭地域의 平和維持를 위해 紛爭地域狀況을 관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對立된 交戰者들 中間에 物理적으로 實在함으로써 緊張을 緩和하고 동시에 武力衝突의 재발을 방지하며, 休戰協定 또는 平和條約의 준수를 감시, 보장하고, 特別한 경우에는, 問題된 國家內의 秩序維持를 確保하기 위하여 關係 當事者들의 合意에 依據·編成·出動되

註 165) L.M.Goodrich and A.P.Simons, *The United N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Washington D.C.: The Brooking Institution, 1957), pp.404-405.

는 非武力的 國際聯合軍을 말한다. 그러므로 憲章 第7章에 규정된 集團 安全保障을 위한 國際聯合警察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¹⁶⁶⁾

(나) 國際聯合平和維持軍의 特性

1) 非制裁性

憲章 第42條, 第43條에 의한 國際聯合軍은 國際聯合이라는 集團的 安全保障機構에 의한 制裁를 實行하는 軍隊이다.

그러나 國際聯合平和維持軍은 特定地域의 平和와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關係國家의 要請과 國際聯合의 措置에 의해 編成되는 것으로 그것은 國際聯合에 의한 制裁와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2) 非强制性

國際聯合平和維持軍은 國際聯合의 決定에 따라 編成되지만 參加 當事國의 의사에 반하여 賦課하는 強制行爲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參加國의 同意를 받아 수행하는 合意的으로 編成되는 軍隊이다. 安全保障理事會가 주관하는 경우에도 勸告에 의하며 決定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3) 非變更性

國際聯合平和維持軍은 敵對行爲의 중지, 休戰協定이나 平和條約의 遵守, 確保, 緊張의 緩和 등을 目標로 하는 現狀維持行爲의 遂行을 擔當한다. 따라서 이미 存在하는 政治的 利益의 調整이나 法律的 制度의 修正·變更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다.

4) 非武力行使性

國際聯合維持軍은 일정한 地域을 占領하고 對峙되어 있는 當事者 間에

註 166) I.L.Claude, "The Peace-Keeping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United Nations in Perspective*, ed. E.B. Tompkin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2), p.52.

物理적으로 實在함으로써 緊張을 緩和하고 武力衝突의 재발을 防止한다.
그러므로 正當防衛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原則적으로 武力
을 直接 使用하지 않는다.

5) 非國家性

國際聯合平和維持作戰軍은 參加國家를 代表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聯合을
代表한다. 따라서 이는 參加國에 의해서가 아니라 國際聯合의 機關에 의
해 組織・運營・統制된다. 이것은 總會나 安全保障理事會에 의해 構成되며
보통 總會나 國際聯合事務總長이 任命하는 軍司令官의 指揮아래 여러나라
兵力으로 構成되는 統合司令部를 編成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統合司令部는 總會 또는 安全保障理事會의 補助機關이고, 國際聯合平和維持
作戰은 이 補助機關의 主管하에 遂行되는 것이다.

(다) 國際聯合平和維持軍의 實例

國際聯合平和維持軍이 派遣된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i) 1949년에 Palestine 에 파견된 國際聯合 Palestine 停戰 監視機構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in Palestine)
- (ii) 1949年 Indo・Pakistan 에 파견된 Indo・Pakistan 軍事觀測團 (UN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 (iii) 1956년에 Egypt 에 派遣된 國際聯合非常軍 (UN Emergency Force
I : UNEF - 1)
- (iv) 1958년에 Lebanon 에 파견된 國際聯合 Lebanon 觀測團 (UN Observer
Group in Lebanon)
- (v) 1960년에 Congo 에 派遣된 國際聯合 Congo 作戰軍 (Opération des
Nations Unies Congo : ONUC)

- (vi) 1962 年에 西部 Iran 에 파견된 國際聯合 西部 Iran 觀測 및 安全保障軍 (UN Obsever and Security Forces in West Irian)
- (vii) 1963 年에 Yemen 에 파견된 國際聯合 Yemen 觀測使節團 (UN Yemen Observoation Mission)
- (viii) 1963 年에 Cyprus 에 派遣된 Cyprus 國際聯合平和維持軍 (UN Peace Keeping Force in Cyprus : UNFICYP)
- (ix) 1965 年에 Indo • Pakistan 에 파견된 Indo • Pakistan 觀測使節團 (UN India Pakistan Observation Mission)
- (x) 1965 年에 Dominica 에 파견된 Dominica 共和國 事務總長의 代表使節團 (Missio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in the Dominican Republic)
- (xi) 1973 年에 Egypt • Israel 에 派遣된 國際聯合非常軍 (UN Emergency Force II : UN EF - II)
- (xii) 1974 年에 Colan 高原에 派遣된 國際聯合停戰監視團 (UN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 UN DOF)
- (xiii) 1978 年 Lebanon 에 派遣된 國際聯合監視軍 (UN Interim Force in Lebanon : UNIFIL)
- (xiv) 1979 年の Egypt • Israel 에 파견된 Egypt • Israel 國際聯合停戰監視機構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in Egypt • Israel)

위의 實例 중 代表的인 몇가지 例만을 좀더 詳細히 보기로 한다.

1) 中近東派遣國際聯合非常軍

國際聯合非常軍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 UNEF)은 總會의 決議와 事務總長에 의하여 취하여진 措置에 따라 國際聯合과 加盟國에 의해

設置된 國際聯合平和維持軍이다. 1956年 10月 29日부터 Israel, 英國, 佛蘭西에 의하여 Egypt 領土가 侵犯당하였다. Israel 軍이 Egypt 를 공격하였으나, 國際聯合은 그 當時, 自體의 兵力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平和回復과 侵略을 沮止시킬 수 있는 態勢가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結局, 強大國인 英國과 佛蘭西는 同 地域에 대한 특별한 利害關係와 平和와 安全維持의 責任이 있다는 立場에서 이에 軍事的인 介入을 하게 되었다.¹⁶⁷⁾

1956年 10月 30日 安全保障理事會에서 蘇聯代表는 當事國이 即刻, 停戰할 것과, 撤收를 요구하는 決議案을 제출하였으나, 英國과 佛蘭西의 拒否權 行使로, 同 決議案은 否決되고 말았다. 이에 Yugoslavia 代表는 10月 31日의 安全保障理事會에서 緊急特別總會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는 決議案을 제출하였다. 이 決議案에 따라서 緊急特別總會가 소집되게 되었다.¹⁶⁸⁾

緊急總會는 關係 4個國에 停戰을 命하고, 11月 4日 國際聯合非常軍(UNEF)을 關係國의 同意를 얻어서,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國際聯合非常軍의 任務는 敵對行爲 停止의 確保와 감시에 있으며, 編成은 1949年 이래로, 派遣中의 Palestain 國際聯合休戰監視機構(UNTSO)에서 5大國以外的 10個國에서 選출된 약 6,000여명의 軍隊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紛爭에 특별한 利害關係를 갖는 國家의 軍隊는 제외되었다. 統轄은 國際聯合의 直轄下에 놓이게 되고, 國際聯合非常軍司令官의 지지를 받았다. 經費는 國際聯合의 特別會計에 의해 充當되고, 國際聯合 一般豫算의 分擔率에 의해, 各 加盟國에 할당된 것이다. 同 非常軍經費中, 個個 軍

註 167) R.L.Miller, *Dag Hammarskjold and Crisis Diplomacy* (New York: Oceana, 1961), p.77.

168) *Ibid.*, pp.79-80.

人的 俸給과 裝備는 그 所屬 國家의 政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國際聯合非常軍의 構成員은, 國際性이 강조되어, 同任務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國際的 性格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이 금지되며, 오직 總司令官인 E.L.M Burns 將軍에게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¹⁶⁹⁾

2) Congo 派遣國際聯合軍

1960年 7月 Congo 에 폭동이 발생하자 Belgium 軍은, 歐州人の 生命을 保護하고 秩序를 維持한다는 이름으로 이에 개입하였다. Congo 政府로부터 軍事援助의 要請을 받은 國際聯合事務總長은 7月 13日 緊急安全保障理事會를 소집하였다. 7月 14日 安全保障理事會는 그의 決議로 Congo 共和國政府에 軍事援助를 제공하기 위해 必要한 措置를 취하는 權限을 事務總長에게 부여하였다. 同 決議에 따라 事務總長은 Congo 國際聯合軍 (Opération des Nations Unés or Congo : ONUC)을 編成했다.¹⁷⁰⁾ 그러나 事務廳長의 명확한 任務는 同決議에서 지적되지 않았다. 同 決議는 Belgium 軍隊의 撤收가 요청되어 있으므로 撤收를 돕는 任務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Suez 國際聯合軍의 任務인 敵對行爲의 停止의 確保와 監視의 任務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解釋되었다.

Congo 國際聯合軍은 Suez 事態의 先例에 따라 (i) 安全保障理事會의 5 大國을 제외하고, (ii) 地域的 기타 당면한 분쟁에 특수한 利害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國家를 배제할 것 등을 考慮하여 事務總長은 國際聯合內

註 169) L. Goodrich and G. Rosner, "The U.N.E.F.,"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XI, No. 3, 1957, pp. 425-426.

崔鍾起, 國際聯合軍에 관한 研究 (서울: 韓國國際關係研究所, 1973), pp. 73ff.

170) R. L. Miller, *op. cit.*, *supra* note 167, pp. 266ff.

의 Africa 社會의 連帶性을 고려하여 우선 Africa 諸國으로 부터의 派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地域人으로부터 同 原則의 要件을 具備한 國家의 參加를 요청하였다.

編成은 地上部隊提供 14 個國, 技術·行政要員提供 24 個國, 兵力總數 18,451 名의 軍隊로 이루어졌다.

統轄은 必要한 措置를 취하는 權限을 國際聯合事務總長에 부여한다는 決議에 따라 事務總長에 의한 統轄權이 한층 강화되었다. 經費는 特別計定에 의해 加盟國의 自發的인 釀出에 의존하였다.¹⁷¹⁾

3) Cyprus 派遣國際聯合軍

1963 年 12 月 Greece 系 Cyprus 人과 Turkey 系 Cyprus 人들 사이에 紛爭이 발생하여 國際平和와 安全에 위협을 초래하는 內亂으로 展開되었다.

安全保障理事會는 1964 年 3 月 4 日, Cyprus 平和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事務總長으로 하여금, Cyprus 平和軍을 구성케 하는 동시에 1 名의 調停者를 임명하여 同 內亂을 平和的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權限을 부여했다.

Cyprus 平和軍은 7,000 名으로 構成되고 그중 Cyprus 駐屯 英國軍이 3,500 名, Canada 軍이 1,500 名, Finland 軍이 700 名, 瑞典軍이 700 名, Ireland 軍이 500 名이었다. 그러나 英國軍은 예정의 3 분의 1 규모만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의 하나인 英國이 平和維持軍으로 參與한 것이다. 그 외에 170 名의 民間경찰이 Australia, Aust-

註 171) G. Rosner, *The U.N.E.F*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1), pp. 59ff.

崔鍾起, *op. cit.*, *supra* note 169, pp. 86ff.

ria, Denmark, Sweden 및 Newzealand 등으로부터 파견 되어 治安維持에 협조하였다.

任務는 停戰時에 있어서 충돌의 再發防止 및 감시에 임하는 豫防的 活動을 擔當하는 것이였고, 憲章 本來의 強制措置를 取하는 國際聯合軍과는 다른 것이였다.

編成에 있어서, 5 大國 및 利害關係國의 軍隊는 原則으로 제외되었다. 國際聯合이 統轄權을 가지며, 事務總長이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Cyprus 平和維持軍은 獨立前의 宗主관계에서 英國軍이 주요한 部分을 차지하였으며, Congo 의 경우, Africa 의 흑인國家의 軍隊가 주체가 되었던 것과 다르다.

國際平和軍의 經費는 各國의 自發的인 기부금에 의하였다.¹⁷²⁾

4) 시나이 半島 國際聯合軍

1973年 10月 Arab 側의 先制攻擊에 의해, Arab 諸國과 Israel 間에 戰爭이 재발되었다. 安全保障理事會는 同月 22日, Arab-Israel 兩軍의 現在地停戰, 1967年의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제 242호의 준수, 當事國 間의 직접교섭등을 內容으로 하는 美蘇共同決議案을 採擇하는 同時에, 이미 現地에 주재하는 Palestein 停戰監視委員團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措置後에도 事態는 平정되지 않고, 美·蘇의 對決의 위기가 높아져 非同盟系理事國 8個國 代表의 主張에 따라 25日의 安全保障理事會에서 5大國의 軍隊를 제외하고 構成되는 제 2차 國際聯合非常軍의 現地 派遣을 決議했다. 緊急을 요하므로, Cyprus 派遣國際聯合 平和維持軍에서, Austria, Finland,

註 172) D.W.Bowett, *United Nations Forces* (London: Stevens, 1964), p.552.
F.Seyersted, "United Nations Forces: Some Legal Problems",
B.Y.I.L., Vol.37, 1961, pp.80ff.

Sweden의 3個部隊가 分遣되었고, 5大國을 包含하지 않는 동구권의 Poland를 包含한 9個國이 파병한 7,000명의 兵力으로 편성되었다.

國際聯合非常軍의 任務는 停戰의 감시와 同年 10月 22日의 線에서 兩軍의 撤退의 確認, 戰鬥再發防止를 위한 活動, 人道的 事業에서의 赤十字社와의 協力, 休戰監視 등을 그 임무로 하였다.

統轄은 國際聯合下에 두고 事務總長의 安全保障理事會에 의한 授權下에 스스로 統轄의 責任을 지고, 實際적인 軍의 指揮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事務總長이 임명하는 國際聯合非常軍司令官에 의해 집행된다. 經費는 特別會計에 의하여 充당되었다.¹⁷³⁾

5) Lebanon 파견 國際聯合 臨時軍

1978年 Israel이 南部 Lebanon에 개입하자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는 決議 第425號를 採擇하여, Lebanon 파견 國際聯合 臨時軍을 創設하였다.

그 任務는 Israel 군 철수를 確認하고 Lebanon 主權을 回復시키는 것이었다.

軍隊編成은 佛蘭西가 Lebanon의 요청으로 6,000 중 1/5을 파견하였고, 나머지는 여러나라 군대로 구성하였다.

(2) 中立國 기타 國家의 軍隊

1954年의 “越南休戰協定”(Agreement Relating to the Situation in Viet-Nam) 第34條는 越南에서의 敵對行爲에 관한 協定條項의 適用의 管理

註 173) H.K. Jacobson, *Networks of Interdependence* (New York: Knopf, 1979), p.199.

S.D. Baitey, “Nonmilitary Areas in U.N. Practice”, *A.J.I.L.*, Vol.74, 1980, pp.517ff.

와 監視를 爲하여 國際委員會 (International Commission) 를 設置했다. 同 委員會는 Canada., India , Poland 代表로 構成되었다.¹⁷⁴⁾

1962 年の “ Laos 의 中立에 관한 宣言에 대한 議定書 ” (Protocol to the Declaration on the Neutrality of Laos) 第 9 條 이하에는 外國軍의 撤收, 休戰의 監視와 統制 등의 任務를 지닌 “ 國際委員會 (International Commission) 에 관해 規定하고 있으며, 同 委員會는 Canada, India, Poland 의 代表로 構成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第 1 條 b) .¹⁷⁵⁾

(3) 國際赤十字 委員會

1949 年の “ 民間人 保護에 관한 Geneva 協約 ” (Geneva Convention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1949) 은 第 15 條에서 衝突當事國은 中立國 또는 人道的인 機構를 통하여 “ 中立地域 ” (neutralized zone) 을 設定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1977 年の “ Geneva 協約附加議定書 I ” (Protocol Addition to the Geneva Conventions I) 第 60 條도 當事者는 “ 非武裝 地帶 ” (demilitarited Zone) 를 設定할 수 있음을 規定하고 있다.¹⁷⁶⁾

1936 年に Madrid 와 1937 年に 上海에 安全地帶 (safety zone) 가 設置된 바 있으며, 이의 模型을 따라 1948 年に “ 國際赤十字 委員會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 의 提議로 Jerusalem 에 3 個의 非武裝地帶가 設置된 바 있다.¹⁷⁷⁾ 國際赤十字 委員會의 兩當事者에 대한 提議에 대해 Arab 當局은 5 月 9 日에, Israel 當局은 5

註 174) R.A.Falk, *op. cit.*, *supra* note 163, p.553.

175) *Ibid.*, p.568.

17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 1977, p.1391.

177) S.D.Baitey, *op. cit.*, *supra* note 173, pp.502-503.

月 17日에 이를 受諾하였으며, 3個의 非武裝地帶는 赤十字標識로 明白히 表示되었다. 事實上 當局에 의해 同 地帶에 대한 民事行政(civil administration)이 行해졌으며 國際赤十字 委員會는 同 非武裝地帶의 地位를 監督했다.¹⁷⁸⁾

라.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 方案

(1) 非武裝地帶의 設置

南北 間에 非武裝地帶를 設置하는 方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i) 休戰協定에 의한 現非武裝地帶를 그대로 利用하는 方案

(ii) 38線을 分界線으로 하여 兩側에 非武裝地帶를 設置하는 方案

(i)의 方案은 現狀維持의 方案이며, (ii)의 方案은 1950年 6月 25日 以前의 狀態로 復歸하는 方案이다. 平和條約의 交渉에 따라 南北의 分界線이 그어질 것이나, 休戰協定에 의한 現分界線이 33年間 南北을 分界해 온 凝滯된 現實을 尊重하고 38線으로의 調整이 南北 雙方에 特別한 利益을 주는 바 없고, 또 調整에 뒤따르는 번거러움을 考慮할 때 (i)의 方案이 合理的이라고 본다.

非武裝地帶의 幅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方案이 있을 수 있다.

(i) 休戰協定에 의한 現在의 幅 4 km를 그대로 繼續하는 方案

(ii) 現在의 幅을 20 km로 擴大하는 方案

休戰協定締結 當時 共產側은 分界線 雙方으로 각기 10 km를, 國際聯合軍側은 北側으로만 20 km를 提議한 바 있다.¹⁷⁹⁾ 4 km는 南北韓의 安全을

註 178) *Ibid.*, p.503.

179) *Ibid.*, p.516.

保障하기에는 다소 狹小하므로 이를 南北 각각 10 km로 擴張하는 것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2) 國際的 監視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는 上述한 先例와 같이 다음과 같은 3個의 方案이 있을 수 있다.

(i) 國際聯合平和維持軍에 의한 方案

- ① 1954年의 Geneva 政治會談의 당사국으로 構成하는 方法
- ② 모든 희망국으로 構成하는 方法
- ③ Asia 中小國으로 構成하는 方法
- ④ 休戰協定上 中立國 監視委員團의 所屬國으로 構成하는 方法

(ii) 第3國의 軍隊에 의한 方案

- ① 美·蘇·中共·日의 4強에 의한 方法
- ② Asia의 中小國家에 의한 方法
- ③ 休戰協定上 中立國 監視委員團 構成國인 Swizerland · Sweden · Poland · Czechoslovakia에 의한 方法

- ④ ①과 ③을 混合한 方法

(iii) 國際赤十字 委員會에 의한 方案

上記 3個方案중 (iii)의 方案은 理想的이고 또 實現性도 있다는 長點이 있으나, 事實上 非武裝地帶의 監視機能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南北間에 位置하는 그의 物理的 實在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i)(ii)의 方案만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Brooking 研究所”는 (ii)의 ①의 方案을 最善의 方案으로, (ii)의 ②의 方案을 次善의 方案으로 採擇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提議한 바 있다.

理論적으로는 強大國의 군대에 의한 非武裝地帶 監視가 可能할 것이다. 中共과 蘇聯의 군대가 동시에 순찰대에 편입되는 것이나, 憲法上 또는 政治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日本自衛隊의 參加는 지극히 어려운 問題이겠지만, 한반도에서의 平和維持에 대해 4強의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利益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히 어려운 障礙가 있다는 이유로 그 可能性을 일축해서는 안된다. 만일 強大國의 군대에 의한 직접 參加가 非現實的이라는 것이 명백해질 경우, 一國 또는 다른 復數國家가 감시부대를 제공하는 것에 4強과 南北韓이 동의하는 것은 次善의 方法이 될 것이다. Srilanka 나 Indonesia , Malaysia 등 아시아의 中小諸國軍隊가 적 임일지도 모른다.¹⁸⁰⁾

그러면서도 “Brooking 研究所”는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면 (i)의 方法도 可能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排除하고 있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提議했다.

最近의 경향은 韓半島에서 國際聯合을 分離시키려는 것으로 보이 나 國際聯合이 후원하는 存在는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國際聯合은 1973年 가을 總會에서 國際聯合韓國統一復興委員團(UNCURK)의 解體를 決定한 바있고, 駐韓 國際聯合軍司令部의 廢止를 요구하는 壓力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만일 國際聯合이 非武裝地帶의 平和維持任務를 맡게 된다면, 그 任務는 전혀 새로운 기반에 입각한 것이 된다. 즉 北韓과 그 同盟國으로부터 비난 받은 과거의

註 180) R.N.Clough, *op. cit.*, *supra* note 151, pp.122-23.

활동과는 전혀 異質的인 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南北韓의 國際聯合加入이 실현된 후에만 可能하게 될 것이다.¹⁸¹⁾

檢討컨대, (ii)의 方案 특히 ①의 方案은 非武裝地帶의 監視를 嚴格히 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으나, 韓半島가 外勢의 角逐場이 되기 쉽고 또 4強에 의한 韓半島의 從屬을 自招하는 結果를 가져올 念慮가 크므로 이 方案은 適切한 것이 못된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i)의 ③의 方案을 提議해 본다.

첫째, 國際聯合의 힘으로 監視를 철저히 할 수 있다.

둘째, 上記 (ii)의 ①의 短點인 韓半島가 4強의 角逐場이 되는 것을 막고, 韓半島가 4強의 從屬化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韓半島의 安保·統一問題를 國際聯合에서 處理할 수 있다.

넷째, 아세아地域의 連帶性을 살릴 수 있다.

다섯째, 一般的 集團安全保障機構인 國際聯合의 이름으로 監視의 名分을 살릴 수 있다.

2. 相互不可侵의 國際的 保障

가. 序 說

韓半島의 平和가 南北韓交叉承認·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南北韓基本關係 暫定協定締結·平和條約締結 등에 의해 일단 定着되었다 할지라도, 定着된 平和의 現狀을 維持·保障하기 위해서는 그 方法의 하나로 南北韓相互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또 이 不可侵條約의 實效性을 保障할 수 있는 方

註 181) *Ibid.*

法을 講究해야 한다!¹⁸²⁾

一般的으로 條約의 實效性은 (i) 條約의 解釋・適用上 發生하는 紛爭을 平和的으로 處理하도록 하는 紛爭解決 節次를 그 條約 自體에 規定하므로서, 또 (ii) 他方이 條約을 違反할 경우 그 條約上의 規定이 없어도 그 違反이 重大한 違反인 경우 一方이 條約을 廢棄할 수 있는 一般國際法 上의 原則에 의해 保障된다!¹⁸³⁾

그러나 不可侵條約은 그 性質上 이러한 條約의 一般的 保障方法으로는 그 實效性을 保障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不可侵條約의 特別한 保障方法으로 第三者에 의한 保障條約의 締結과 같은 方法이 考慮되어야 한다.

이 點에 관해 “Brooking 研究所”는 다음과 같은 4 大國 協定の 締結을 提議한 바 있다.

韓半島에서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國際協定の 形態는 南北韓 兩 政府 간의 基本協定일 것이다. 4 大國은 이 協定을 지지하고 韓半島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관해 상호 責任을 진다고 宣言해야 할 것이다!¹⁸⁴⁾

註 182) *Ibid.*, pp.110-111.

M.P.Srivastava, *The Korean Conflict* (New Delhi : Prentice Hall of India, 1982), p.105.

G.K.Kindermann, “Hypotheses Concerning R.O.K.Policy towards North Korea”, *Kored Journal*, Vol.11, No.11, 1971, p.14.

閔丙天, “南北韓相互不可侵協定の 理論에 관한 考察”, 統一政策 第3卷 第1號, 1977, pp.60-61.

白忠鉉, “法的側面에서 본 南北韓關係의 不可侵協定の 意義”, 統一政策, 第3卷 第1號, 1977, pp.81-82.

18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aties, Art.60.

184) R.N.Clough, *op. cit.*, *supra* note 151, pp.107-108.

不可侵條約의 締結과 그의 國際的 保障은 다음과 같은 利點을 提供해 준다.

(i) 南北韓相互 間에 不可侵을 約束하므로서 相互武力 侵略을 抑制할 수 있다.

(ii) 南北韓相互不可侵條約을 國際적으로 保障하는 方法을 導入하므로서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國際적으로 保障할 수 있다.

(iii) 韓半島의 不可侵을 多數國家에 의해 保障받으므로서 南北韓이 각기 1個의 國家에 隸屬化되는 것을 防止할 수 있다.

(iv) 相互不可侵을 約束하므로서 相互軍備競爭을 포기하고 南北韓의 産業化・福祉化를 이룰 수 있다.

(v) 相互不可侵을 約束하므로서 大國에 의한 南北韓의 武器增強壓力을 弱화시킬 수 있다.

(vi) 相互侵略을 포기하므로서 相互信賴를 回復하여 民族和合을 이룩하고 自主的 統一의 霧圍氣를 造成해 나갈 수 있다.

나. 不可侵條約의 意義와 特色

(1) 不可侵의 意義

不可侵條約(non-aggression treaties)이란 國家와 國家 間에 相互平和를 위하여 軍事的 侵略을 하지 않을 것을 約束하고 領土의 保全을 規定하는 條約을 말한다.

同盟條約을 第3國에 대해 對抗的 意味를 갖는 것이나, 不可侵條約은 締結國相互間에 侵略을 하지 않을 義務를 負擔하는 條約이다. 그 內容은 不可侵條約에 따라 다르나 大體로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構成된다. 즉 領土의 不可侵, 仲裁裁判, 戰爭의 拋棄, 內政의 不干涉, 平和의 共存 등이다.

(2) 不可侵條約의 特色

不可侵條約은 一般的으로 平和條約에 比해 다음과 같은 性格上的 特色을 갖고 있다.

가) 平和狀態前提

不可侵條約의 目的이 戰爭의 豫防에 있다면 平和條約의 目的은 戰爭結果에 대한 事後處理에 있다. 그러므로 不可侵은 戰爭狀態前 즉 平時狀態에서 締結되나, 平和條約은 戰爭狀態를 終結하는 手段의 性格을 가지므로 戰爭狀態에서 締結된다.

나) 接境前提

戰爭과 被侵의 危險은 境界를 같이 하고 있는 國家 間에 發生하기 때문에 통상 不可侵條約은 直接的으로 境界를 接하고 있거나 勢力圈을 接하고 있는 國家 間에 締結되지만, 平和條約은 接境하지 않는 國家 間에도 交戰當事者일 때에는 締結된다.

다) 既存事實狀態確認

不可侵條約은 現存秩序의 바탕 위에서 侵略을 豫防하는 事前措置이기 때문에 既存의 領土的·政治的·軍事的 狀態 등의 既存事實狀態를 確認·宣言한다. 이에 反하여 平和條約은 戰後處理問題까지도 規制해야 하기 때문에 戰後の 國際秩序를 새로이 形成하기 위한 基盤이 되며 領土的·政治的 새로운 狀態를 形成·創設한다.

다. 不可侵條約의 先例

(1) 1919年 以前の 不可侵條約

(가) 1839年의 Guatemala와 Salvador 간의 平和條約

1839年 7月 4日의 “Guatemala와 Salvador 간의 平和·友好條約”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Guatemala and Salvador) 第3條는 不可侵에 關係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어떤 原因으로도 當事國은 어떤 理由로도 相互對接하여 戰爭을 宣言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積極的인 敵對行爲도 하지 않을 것을 當事國은 合意한다. . . .

當事國은 共同的으로 他國家를 調停者로서 任命하여야 한다.¹⁸⁵⁾

이와 類似한 規定들이 1839年 7月 24日의 Guatemala와 Nicaragua 간의 條約, 1857年 6月 20日의 Chile와 Costa Rica 간의 條約, 1878年 3月 31日의 Honduras와 Salvador 간의 條約, 1883年 12月 27日의 Guatemala와 Nicaragua 간의 條約, 1895年 1月 19日의 Honduras와 Salvador 간의 條約 등에 포함되어 있다.¹⁸⁶⁾

(나) 1885年의 Argentina와 Chile 간의 平和條約

1855年 8月 30日의 “Argentina와 Chile 간의 平和・友好・通商・般海條約”(Treaty of Peace,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Argentina and Chile) 第39條는 다음과 같이 不可侵을 約束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 . . 그리고 當事國은 境界問題에 關係 惹起되거나 앞으로 惹起될 諸問題를 暴力的인 手段에 호소함이 없이 平和的이고 改善的으로 檢討하기 위하여 問題를 留保할 것에 合意한다. 그리고 完全한 解決이 到達되지 않을 경우 友好國家의 仲裁의 決

185) A. J. I. L., Vol. 33, Supp., p. 858.

186) *Ibid.*

定에 맞길 것에 合意한다.¹⁸⁷⁾

(다) 1856 年の Guatemala 와 Honduras 간의 平和條約

이 1856 年 2 月 13 日의 “Guatemala 와 Honduras 간의 平和・友好條約”(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Guatemala and Honduras) 第 10 條는 다음과 같이 不可侵에 관해 規定하고 있다.

• • • 相互對峙하여 戰爭에 呼訴하지 않고, 또 相互對峙하여 領土內에서 어떠한 敵對作戰을 하지 않을 永久的인 規則을 樹立한다. • • •

어떤 差異點이 생긴 경우 당사국은 相互 적절한 解明을 해야 한다. 만일 合意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友好國家의 政府의 仲裁에 의뢰해야 한다.¹⁸⁸⁾

이와 類似한 規定들이 1876 年 2 月 28 日의 Costa Rica,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Solrador 간의 條約, 1883 年 8 月 27 日의 Salvador 와 Venezuela 간의 條約 등에 포함되어 있다.¹⁸⁹⁾

(라) 1856 年の Ecuador 와 New Granada 간의 友好條約 등

1856 年 7 月 9 日의 “Ecuador 와 New Granada 간의 友好・通商・般海條約”(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Ecuador and New Granada) 第 3 條, 1855 年 4 月 1 日의 “Peru 와 Venezuela 간의 友好・通商・般海條約”(Treaty of Friendship, Comercial and Navigation, Pe-

註 187) *Ibid.*, p.859.

188) *Ibid.*

189) *Ibid.*

ru and Venezuela) 第3條 등도 不可侵에 관해 規定을 두고 있다.¹⁹⁰⁾

(2) 1919年 이후의 不可侵條約

(가) 國際聯盟規約

“國際聯盟規約”(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도 一種의 不可侵條約이라고 할 수 있다.

國際聯盟條約은 모든 加盟國의 領土保全 및 政治的 獨立을 尊重하고 外部의 侵略에 대하여 加盟國은 이를 擊退하도록 하였고(第10條), 어떠한 加盟國에 대한 戰爭이나 戰爭危險도 이를 全體加盟國에 대한 것으로 看做하여 處理할 것을 規定하였다(第11條). 國交를 斷切할 우려가 있는 紛爭은 戰爭手段이 아닌 司法的 手段에 의존하도록 規定하고(第13條), 聯盟은 平和的 解決을 勸告하게 되어 있을뿐 직접 聯盟自身이 武力手段을 行使함으로써 平和를 유지하는 積極적 規定을 하지 않고 있다.

(나) 1923年의 美州 國家 간의 衝突回避·防止條約

1923年 5月 3日의 “美州 國家 간의 衝突回避·防止條約”(Treaty to Avoid or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 American States) 第1條는 다음과 같이 不可侵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 • • 締結當事者는 紛爭發生의 경우, 他當事者의 國境에 部隊의 移動이나 集結을 開始하지 않고, 어떠한 敵對行爲나 敵對行爲를 위한 準備(any hostile acts or preparations for hostilities)를 하지 않을 것을 確約한다. • • •¹⁹¹⁾

註 190) *Ibid.*

191) *Ibid.*, pp.862-863.

이 條約은 1938年 11月에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Cuba, Dominica 共和國,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ait, Honduras,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美國, Uruguay, Venezuela 에 의해 批准되었다!¹⁹²⁾

(다) 1924年의 獨逸과 Sweden 간의 仲裁·調停協約

1924年 8月 29日의 “獨逸과 Sweden 간의 仲裁·調停協約”(Convention of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between Germany and Sweden) 第23條는 다음과 같이 不可侵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 · · 當事者는 調停節次가 進行 중에 常設調停委員會의 提議를 受諾하기 위해 常設調停委員會에서 定해진 時間限界의 滿 3時까지 어떤 種類의 強制的인 措置(forcible measures)에 呼 訴하는 것을 참가하여야 한다!¹⁹³⁾

이와 類似한 規定들이 1925年 3月 14日의 獨逸과 Finland 간의 條約, 1926年 5月 20日의 獨逸과 Netherlands 간의 條約 등에 포함 되어 있다!¹⁹⁴⁾

(라) 1924年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에 관한 Geneva 議定書

1924年 10月 2日의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에 관한 Geneva 議定書”(Geneva Protocol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는 “侵略戰爭은 이 共同責任의 違反을 이루고, 國際犯罪를 이룬다고 確約”하고,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註 192) *Ibid.*

193) *Ibid.*, p.867.

194) *Ibid.*

署名諸當事國은 다른 國家에 대해 侵略의 威脅을 이르는
(constitute a threat of aggression against another state) 어떠한
行爲도 참가할 것을 約束한다.¹⁹⁵⁾

그러나 이 議定書는 效力을 發生하지 못하고 말았다.¹⁹⁶⁾

(마) 1925年의 Locarno 條約

1925年 10月 16日의 “獨逸, Belgium 불란서, 美國, 伊太利간의 相互保障條約” (Treaty of Mutual Guarantee Between Germany, Belgium France, Great Britain and Italy)은 一般的으로 “Locarno 條約”이라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는 不可侵條約의 代表的 예의 하나이다.

1924年의 “Geneva 議定書”에 대해 英國은 美國이 同 議定書의 當事者가 되지 않는 限 同 議定書에 規定된 制裁上의 義務를 受諾하지 않겠다고 拒絕했다.¹⁹⁷⁾ 英國은 無限한 世界的 規模의 이런 種類의 一般的 規定보다 直接關係國에 의한 地域的 協定 (regional agreement)을 締結할 것을 提議했다. 이러한 英國의 提議에 따라 國際聯盟의 周旋으로 Locarno에서 諸條約의 締結交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⁹⁸⁾ Locarno에서 締結된 條約의 하나가 “獨逸・Belgium・불란서・英國・伊太利 간의 相互保障條約”이다. 이 條約에서 5個國은 獨逸・Belgium간, 獨逸・佛蘭西

註 195) *Ibid.*, p.863.

196) *Ibid.*

197) G.A.Finch, “A Pact of Non-Appression”, *A.J.I.L.*, Vol.27, 1933, pp.728-729.

198) *Ibid.*

J.Stone, *Aggression and World Order* (Berkeley : California Univ., 1958), p.30.

간의 國境을 維持할 것을 保障한 것이다.¹⁹⁹⁾

同 條約 第2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獨逸과 Belgium, 그리고 獨逸과 佛蘭西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相對方을 攻擊하거나 侵入 또는 戰爭에 呼訴하지 않을 것을 相互約束한다.

그러나 이 規定은 다음의 경우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 (1) 合法的인 防衛權의 行使 . . .
- (2) 國際聯盟規約 第16條에 따른 行動
- (3) 國際聯盟總會 또는 理事會에 의해 取해진 決定의 結果로서 또는 最初로 攻擊을 한 國家에 대해 取해지는 行動을 規定한 國際聯盟規約 第15條 第7項에 따라 取한 行動²⁰⁰⁾

同 “Locarno 條約”은 獨逸이 1935년에 非武裝地帶인 Rheinland를 侵攻하고, 1941년에 Belgium과 佛蘭西를 侵攻하므로서 破棄되고 말았다.²⁰¹⁾

(바) 1926년의 Persia와 Turkey 간의 不可侵條約 등

1926年 4月 22日의 “Persia와 Turkey 간의 不可侵條約”(Treaty of Friendship and Non-Aggression Between Persia and Turkey) 第3條,²⁰²⁾

1926年 8月 31日의 “Afghanistan과 蘇聯 간의 中立·不可侵條約”(Treaty of Neutrality and Non-Aggression Between Afghanistan and U.S.

S.R) 第2條,²⁰³⁾ 1932年 2月 5日의 “蘇聯과 Latvid 간의 不可侵條

註 199) G.A.Finch, *op. cit.*, *supra* note 197, pp.728-729.

200) A.J.I.L., Vol.33, Supp., pp.863-864.

201) *Ibid.*

202) *Ibid.*, p.869.

203) *Ibid.*

約”(Treaty of Non-Aggression Between U. S. S. R and Latvid) 第1條,²⁰⁴⁾ 1932年의 “蘇聯과 Finland 간의 不可侵, 紛爭의 平和的 解決條約”(Treaty of Non-Aggression and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U. S. S. R and Finland) 第1條²⁰⁵⁾ 1934年 1月 26日의 “獨逸과 Poland 간의 不可侵條約”(Treaty of Non-Aggression between Gremara and Poland), 1936年 8月 22日의 “獨逸·蘇聯 간의 不可侵協定”(Treaty of Non-Aggression between Germany and U. S. S. R) 第1條 등도 不可侵에 관한 規定을 각각 두고 있다.

(3) 西獨의 東歐諸國과의 不可侵條約

第2次大戰 後 西獨이 蘇聯, Poland, Czecho 등과 締結한 對東歐不可侵條約은 一般的으로 慣行되어온 不可侵條約과는 달리 一般基本條約에 國境線의 不可侵과 領土의 不可侵 및 保全의 條項을 包含하고 있다. 이들 條約은 侵略行爲를 참가한다는 文句는 없으나 本質的으로는 不可侵條約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當事國이 處한 狀況과 與件에서 그들의 利益을 最大로 保障하기 위하여 締結된 條約들이다.

(가) 1970年의 西獨과 蘇聯 간의 條約

1970年 8月 12日에 締結된 “西獨과 蘇聯 간의 條約”(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Soviet Union)은 西獨의 입장에서 볼 때 東·西獨 간의 緊張緩和와 東獨과의 國交正常化는 東獨의 宗主國이라 할 수 있는 蘇聯과의 不可侵協定締結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蘇聯으로 볼 때는 中·蘇紛爭때문에 東方國境에서

註 204) *Ibid.*, p.870.

205) *Ibid.*

의 戰爭危險이 증가하고 있어 西方戰線의 安定을 期하기 위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條約締結時 獨逸의 永久分斷을 가져오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對蘇附屬覺書에서 西獨은 “이 條約이 自由로운 自決에 의한 獨逸民族의 再統一을 指向하는 西獨政府의 政治目標과 矛盾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宣言하였다.

同 條約 第2條는 兩國 間의 關係뿐만 아니라 歐州의 安全과 國際的인 安全保障問題에 있어서 國際聯合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하며 모든 紛爭을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하고 國際聯合憲章 第2條에 따라 武力의 危脅이나 武力의 行使를 拋棄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第3條는 獨逸과 蘇聯의 領土에 관한 직접적인 規定은 없으나 現在의 國境線에 따른 歐州의 모든 國家의 領土的 保全을 遵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²⁰⁶⁾

西獨은 이 條約의 締結로 蘇聯의 敵國이 아니게 되어 國際聯合에 加入할 수 있게 되었다.²⁰⁷⁾

(나) 1970 年의 西獨과 Poland 間의 相互關係 正常化條約

1970 年 12 月 7 日의 “西獨과 Poland 間의 相互關係 正常化條約” (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Poland Concerning the Bases for the Normalization of their Relations) 은 西獨과 Poland 사이를 正常化하며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基本條約의 性格을 띠고 있는데 兩國 間의 문제가 되었던 Oder - Neisse 의 國境線을 西獨으로 하여금 認定케 하고 이를 中心으로 하는 國境線의 不可侵을 相互간에 合意하였다.

同 條約 第1條는 國境을 劃定하고, 第2條는 國際聯合憲章遵守와 武力不

註 206) J.A.S. Grenville, *op. cit.*, *supra* note 120, p.294.

207) 國際聯合 憲章 第53條 및 第107條의 敵國條項의 適用이 排除된다.

行使를 규정하고, 第3條는 兩國 間의 關係正常化와 全面的인 發展을 위하여 계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⁰⁸⁾

(다) 1973년의 西獨과 Czecho 간의 相互關係에 관한 條約

1973年 12月 11日에 締結된 “西獨과 Czecho 간의 相互關係에 관한 條約” (Treaty on Mutual Relation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Czechoslovakia)도 대체로 上記 2個條約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第1條는 1938年 9月 29日의 “Munchen” 協定の 無效를 認定하고, 第2條는 獨逸 占領下에 있는 Czecho 人의 法的 地位에 관해서 규정하고, 第3條는 國際聯合憲章의 遵守와 武力의 不行使를 규정하고, 第4條에서는 國境線의 不可侵, 그리고 第5條는 兩國 間의 關係改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⁰⁹⁾

(4) 越南平和條約과 Egypt · Israel 平和條約

(가) 1973년의 越南平和條約

1973年 1月 27日의 “越南平和條約”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第1條는 다음과 같이 不可侵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美國과 다른 모든 國家는 越南에 관한 1954年 Geneva 協定에 의해 認定된 越南의 獨立·主權·單一性 및 領土保全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un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을 尊重한다.²¹⁰⁾

註 208) J.A.S. Grenville, *op. cit.*, *supra* note 120, pp.294-295.

209) *Ibid.*, p.531.

210) R.A.Falk, *op. cit.*, *supra* note 163, p.543.

(나) Egypt · Israel 의 平和條約

1979年 3月 26日의 “Egypt · Israel 간의 平和條約”(Treaty of Peace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State of Israel) 第2條는 領土의 不可侵에 關係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當事者는 이 境界를 不可侵의 것으로 承認한다. 各當事者는 그들의 領海와 領空을 포함하여 他方의 領土保全을 尊重한다.²¹¹⁾

라. 不可侵條約의 保障方法

不可侵條約의 保障方法으로는 다음과 같은 類型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i) 첫째 “同盟條約型”이다. 이는 不可侵條約의 當事國이 각기 友邦과 同盟條約을 締結하여 被侵時 “集團的인 自衛權”을 行使하는 類型이다.
- (ii) 둘째 “地域的 安全保障型”이다. 이는 不可侵條約의 當事國을 포함하는 地域的 安全保障을 締結하여 被侵時 “地域的 安全保障機構의 強制措置”를 利用하는 類型이다.
- (iii) 셋째 “保障條約型”이다. 이는 不可侵條約을 保障하는 保障國이 保障條約을 締結하여 不可侵條約의 當事國의 不可侵을 “保障國이 保障”하는 類型이다.
- (iv) 넷째 “交叉不可侵條約型”이다. 이는 不可侵條約의 當事國이 각기 相對方 當事國을 支援할 수 있는 強大國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 不可侵條約의 相對方의 “侵略의 背景의 弱化”를 시도하는 類型이다.

註 211)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1979, p.368.

이상의 4 個類型 중 “保障條約型”과 “交叉不可侵條約型”에 관해서만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1) 保障條約型

(가) 保障條約의 意義

“保障條約”(treaty of guarantee)은 一國이 他國에게 어떠한 保障을 하는 條約을 말한다. 이러한 保障은 兩國 間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의 國家 間에 集團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保障條約의 保障對象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中 중요한 것은 특수한 王朝, 特定한 領土의 所有, 侵略으로 부터의 보호, 領土一部의 非武裝化, 獨立과 領土의 保全, 永世中立 등이다.²¹²⁾

保障條約은 保障者(guarantor)에게 2 個의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 하나는 한 國家의 永世中立의 尊重과 같은 어떤 事項을 自 制할 것을 約束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他國家에게 他國家에 의한 中 立의 尊重과 같은 어떤 事項을 하도록 強要하는 것을 約束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保障이란 用語가 가장 適切한 것은 2 번째의 約束이다. 그러 므로 保障條約은 一種의 3 邊契約(trilateral transaction)이다.²¹³⁾

第 2 의 約束이 國家의 集團에 의해 保障될 때 각 保障國의 義務가 다 른 保障國들이 그들의 約束을 履行하도록 모두가 合意되어 있을때만 일 어나는가, 아니면 他保障國들의 態度에 관계없이 保障國의 각자가 保障의 義務를 지는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前者를 “集團的 혹은 共同的 保障”(collective or joint guarantee)이고, 後者是 “共同的 혹은 個別的 保障”

212) L. McNair, *The Law of Treaties* (Oxford : Clarendon, 1961), p.239.

213) *Ibid.*, pp.239-240.

(joint or several guarantee)이다.²¹⁴⁾

(나) 保障條約의 實例

1) 1856 年の Paris 條約

1856 年 3 月 30 日에 締結된 “Paris 條約”(The Treaty of Paris) 은 Crimean 戰爭을 終了지은 것으로 第7條는 獨逸과 領土保全을 保障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이 保障은 Turkey 에 대해서 英國・Austria・佛蘭西・Prussia・Russia와 Sardinia가 保障國으로 되어 있다.²¹⁵⁾ 이는 共同保障條約의 하나이다.²¹⁶⁾

2) 1925 年の Locarno 條約

1925 年 10 月 16 日의 “Locarno 條約”은 第2條에서 獨逸과 Belgium, 그리고 獨逸과 佛蘭西의 不可侵을 英國과 伊大리가 保障한 것이다. 이 條約은 佛蘭西와 Belgium에 對한 不安感を 덜기 위하여 獨逸이 中心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保障國과 被保障國이 모두 條約의 當事者인 것이 特色이다.

이 條約은 集團的・個別的・保障(collective and several)條約의 代表的 例이다.²¹⁷⁾ 그러나 이 保障條約은 前述한 바와 같이 獨逸이 非武裝地帶인 Rheinland를 侵攻함으로서 破棄되어 버리고 말았다.

3) 1960 年の Cyprus 保障條約

1960 年 8 月 16 日의 “Cyprus 保障條約”(Cyprus Treaty of Guarantee)

註 214) *Ibid.*, p.240.

J.F.Williams, “Sanctions Under the Covenant”, B.Y.I.L., Vol.17, 1936, pp.134-136.

215) L.McNair, *op. cit.*, *supra* note 212, p.239.

216) *Ibid.*, p.240, note.1.

217) *Ibid.*, p.244.

은 Cyprus 共和國을 一方으로 하고, Greece · Turkey · 英國을 他方으로 하여 締結된 保障條約이다. 同 條約 第1條는 Cyprus 共和國의 獨立·領土 保全과 安全의 維持를 確保할 것을 規定하고, 第2條에서 3個 保障國인 Greece · Turkey · 英國은 第1條의 履行을 保障하고 있다.^{217a)}

4) 1973 年の 越南平和條約

1973 年 3 月 2 日の 越南平和條約인 “越南에 관한 國際會議 議定書”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et-Nam) 도 一種에 保障條約에 屬한다. 이 條約은 越南休戰當事者인 4 個當事者외에 Canada · 中共 · 蘇聯 · 佛蘭西 · Hungary · Indonesia · Poland 의 8 個國을 合한 12 個 當事者에 의해 締結되었다.

同 條約의 前文에 “Indochina 의 平和에 寄與하고 保障하기 위하여 (contributing to and guaranting peace in Indochina) 라 宣言하고, 第1條에서 當事國은 休戰協定과 4 個 附屬議定書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 존중할 것을 合意하였다. 또한 이 協定에 위반된 行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 協定이 위반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個別的 또는 共同으로 相互 協議할 것에 合意하였다.”²¹⁸⁾

그러나 이 12 個國에 의한 保障條約을 共產越南의 共產化統一로 破棄되어 버리고 말았다.

(2) 交叉不可侵條約型

(가) 交叉不可侵條約의 意義

不可侵條約의 當事國이 각각 相對方 當事國을 支援하여 侵略行爲를 誘

註 217a) M.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12(Washington D.C.: U.S.G.P.O., 1971), pp.655-656.

218) J.A.S.Grenville, *op. cit.*, *supra* note 120, pp.472-473.

發시키거나 또는 侵略行爲에 援助를 줄 수 있는 國家와 不可侵條約을 締結하는 것을 “交叉不可侵條約”(cross non-aggression treaties)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컨대 (i) A國과 B國이 第1의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ii) A國은 B國의 支援國인 D國과 B國은 A國의 支援國인 C國과 각각 또 다른 第2의 不可侵條約을 締結하므로써 A國과 B國 간의 第1의 不可侵條約의 實效를 거두려는 方法이다.

交叉不可侵條約도 結局 第1의 不可侵條約의 履行을 保障하는 點에서 實質적으로 不可侵保障條約과 같으나, 交叉不可侵條約 當事者(위의 예에서 C國과 D國)간에는 集團的 또는 共同的 保障義務가 없으나 不可侵保障條約 當事者 相互間에는 集團的 또는 共同的 保障義務가 있다는 點이 兩者의 差異點이다.

(나) 交叉不可侵條約의 實例

前述한 西獨의 東歐諸國과의 不可侵條約은 東西獨의 不可侵을 規定한 “東西獨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의 交叉不可侵條約이다.

1970年 8月 12日의 “西獨과 蘇聯 간의 條約” 第3條, 1970年 12月 7日의 “西獨과 Poland 간의 相互關係 正常化 條約” 1973年 12月 11日의 “西獨과 Czecho 간의 相互關係에 관한 條約” 등은 東西獨간에 不可侵을 保障하기 위한 交叉不可侵條約이다.²¹⁹⁾

마. 不可侵條約의 國際的 保障 方案

(1) 平和條約과의 關係

不可侵條約의 締結은 平和條約의 締結과의 關係에서 다음과 같은 方案이 있다.

註 219) *Ibid.*, pp.530-532.

(i) 平和條約 내에 不可侵條約의 內容을 規定하고 不可侵條約을 別途로 締結하지 않는 方案

(ii) 平和條約과 不可侵條約을 區分하여 兩者를 別途로 締結하는 方案

(i)의 方案은 平和條約의 當事者와 不可侵條約의 當事者를 同一하게 一致시키는 方案이므로 兩者의 當事者를 別個로 定하려 할 때는 選擇할 수 없는 方案이다. 그러나 이 方案은 1個의 條約으로 處理되므로 條約 締結交渉上の 努力과 時間의 良費와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는 利點이 있다.

결국 (i)의 方案을 擇할 것인가 (ii)의 方案을 取할 것인가는 平和條約의 當事者에 의해 不可侵의 保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平和條約의 當事者와 다른 當事者에 의해 不可侵의 保障을 받을 것인가의 問題로 歸着된다. 그러므로 이 點은 不可侵의 保障方法에 따라 決定될 問題이다.

不可侵의 保障方法은 다음에 보기로한다.

(2) 不可侵條約의 保障類型

不可侵條約의 保障方法으로 前述한 4個의 類型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음 2個의 方案만을 보기로 한다.

(i) 不可侵保障條約을 締結하는 方案 (Locarno 條約型)

① 保障當事者를 美國과 中共으로 하는 方案

② 保障當事者를 美國·日本·中共·蘇聯의 4強으로 하는 方案

③ 保障當事者를 16個參戰國과 中共·蘇聯으로 하는 方案

(ii) 交叉不可侵條約을 締結하는 方案 (西獨·東歐條約型)

① 大國民國과 中共 또는 蘇聯이, 北韓과 日本 또는 美國이, 각각 不可侵條約을 締結하는 方案

② 大韓民國과 中共・蘇聯이 共同으로, 北韓과 美國・日本이 共同으로 각각 不可侵條約을 締結하는 方案

위 (i)의 ①의 方案은 美國과 中共에 滿足을 주고 또 美國과 中共만의 合意로 條約을 締結할 수 있으므로 實現可能性도 높다. 그러나 蘇聯과 日本에 의한 保障이 없고, 또 그들에게 滿足을 주지 못하므로 保障力의 面에서 韓半島의 安全을 위해 바람직한 方案이 되지 못한다.

위 (i)의 ②의 方案은 “Brooking 研究所”가 提議하는 方案이다. “Brooking 研究所”의 “4大國協定”(four-power agreement) 提議는 “Locarno 條約型”이라는 明示的 表現은 없지만 그러한 協定の 締結을 提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의 (i)의 ②의 方案을 提示한 것이다. “Brooking 研究所”는 “4大國協定”에 관해 다음과 같이 提議하고 있다.

韓半島에 관한 4大國協定の 成立은 南北韓의 敵對關係에서 생기는 복잡성, 中蘇 간의 심한 對立 등을 고려하여 非現實的인 것으로 보일런지 모른다. 물론 公式協定만이 韓半島를 중심으로 한 國際環境을 改善하고 한반도에 있는 명백한 분쟁 위험성을 減少하기 위한 可能하고도 唯一한 方法은 아니다. 韓半島紛爭은 누구에게도 利益이 되지 않는다는 共通認識을 強化하는 데는 4大國 사이에는 두 나라간의 雙務的 討議나 決定도 유익하다. 그런 方法으로 默示的인 양해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수년 내에 實現할 수 있는 最大限의 目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關係諸國이 명확한 協定을 실현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그것은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²²⁰⁾

註 220) R.N.Clough. *op. cit.*, *supra* note 151, p.110.

그러나 이 方案은 美國이외의 16個 參戰國에게 滿足을 주지 못하고 日本이 韓半島에 介入할 機會를 주며, 또 萬一 이 方案을 採擇한다면 平和條約과 不可侵條約을 別途로 締結해야 된다는 번거러움을 준다.²²¹⁾

(i)의 ③의 方案은 1954年의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國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들 當事者에게 모두 滿足을 주고 또 그 保障性도 높다. 또 이는 國際聯合的 解決方法이므로²²²⁾ 國際聯合의 支持를 받을 수 있다. 實現性的 面에서도 (i)의 ②의 方案과 거의 같고 平和條約의 當事者와 保障條約의 當事者를 一致시킬 수 있는 利點도 있다. 다만 日本이 參與할 수 없다는 點이 短點이 된다. 그러나 (i)의 ③의 方案이 “越南 平和條約型”에 가까운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ii)의 方案은 (i)의 方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次善의 方案으로 또는 (i)의 方案을 補完하는 補充的 方案으로 考慮해야 할 것이다. 이 (ii)의 方案은 (i)의 方案과 같은 “集團的 혹은 共同的 保障”(collective or joint guarantee)성이 없고, 오직 “個別的 保障”(several guarantee)성만이 있기 때문이다.

3.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

가. 序 說

韓半島의 平和保障을 위한 다음 단계의 措置는 南北韓 軍備의 制限・統制이다. 平和의 制度的 保障은 軍備競爭을 制限하지 않고는 이룩될 수

註 221) 물론 大韓民國・北韓과 4講을 當事者로 平和條約을 締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日本이 韓國動亂에 參戰한 바 없고 또 美國이외의 16個 參戰國이 排除되는 것은 明白히 矛盾이다.

222) 1954年의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者는 國際聯合에 의해 構成된 것이므로(GA/Res. 711(VIII)) 이는 國際聯合的 解決方法이다.

없는 것이다. 實로 “軍縮은 世界의 安定性を 極大化하고 戰爭의 勃發로 인한 破壞를 減少시킨다.”²²³⁾ 그러므로 戰爭의 機會와 危險을 減少시켜 平和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軍備를 制限하여야 한다.^{223a)}

南北韓의 軍備制限이나 統制는 南北韓의 軍事關係의 對決을 解消하고 安定基調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必要한 基本的 前提이고 必須的 要素인 것이다.^{223 b)}

軍縮이 韓半島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 “Brooking 研究所”는 다음과 같이 提議하고 있다.

첫째로 南北韓이 韓半島를 統一하는 수단으로 武力을 使用할 수 없다는 狀況에 適應하여, 양측의 競爭은 공포심에 의존되는 軍備擴大로 부터 政治活動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둘째로 韓半島의 緊張緩和의 結果로서 韓半島 政세를 둘러싼 強大國의 긴장도 완화되고, 強大國에 대한 南北韓의 武器增強 압력은 전혀림 심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셋째로 韓半島 분쟁의 위험이 적어지면 日本의 軍備擴張論者나 核武裝論者가 輿論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²²⁴⁾

註 223) A.T.Hadley, *The Nations Safety and Arms Control* (New York : The Viking Press, 1961), p.106.

223a) D.S.Cheever, “The U.N. and, Disarmament in *The United Nations in the Balance*, ed. N.Padelford (New York : Praeger, 1965), pp.109-112.

223b) 國土統一院, *op. cit.*, *supra* note 147, p.158.

金學俊, *op. cit.*, *supra* note 12, pp.18-19. F.B.Weinstein, *op. cit.*, *supra* note 14, pp.155ff.

224) R.N.Clough, *op. cit.*, *supra* note 151, pp.125-26.

南北韓의 軍縮은 다음과 같은 效果를 期待할 수 있으므로 平和定着의 現狀을 維持하고 戰爭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해 이는 必須的인 것이다.

- (i) 軍縮은 韓半島의 戰爭의 機會와 危險을 減少시킨다.
- (ii) 軍縮은 南北韓 間에 危機感을 解消시키고 相互信賴할 수 있는 條件을 造成한다.
- (iii) 軍縮은 南北韓 間에 共同利益 追求하기 위한 相互協力の 可能性을 認識시켜 民族和合의 雰圍氣를 振作시킨다.
- (iv) 軍縮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또 그것이 強大國의 緊張을 緩和시킨다.
- (v) 軍縮은 南北韓 間에 發生할 지도 모르는 戰爭의 被害를 減少시킨다.
- (vi) 軍縮은 南北韓의 國力을 産業化로 轉換하여 南北韓 國民의 生活福祉의 向上에 寄與하고 社會安定을 가져 오게 한다.

나. 軍備制限의 意義와 形態

(1) 軍縮의 意義

“軍備縮小”(disarmament)란 軍備擴張의 競爭을 종결시키기 위해 軍備를 制限 또는 減縮하는 것이다. 본래의 語義는 撤廢(depriving of weapons)를 의미하지만, 一般的으로 軍備의 全廢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減縮을 뜻한다.²²⁵⁾ 軍備는 戰爭手段이므로 軍縮을 철저히 하면 戰爭을 行할 수 없을 것이지만 現實적으로 보아 全面的인 軍縮이란 생각할 수 없다.

註 225) H.Lauterpacht, *op. cit.*, *supra* note 113, p.121.

軍縮과 區別해야 할 概念으로 “軍備의 領土的 制限”이다. 軍備의 領土的 制限이란 軍備의 空間的 制限, 예컨대 外國領土上的 軍事基地의 撤廢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軍備의 領土的 制限은 “中立化”(neutrality), “非武裝化”(delimitarization) 또는 “國際地役”(international servitude)의 問題이고, 一般的으로 軍縮이라 하지 않는다.^{225a)}

(2) 軍縮의 類型

(가) 一般軍縮과 局地軍縮

“一般軍縮”(general disarmament)은 대다수의 國家에 의하여 行해지는 軍縮이며 國際聯合이 기도하는 軍縮은 이에 속한다. 1932年 Geneva에서 開催된 “Geneva 軍縮會議”(Geneva Disarmament Conference)와 1922年の “Washington 軍縮會議”(Washington Disarmament Conference)는 一般軍縮을 위한 會議이다.

“局地軍縮”(local disarmament)은 몇몇 소수의 國家에 의해 行해지는 軍縮이다. 1817年の “Rush-Bagot 協定”(Rush-Bagot Agreement)은 局地軍縮을 위한 協定の 한 예이다.^{225 b)}

韓半島의 軍縮은 “局地軍縮”의 類型에 屬한다.

(나) 量的 軍縮과 質的 軍縮

“量的 軍縮”(quantitative disarmament)은 軍備의 種類를 불문하고 오직 軍備의 규모를 制限 또는 縮小하는 것이다.

“質的 軍縮”(qualitative disarmament)은 특정종류의 軍備만을 縮小·制限하는 軍縮이다. 毒가스·잠수함·航空機·核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註 225a) 金明基, 金成勳, *op. cit.*, *supra* note 125, p.339.

225b) *Ibid.*, pp.339-40.

質的 軍縮에 해당된다. 1968 年의 “核武器非擴散條約”(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은 質的 軍縮條約이다.^{225c)}

韓半島의 軍縮은 “量的 軍縮”과 “質的 軍縮”을 모두 포함한 類型을 採擇해야 할 것이다.

(다) 水平的 軍縮과 垂直的 軍縮

“水平的 軍縮”(horizontal disarmament)은 일명 “平面的 軍縮”이라 하며, 이는 國家와 國家 間의 軍縮으로서 各 國家는 主權平等의 원칙에서 軍縮에 참여하는 것이며, 보다 上位의 國際機構를 전제로 하지 않은 個別的인 軍縮이다. 이는 勢力均衡을 전제로 한 軍縮이다.

“垂直的 軍縮”(vertical disarmament) 또는 “立體的 軍縮”이란 國際平和를 유지하기 위한 國際機構에 의해 이루어지는 軍縮으로 集團的 安全保障을 전제로 한 것이다. 1946 年 1 月 24 日 國際聯合總會의 決議에 의해 構成된 “原子力委員會”(Atomic Energy Commission)은 垂直的 軍縮을 위한 委員會이다. 이는 國際平和의 유지라는 國際共同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軍縮이나 사실상 水平的 軍縮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225d)}

韓半島의 軍縮은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기 전 또는 어떤 地域的 安全保障協定에 參與하기 전까지는 “水平的 軍縮”의 類型에 屬한다.

(라) 一邊的 軍縮과 二邊的·多邊的 軍縮

“一邊的 軍縮”(unilateral disarmament)이란 他國과의 合意에 의하지 않고 어느 한 國家에 의하여 一方的으로 行하는 軍縮을 말한다. 一邊的 軍縮理論은 相對方의 양보를 前提로 하거나 또는 保障받은 후에 이루어

註 225c) *Ibid.*, p.340.

225d) *Ibid.*

지는 것이 아니라 一方的으로 軍縮을 漸進적으로 推進하면 相對方도 反應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期待하는 것이다. 한쪽의 一邊的 軍縮이 相對方의 反應을 誘導하는데 成功함으로써 일단 相互間的 不信感이 解消되면 다음 段階로서 더 큰 規模의 軍縮이 可能하게 되고, 결국 相互合意에 의한 軍縮으로 開發될 것을 期待하는 것이 一邊的 軍縮理論의 核心인 것이다.”

“二邊的·多邊的 軍縮”(bilateral or multilateral disarmament)이란 相互間的 合意를 前提로한 2個國 또는 多數國 間的 軍縮을 말한다.^{225 e)}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한 軍縮은 “二邊的·多邊的 軍縮”의 類型을 擇해야 할 것이다.

다.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方案

(1) 軍備制限의 主體

韓半島의 軍備制限을 위한 條約의 主體로서 다음과 같은 方案이 考慮된다.

- (i) 南北韓만을 當事者로 하는 軍備制限條約을 締結하는 方案
- (ii) 韓半島의 有關國을 當事者로 하는 軍備制限條約을 締結하는 方案
- (iii) 南北韓과 韓半島의 有關國을 當事者로 하는 軍備制限條約을 締結하는 方案

(i)의 方案은 自主的이나 그 實效를 얻기 어렵고, (ii)의 方案은 實效性이 있으나 自主性を 缺한 方案이다. (iii)의 方案은 自主性도 살리고 有關國에 의한 保障으로 實效性도 살리는 方案이므로 이 (iii)의 方案이 合理

註 225e) T.C.Schelling and M.H.Halperin, *Strategy and arms control*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1961), p.2.

的인 方案으로 본다. 有關國의 範圍를 어떻게 定할 것이냐는 平和條約의 當事者, 不可侵條約의 當事者 등에서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i) 4強에 의한 것 보다는 (ii) 1954 年の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者에 의해야 할 것이다.²²⁶⁾

(2) 軍備制限의 對象

韓半島의 軍備의 對象으로 다음과 같은 方案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i) 軍備의 種類를 不問하고 오직 軍備의 規模만을 制限하는 方案(量的 軍縮)
- (ii) 特定種類的 軍備만을 制限하는 方案(質的 軍縮)
- (iii) 위 (i), (ii)의 方案을 併行하는 方案

韓半島에서의 軍備制限은 그 種類를 不問하고 모든 軍備의 規模를 量的으로 줄여야 하고 (예컨대 兵力과 在來式武器등), 또 特定種類的 軍備는 質的으로 制限해야 하므로(예컨대 核武器, 戰鬥機, 化生武器 그리고 탱크 등) 上記 3個의 方案 중 (iii)의 方案을 採擇해야 할 것이다.

(3) 平和條約과의 關係

軍備制限協定을 平和條約에 포함시켜 締結할 것이냐에 관해 다음과 같이 方案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i) 平和條約을 締結하면서 그 平和條約 內에 軍備制限에 관한 規定을 두는 方案
- (ii) 平和條約과 別途로 軍備制限協定을 締結하는 方案

위 (i)의 方案은 平和條約의 當事者와 軍備制限條約의 當事者가 同一할 경우에만 可能하며, (ii)의 方案은 平和條約의 當事者와 軍備制限條約의 當

註 226) 上記 平和條約의 當事者 參照.

事者が 同一하지 않은 경우도 可能的 方案이다.

이미 “不可侵條約의 國際的 保障”,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 에서 본 바와 같이, 첫째로 締結節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둘째로 平和保障에 관한 當事者를 모든 關係에서 一致시키는 것이 여러 平和保障方案의 有機的·統一的 運營을 기하고 그 實效를 견을 수 있고, 셋째로 國際法上 南北韓의 法的 關係를 複雜하게 하지 않는 點에서 (i)의 方案이 妥當하다고 본다.

4. 非核地帶設定의 國際的 保障

가. 序 說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國際的으로 保障할 수 있는 또하나의 方案은 韓半島全域을 非核地帶로 設定하고 이를 國際的으로 保障하는 方案이다. 非核地帶를 “核自由地帶”(Nuclear-Free Zone)이라고도 한다. 이는 南北韓이 相互 核武器를 製造하지 않고, 保有하지 않고, 搬入하지 않는다는 條約을 締結하고, 또 이 條約을 列強이 保障하는 條約을 締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韓半島 全域을 核非武裝地帶로 하기로 하는 南北韓의 條約을 列強이 保障하는 條約을 締結하면 이는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크게 寄與할 것이다.

“Brooking 研究所”는 이 點에 關係 다음과 같이 提議한 바 있다.

南北韓에 의한 一括協定の 두번째 要素는 雙方이 각각의 領土를 非核地帶로 선언하는 것이다. 雙方은 서로 核武器를 製造하지 않고, 保有하지 않고, 搬入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大大國은 이와 같은 南北韓의 약속을 지지하고 韓半島의 지위를 非核地帶

로 하는데 동의하고 韓半島에 대해서는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데 合意해야 할 것이다.²²⁷⁾

그리고 “Brooking 研究所”는 이의 實現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²²⁸⁾

그러나 A.S. Whiting은 南韓의 美國의 核은 北韓을 抑制하기 위해서 必
要한 것이며, 또 非核地帶設定은 그후 在來式武器競争을 增加시킬 뿐이라
는 이유로 非核地帶의 設定에 관해 否定的 立場을 取하고 있다.²²⁹⁾

F.R. Weinstein은 南韓에 美國의 核武器가 配置되어 있으나 北韓에는 配
置되어 있지 않은 것이 現實이므로, 非核地帶가 設定되면 南韓만이 모든것
을 拋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北韓에게만 利益을 주는 結果가 된다는
것을 理由로 非核地帶設定에 관해 否定的 立場을 取하고 있다.²³⁰⁾

그러나 이러한 非核地帶設定에 대한 否定的 見解는 美軍撤收 전의 狀
況을 前提로 한 것이며 우리가 여기서 論하는 것은 美軍撤收 후의 것이
므로 위의 否定的 見解의 根據는 美軍撤收 전에만 考慮될 수 있는 것
으로 그 妥當성이 없다 할 것이다.

H.S. Rowen은 두個의 韓國 間의 關係에 重大한 變化가 있는 경우 非
核地帶設定은 可能性이 있는 것이며, 이는 研究開發할 價値가 있는 것이
라고 한다.²³¹⁾ 非核地帶의 設定과 그 國際的 保障이 韓半島의 平和維持
를 위해 必要하다는 具體的 論據는 上述한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
의 경우와 거이 同一하므로, 그 列舉를 생략하기로 한다.

註 227) R.N.Clough, *op. cit.*, *supra* note 151, pp.109-110.

228) *Ibid.*

229) F.B.Weinstein, *op. cit.*, *supra* note 5, pp.151-152.

230) *Ibid.*, p.153.

231) *Ibid.*

나. 非核地帶設定의 國際的 保障 方案

非核地帶設定에 관한 可能的 方案은 上述한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의 경우와 같으므로, 여기 그 仔細한 說明을 略하기로 한다.

5.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設置

가. 序 說

韓國의 平和와 統一의 問題를 國際聯合總會에서 다루도록하고, 國際聯合總會가 이러한 任務를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總會의 補助機關으로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假稱)를 設置할 必要가 있다.

國際聯合憲章 第22條는 “總會는 그 任務의 遂行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補助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에 의해 特別委員會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委員會가 總會의 補助機關으로 設置되어 왔다. 特히 韓國問題의 解決을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은 特別委員會가 設置된 바 있었다.

美軍이 撤收하게 되어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의 定着을 再編成하고 韓國問題를 國際聯合化하여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의 問題를 國際聯合 中心으로 解決하기 위한 綜合的 計劃을 樹立하고 實踐하기 위해 總會의 補助機關으로 새로운 特別委員會의 設置가 要求된다.

特別委員會의 設置로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대한 다음과 같은 具體的 利益을 期待할 수 있다.

- (i) 國際聯合이 中心이 되어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問題를 解決해 나갈 수 있다.
- (ii) 周邊列強은 自國의 利益을 위해 韓半島의 “平和”만을 考慮하나, 國際聯合은 “統一”문제까지 考慮하게 된다.

- (iii) 韓半島問題를 超列強의 問題로 國際聯合이 解決해 나갈 수 있으므로 韓半島의 平和를 保障할 수 있다.
- (iv) 國際聯合이 南北韓 간의 中立的 調停者로서 韓半島問題를 다룰 수 있다.
- (v) 國際聯合總會 中心으로 韓半島問題의 綜合計劃을 樹立하여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問題를 繼續적으로 解決해 나갈 수 있으므로 韓半島의 平和를 國際적으로 保障받을 수 있다.

나. 特別委員會의 先例

1947年 11月 14日 總會의 決議 第112號(II)로 “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會”(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이 設置되었다. 同 委員會는 韓國政府樹立을 위한 公正한 選舉를 監視하는 것을 任務로 하여 Australia · Canada · 中國 · El Salvador · 佛蘭西 · 印度 · Philippines · Syria · Ukraina 의 9個國 代表로 構成되었다.²³²⁾ 同 委員會의 監視下에 南韓만의 選舉로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될 수 있었다.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合 總會는 決議 第195號(III)로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라고 承認하고 “國際聯合韓國委員會”(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 UNCOK)을 새로이 設置하여 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會의 任務를 承繼하도록 했다. 同 委員會는 Australia · 中國 · El Salvador · 佛蘭西 · 印度 · Philippines · Syria 의 7個國 代表로 構成되었다.²³³⁾

註 232)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7-48 (New York: United Nations Office of Publications, 1948), pp.81-83.

233) United Nations, *Everyman's U.N.*, 6th ed. (New York: U.N.O.P., I, 1959), pp.115-116.

1950年 10月 7日의 國際聯合總會는 決議 第 376號(IV)를 採擇하여, “國際聯合統一復興委員會”(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 UNCURK)을 設置하여 “國際聯合韓國委員會”을 代替시켰다. 同 委員會는 Australia · Chile · Netherlands · Pakistan · Philippines · Thailand · Turkey의 代表로 構成되었다. 1950年 12月 1日 國際聯合總會는 決議 第 410號(V)로 韓國의 復興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國際聯合韓國再建團”(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UNKRA)를 設置했다.²³⁴⁾

1973年 第 28次 國際聯合總會에 “國際聯合韓國統一復興委員會”의 解體決議案이 提出되게 됨에 따라 이는 1973年 11月 29日 聲明書를 發表하고 23年에 걸친 活動을 終結하고 解體되고 말았다.^{234a)}

다.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設置 方案

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委員의 構成方法은 다음과 같은 것을 考慮해 볼 수 있다.

- (i) 從前의 “國際聯合 韓國臨時委員會”, “國際聯合 韓國委員會”의 構成國 등의 代表로 構成하는 方案
- (ii) 1954年의 Geneva 政治會談의 當事國 代表로 構成하는 方案
- (iii) 16個國 參戰國과 中共·蘇聯의 代表로 構成하는 方案
- (iv) (i)과 전혀 다르고, 또 새로운 平和維持軍을 派견하지 않은 構成國의 代表로 構成하는 方案

위 (i)의 方案은 韓半島問題의 把握이 容易하고 大韓民國에게 有利하겠

註 234) *Ibid.*, pp.117ff.

234a) 外務部, 韓國外交 30年, 1948-1978 (서울: 大韓民國外務部, 1979), p.200.

으나, 北韓이 反對할 것이므로, 그 實現性이 없으며, 또 과거의 예로 보아 實效性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ii)의 方案과 (iii)의 方案은 南北韓에 대해 中立性을 保障하기 어려우며 또 北韓이 이에 反對할 것이므로 그 實現性도 없다. (iv)의 方案이 現實性과 中立性을 保障하고 또 實現性도 있을 것이므로 이 方案이 合理的인 것이라고 본다.

IV.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과 統一政策과의 關係

1. 大韓民國의 併合型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 喪失

가. 併合型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

(1) 統一政策과 正統性

南北韓 어느 一方도 他方の 國家性을 是認하지 않으면서 分斷을 自處하고 統一을 主張해 왔다. 이러한 現實과 理念의 엇갈린 矛盾속에 近 40年을 지내오면서 南北韓은 서로 自己의 “唯一合法性”을 主張하면서 相對方을 不法的 存在로서 일축해 왔다.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은 아직도 毅然히 韓國의 “正統性”을 大韓民國에 있다는 立場을 堅持하면서 北韓政權이 大韓民國에 “併合的”으로 吸收되기를 원하는 統一模型을 追求하고 있다. 大韓民國에 北韓政權이 從屬적으로 結合하여 北韓政權은 消滅되고 舊韓國을 承繼한 大韓民國은 그대로 存續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統一政策은 大韓民國이 舊韓國의 正統性을 維持하고 있다는 것을 大前提로 한 것이다. 만일 分斷南北이 相互 自己의 優越的 地位를 拋棄하고 相對方의 存在를 肯定하는 等價的 立場에서 “合併的”으로 結合되는 統一類型을 選好한다면 統一에 의해 南北韓은 모두 法的으로 消滅되고 統一韓國은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斷切한 新生國으로 成立되게 된다.

大韓民國은 大韓帝國의 正統性이 大韓民國에 있음을 根據로 併合型 統一政策을 展開해 왔다.²³⁵⁾

註 235) 金明基, *op. cit.*, *supra* note 17, pp.136ff.

(2) 大韓民國의 正統性

1947年 11月 14日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에²³⁶⁾ 의해 設置된 “國際聯合 韓國臨時委員團”(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은 1948年 1月 8日 서울에 到着하여 任務를 開始했으며, 蘇聯은 同 委員團이 北韓地域에 들어오는 것을 拒否하여 結局 1948年 5月 10日 同 委員團의 監視下에 南韓地域만의 總選舉가 實施되었다. 同年 5月 31日 制憲國會가 召集되었고, 7月 17日 憲法이 公布되어 8月 15日에 大韓民國政府가 正式으로 樹立되게 되었다. 1948年 12月 12日 第3次 國際聯合 總會는 大韓民國政府를 韓國의 唯一合法政府라는 決議를 贊成 48, 反對 6, 棄權 1로 採擇했다.²³⁷⁾

國際聯合의 所産인 大韓民國의 正統性은 國際聯合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承認한 上記 國際聯合 總會의 承認은 “國家承認”(recognition of states)인가 아니면 “政府承認”(recognition of governments)인가? 1947年 11月 14日의 “國際聯合 韓國臨時委員團”의 設置에 관한 總會의 決議에²³⁸⁾ 의하면 “新政府의 樹立”(establishment of new government)으로 表示되어 있으며, 또 1948年 12月 12日의 決議에도²³⁹⁾ “合法政府”(a lawful government)임을 承認한 것으로 이는 “政府承認”이며, “國家承認”을 意味하지 않는다.

D.P. O'Connell 은 同 決議는 “南韓政府가 韓國의 政府”(the South

註 236) GA/Res. 112(II)

237) GA/Res. 195(III)

238) GA/Res. 112(II)

239) GA/Res. 195(III)

Korea Government was the Government of Korea)라는 決議라고 하여²⁴⁰⁾ 政府承認으로 보고 있으며, D.W.Bowett는 同 決議에 의해 “38線은 國際聯合에 의해承認된 政府와 國際聯合으로 부터承認을 받지 않은 兩國 間의 境界로 되었다.”고 하여²⁴¹⁾ 同 決議를 政府承認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W.L.Gould도 “總會의 決議는 韓國을 一個의 合法政府를 가진 單一國家(as a single state with one lawful government)로 取扱하였다”고 하여²⁴²⁾ 政府承認으로 보고 있다. J.Stone,²⁴³⁾ W.V.O'Brien,²⁴⁴⁾ A.Vandenbosch²⁴⁵⁾, R.Higgins²⁴⁶⁾, G.V.Glahn²⁴⁷⁾, H.Kelsen도²⁴⁸⁾ 政府承認으로 본다.

위의 決議에 의해 唯一合法政府인 大韓民國政府가 正統性を 保有하고 있다. 이러한 大韓民國의 正統性を 根據로 大韓民國은 併合型 統一政策을 追求해 왔다.

나. 併合型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喪失

(1) 南北韓共同國際聯合加入

이미 위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南北이 共同으로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될때 南北은 當然히 相互 國家로 承認한 것으로는 되지 않으나 國際聯合 自體에 의한 國家의 承認으로 된다. 이는 1948年 12月 12日 國際聯

註 240) D.P.O'Connell, *op. cit.*, *supra* note 67, p.287.

241) D.W.Bowett, *op. cit.*, *supra* note 138, p.187.

242) W.L.Gould, *op. cit.*, *supra* note 98, p.187.

243) J.Stone, *op. cit.*, *supra* note 19, p.228.

244) W.V.O'Brien, *op. cit.*, *supra* note 92, p.137.

245) A.Vandenbosch and W.N.Hoga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McGraw-Hill, 1952), p.226.

246) R.Higgins, *op. cit.*, *supra* note 49, p.132.

247) G.V.Glahn, *op. cit.*, *supra* note 70, pp.71, 101.

248) H.Kelsen, *op. cit.*, *supra* note 48, p.929.

합이 大韓民國政府를 唯一合法政府로 承認하여 消極적으로 北韓의 不法的
• 非國家성을 確認한 總會의 決議와 矛盾된다.

따라서 南北이 共同으로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되면 國際聯合과의 關係
에서 大韓民國의 正統성은 破壞되고 韓半島에는 大韓民國과 北韓이라는
2個의 國家가 成立되게 된다. 그리고 國際聯合으로 부터 不法政府로 認
定되어온 北韓의 國際聯合으로 부터 合法政府로 認定되어온 政府로 構成
된 大韓民國에 吸收되는 形式, 嚴格하게는 失地の 四復을 뜻하는 併合型
統一政策 즉 統一韓國도 大韓民國이어야 한다는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은 그
基盤을 잃게 된다.

(2) 南北韓交叉承認

分斷 南北韓 間에 있어서 大韓帝國의 正統성을 大韓民國이 承繼했다는
法的 根據로 1948年 12月 12日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 第195號(III)를
들어왔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같이 南北韓交叉承認은 北韓을 國家로 承認
하는 것이므로 北韓을 承認한 國家와의 關係에서 大韓民國政府를 唯一合
法政府로 承認한 上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는 破棄되어 버리는 結果가
되므로 이들 國家와의 關係에서 大韓民國의 正統성을 上記 國際聯合 總
會의 決議 第195號(III)에서 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正統성을 前提로, 國際聯合으로 부터 北韓이 不法的
인 政府로 認定되어 온 것을 容認한 國家에 의해 不法的 政府로 認定
되어 온 北韓이, 國際聯合으로 부터 合法政府로 認定되어 온 것을 容認
한 國家에 의해 合法政府로 認定되어 온 政府로 構成된 大韓民國에 吸
收되는 形式의 統一, 엄격하게는 失地の 回復을 뜻하는 併合型 統一政策
을 主張할 수 없게 된다. 즉 統一韓國도 大韓民國이어야 한다는 大韓民

國의 統一政策의 理論的 根據를 잃게 된다. 이 점에서 4強에 의한 交叉承認이 大韓民國에 미치는 間接的 影響을 無視할 수 없다.

(3) 平和條約 締結 등

上述한 바와같이 平和條約의 締結, 不可侵條約의 締結, 保障條約의 締結 등 平和定着과 그 國際的 保障手段으로서의 條約의 締結은 當然히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萬一 그러한 條約의 締結을 통해 大韓民國 또는 기타의 條約 當事國이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게 되면 이는 역시 1948年 12月 12日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 第 195(III)에 의해 承認된 大韓民의 正統性을 否定하는 結果로 되고 만다.

따라서 上記 南北韓國際聯合共同加入, 南北韓交叉承認의 경우와 같이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根據로한 大韓民國의 併合型 統一政策은 그 理論的 基礎를 잃고 만다.

2. 統一追求의 後退와 自主統一의 障礙

가. 統一追求의 後退

위에서 考察한 平和定着의 諸形式은 政治的으로는 分斷狀態이나 法的으로는 分斷狀態가 아닌 今日의 南北韓關係를 法的으로도 分斷化하는 이른바 “分斷의 合法化”方式으로 지금까지 南北韓의 立場에서 볼 때, 또 大韓民國만을 國家로 承認한 國家와 北韓만을 國家로 承認한 國家의 立場에서 볼 때, 또 法的으로 한個의 國家인 韓國을 두個의 韓國으로 分裂 또는 分離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法的으로 한個의 國家인 分斷의 合法化 이전에는 統一을 失地의 回復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分斷의 合法化 이후는 統一이란 法的으로 두個인 韓國이 法的으로 併合 또는 合併되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政治的 統一을 追求하면서 法的 分斷을 容認하는 것은 分明히 盾脩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法的 統一의 새로운 課題를 創出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上述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그의 國際的 保障에 관한 諸裝置는 和平의 觀點에서 보면 分明히 一步前進이나 統一의 觀點에서 보면 分明히 一步 後退이다.

나. 自主統一의 障礙

上述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그의 國際的 保障을 위한 諸方式은 모두 南北韓 兩 當事者의 關係를 整理되는 것이 아니라 4強 또는 16個 參戰國 또는 기타의 中立國 등의 關與로 이루어진다. 이는 平和의 定着이라는 當面課題의 解決에 急急하여 外勢를 導入하는 것이다.

南側을 위해 大韓民國의 代表가 署名하지 않고 國際聯合軍司令官이 署名하고, 北側을 위해 北韓의 代表만의 署名한 것이 아니라 北韓의 代表와 함께 中共의 代表가 署名한 休戰協定の 法的 混述과 休戰協定の 施行過程으로서 1954年 Geneva 政治會議의 當事者가 南北韓이외의 16個 參戰國과 蘇聯이 되었다는 法的·政治的 뒤범벅 속에서 平和定着을 위한 自主的인 南北韓 兩 當事者關係로의 法的 整備가 이토록 어려운 오늘의 現實을 考慮할 때, 또다시 새로운 外勢의 介入을 自招하는 것은 第2의 課題인 앞으로의 統一을 위한 法的 整理過程을 더욱 어렵게만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이 自主的 統一을 하려 할 때 韓半島에 韓半島의 平和保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凝滯된 列強의 勢力은 우리의 自主的 統一에 障礙가 될 수는 있을 뿐이며, 이들이 우리의 自主的 統一에 寄與하기를 期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上述한 韓半島

의 平和定着을 위한 諸方案은 오직 平和의 定着을 위한 것이며 그 自體로는 統一의 障礙要因이 될 뿐이다. 그러나 平和定着이 統一의 環境을 造成해 나갈 수 있다는 點은 是認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이른바 4強에 의한 “分斷의 合法化”의 推移, 第30次 國際聯合總會에서 駐韓美軍의 撤收를 要求한 共產側 決議案을 採擇한 國際聯合 加盟國의 壓力, 南北韓에 의한 反外勢的 民族主義에 立脚한 統一論의 胎動 등은 南北韓頂上會談이 開催될 경우 北韓이 끈질기게 主張해온 駐韓美軍撤收 提議를 不可避하게 받아드려야 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에 對備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그의 國際的 保障策이 要求된다.

上述한 바와 같이 (i)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爲해 南北韓交叉承認, 南北韓同時國際聯合加入, 平和條約締結, 南北韓基本關係暫定協定締結 등의 方案이 講究되어야 하며, (ii)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을 爲해 非武裝地帶의 國際的 監視, 相互不可侵의 國際的 保障, 軍備制限의 國際的 保障, 非核地帶設定의 國際的 保障, 國際聯合韓國問題特別委員會의 設置 등의 方案이 對備되어야 한다. 上記 諸方案마다 可容한 具體的 方案과 選好해야 할 細部的 方案은 本論에서 充分히 檢討되었다.

그러나 上記 諸 平和定着과 그의 國際的 保障方案은 “平和定着” 方案이란 點에서 暫時 統一은 留保한 것이고, 또 “國際的 保障方案”이란 點에서 外勢에 連係되어 있다. 그러므로 上記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方案은 우리의 “自主的統一” 意志와는 相衡 對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間의 理念과 體制의 隔差가 解消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분간 우리의 感傷的 희망에 불과하며, 언제 突發적으로 爆發할지 모르는 危險에 對處하기 爲한 南北韓 間의 緊張狀態는 雙方의 軍備를 無限大로 增加시킬 뿐 統一의 先提要件인 和解의 조짐을 바라는 것은 한갓

히된 想으로 보여진다. 自主的 統一을 爲한 우리의 뜨거운 熱望은 實利만을 追求하는 外勢에 의해 냉각되어 가는 오늘, 우리에게 當면한 民族的 課題는 “祖國의 統一”이라기 보다 “平和의 定着”이다. 平和의 定着 없이 平和的 統一을 이룩할 수 없으며 相對方의 存在를 對等한 法的 地位로 承認하지 않고서는 相對方과 對話와 協商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點을 考慮할 때, 上記 國際的 平和定着方案은 統一의 座標에서 보면 百步前進을 爲한 一步後退라고 볼 수도 있다. 統一에 앞서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着해야 한다는 當면한 現實的 課題를 해결하기 爲해서는, 일단 暫定的으로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고 그 後에 새로운 統一方案의 協商을 講究하는 것이 슬기로운 對策으로 容認해야 할 決斷을 내릴 때가 당도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窮極의 目標은 統一이지 分斷이 아닌 것은 分明하다. 따라서 우리는 對外的인 周邊情勢와 對內的인 諸與件을 充分히 參작하여 韓半島의 平和를 保障해 주려는 國家와 신중히 問題를 檢討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平和”와 “統一”을 調和시킬 수 있는 民族의 슬기와 叡知가 要求된다.